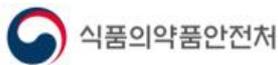


'22년 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



이 지침서는 위생용품안전관리 업무의 세부지침을 정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부서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본 지침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지침서는 2021년 현재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무원 지침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임(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 본 지침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43-719-1741
팩스번호: 043-719-1730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점검표	
명칭	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공무원 안내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여부	<input type="checkbox"/> 이미 등록된 지침서·안내서 중 동일·유사한 내용의 지침서·안내서가 있습니까? ■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기존의 지침서·안내서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서·안내서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아래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input type="checkbox"/>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의 내용을 단순 편집 또는 나열한 것입니까? □ 예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광고의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일회성 지시·명령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외국 규정을 단순 번역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신규 직원 교육을 위해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까? □ 예 ■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예'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침서·안내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침서·안내서 구분	<input type="checkbox"/>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세부 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용) ■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특정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외적인 입장을 기술하는 것입니까? (민원인용) □ 예 ■ 아니오
기타 확인 사항	<input type="checkbox"/> 상위 법령을 일탈하여 새로운 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민원인을 구속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상위법령 일탈 내용을 삭제하시고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음. 2021년 12월 일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담당자 확인(부서장) 성효실 박영민 </div>	

2022년도
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

I. 위생용품 안전관리 목표 및 주요 시책

1. '22년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정책 추진 전략 및 방향 3
2. 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 주요 변경 사항 4
3. 그간 추진내용 7

II. 위생용품 안전관리 체계

1. 위생용품 안전관리 역할 분담 체계 9
2.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품행정통합시스템) 활용 10

III. 유통단계 위생용품 안전관리

1. '22년 위생용품 안전관리 16
2. 위생용품 안전관리 체계 17
3. 위생용품 영업소 지도·점검 20
 - 3-1. 행락철 나들이 성수품목 제조업소 관리 24
 - 3-2. 위생용품 전국합동단속 25
 - 3-3. 하절기 위생취약제품 중점 관리 27
 - 3-4. 위생용품수입업소 안전관리 28
 - 3-5. 다빈도 위반업소 중점관리 29
 - 3-6. 위생취약분야 안전관리 지원 30
4. 위생용품의 수거·검사 42
 - 4-1. 위생용품의 허용 외 성분 수거·검사 45
 - 4-2. 수입위생용품 집중 수거·검사 47

5. 위생용품의 허위·과대광고 관리 49
 6. 부정·불량 위생용품 관리 53
 7. 위생용품 민원관리 55
 8. 지도·단속업무의 투명성 제고 57

IV. 통관단계 위생용품 안전관리

1. 수입 위생용품 검사 65
 2. 수입 위생용품 신속통관 제도 74
 3. 부적합 수입 위생용품 관리 76
 4. 유통관리대상 수입 위생용품 사후관리 78
 5. 위해정보에 따른 통관단계검사 79

V. 위생용품 관리법 운영·관리

1. 위생용품의 종류 및 유형 83
 2. 위생용품 관리법 요약 88
 3. 영업의 신고 90
 4. 영업의 승계 94
 5. 휴업·폐업 및 재개업 96
 6. 영업신고의 변경신고 98
 7. 품목제조보고 99
 8. 위생용품 위탁제조·처리업체 관리 101
 9.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관리 103
 10. 위생용품 제조·처리 실적보고 108

11. 위생용품의 표시관리 110
 12.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119

VI. 기타

1. 영업자 자율안전관리 강화 추진 124
 2. 위생용품 영업자단체를 활용한 자율 안전관리 132
 3. 주요 위생용품 안전관리 사항 134
 4. 일회용 컵 주요 안전관리 사항 136
 5. 위생물수건 주요 안전관리 사항 138
 6. 「위생용품 관리법」 주요 해석 사례 158

VII. 부 록

[별표 1]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165
 [별표 2] 행금 보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180
 [별표 3] 위생용품 담당부서 현황 185
 [별표 4]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현황 204
 [별표 5]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205

제·개정 이력

연번	제·개정 번호	승인 일자	주요 내용
1	지침서-0179-01	2018.4.13.	제정
2	지침서-0179-02	2018.12.27.	개정
3	지침서-0179-03	2019.12.23.	개정
4	지침서-0179-04	2020.12.28.	개정
5	지침서-0179-05	2021.12.29.	개정

I

위생용품안전관리 목표 및 주요 시책

I 위생용품 안전관리 목표 및 주요 시책

1. 2022년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정책 추진 전략 및 방향

비전	더 안심하고 사용하는 위생용품	
목표	위해요소 중점관리 및 자율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핵심 전략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 신규품목 관리기반 마련 ○ 위생용품 원료(성분)관리시스템 마련 ○ 위생용품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제도 정비
	위해요소 중점 안전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 요인별 맞춤형 안전관리 ○ 다빈도·부적합 품목(검사항목) 중점 안전관리 ○ 위해정보에 따른 수입 제품 안전관리
	자율안전관리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자 자율위생·안전관리 강화 ○ 관련 단체를 통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 ○ 현장점검 시 위생 취약분야 지도·교육 강화
	산업발전·성장을 위한 전문성 및 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영업자 실무협의회 등 현장 소통 강화 ○ 위생용품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

2. 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 주요 변경 사항

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사항

□ 위해도, 부적합 이력 등에 대한 중점 안전관리 추진

- : 불량 위생용품의 유통·수입 감소 등 사전·사후 안전관리 정착에 따라 반복되는 안전관리 취약사항과 부적합 항목 집중 개선
 - 행정철 나들이 성수품목 집중 안전관리 실시[지침 III. 3-1]
 - 위해 요인별 중점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전국합동단속[지침 III. 3-2]
 - 하절기 보관·취급에 따른 위해요소 집중 안전관리 실시[지침 III. 3-3]
 - 반복 위반 업소 및 제품을 선정하여 특별 관리[지침 III. 3-5]

□ 영업자 자율안전관리 강화 추진

- : 영업자 스스로 제조기준 및 위생취약 등을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위생용품 안전관리 구축
 - 영업자 자율안전관리 강화 추진[지침 VI. 1]
 - 위생용품 영업자단체를 활용한 자율 안전관리[지침 VI. 2]
 - 현장 지도·점검 시 현장취약분야 지도·교육 실시[지침 III. 3-6]

□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생용품관리법령 해석사례 등 수록

- 위생용품 관련 주요 유권 해석 정리[지침 VI. 6]

나. 법률 등 제·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21.1.12.)

-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위반회수의 산정기간·방법 등 기준 마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영업 신고(변경)신고	법 제34조 제1항제1호	30	45	60
품목제조보고	법 제34조 제1항제2호	40	60	80
생산실적보고	법 제34조 제1항제3호	30	45	60
위생교육	법 제34조 제1항제4호	30	45	60
자가품질검사	법 제34조 제1항제5호	50	75	100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21.12.23)

- 위생물수건의 안전관리 강화(시행일:’23.7.1)
 - 원단의 구비요건 * (현행) 백색의 면타월 → (개선) 면타월
 - 위생물수건의 위생처리에 형광증백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형광증백제 규격 신설 * 불검출
- 비소를 As2O3(삼산화아비소)로 환산하여 규격 적용(시행:’21.12.23)
- 세척제 유형명칭 개정(시행일:’23.7.1)
 - * (현행) 1종, 2종, 3종 → (개정안) 과일·채소용, 식품용 기구·용기용, 식품 제조·가공장치용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개정(’20.9.2.)·시행(’22.7.1.)

- 위생용품의 제조에 사용된 향료에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및 별표 4에 규정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향료의 명칭과 해당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함[지침 V. 11. 마. 7]

다. 공통사항

□ 위생용품행정업무 실적 제출 의무화

- 분기별 시·도별 실시하는 지도·점검, 수거·검사 및 행정처분 실적 공문 제출[지침 III. 3. <붙임 4>, 지침 III. 4. <붙임 1>]
- * 본 지침에 수록된 법령과 관련된 일체의 위생용품행정업무 처리 실적은 해당 실적 발생 당일(즉시)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록(입력)

3. 그간 추진내용

가. 위생용품 사전·사후관리 등 안전관리 강화

- (사전관리) 제조 및 수입단계 영업 및 품목 안전관리
 - (제조) 화학물질 노출우려 품목의 품목제조보고* 의무화, 주기적 자가품질검사**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제조·유통
 - * 5개 품목(세척제, 행균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팬티라이너)
 - ** 위생물수건 1회/1개월, 세척제 등 보고대상 품목 1회/3개월, 기타 1회/6개월 이상
 - (수입) 수입위생용품 통관단계 검사 강화로 안전성 사전 검증
 - *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른 위해 우려 품목 및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 지시 등
- (사후관리) 유통제품 검사 및 지도·점검으로 불법제품 유통 차단
 - 위생용품에 대한 상시 안전관리 체계 유지(지방청·지자체 협조)
 - * 매년 위생용품 수거·검사 기본 계획 수립 및 위생용품 안전관리지침 마련·시행

나. 영업자 및 소비자를 위한 안전관리 교육·홍보 강화

- 부적합 및 사용상 부주의가 많은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맞춤형 교육·홍보를 통해 부적합 제품 생산·유통 최소화
 - 「수입위생용품 영업 및 수입신고 민원인 안내서」, 「일회용 기저귀 정보 카드뉴스」, 「세척제 행균보조제 성분 사용신청 민원인 안내서」 및 「위생용품 질의응답집」 등 제작·배포



II 위생용품 안전관리 체계

1. 위생용품 안전관리 역할 분담 체계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본부	지방청	시·도	시·군·구
국내유통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기준 등 총괄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정기합동(일제) 단속 계획 수립 위생감시원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합동단속 실시 수입위생용품 유통 단계 모니터링 소비자위생감시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 위생관리 등 지도·점검 정기합동단속참여 소비자위생감시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위생물수건 처리업 영업신고, 품목제조보고 등 관리 기초 위생관리 등 지도·점검 참여 정기합동단속참여 유통제품 수가·검사 소비자위생감시원 운영
수입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검사 조정·관리 총괄 수입검사 공무원 전문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업 영업신고 등 관리 수입신고·검사 등 		
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생교육총괄 위생교육기관 지정 공무원 대상 교육 소비자 등 대상 정책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영업자 등 대상 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영업자 등 대상 교육·홍보 	
기준·규격 등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규격 설정·운영 및 제정가 등 표시기준 설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생용품 모니터링 실태조사 제품 표시실태 조사 등 	<p>식품의약품안전처(평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석법 개발 및 위해성 평가 안전성 모니터링 화학물질 원료성분 검토·평가 	
전산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수입신고, 지도·점검, 수가·검사, 행정처분, 품목제조보고 등 안전관리 전산시스템 고도화 			

2.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품행정통합시스템) 활용

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개요 (위생용품)

- 1)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에 따라 위생용품 행정정보의 통합 관리 기능을 개발하고 새 행정정보시스템·통합수입검사시스템과 관련 정보 등을 연계하여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
- 2) (시스템 구성) 위생용품 행정관리시스템과 대국민 정보제공시스템으로 구성

시스템명	주요기능	사용자
①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행정관리시스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인허가사후관리행정처분 정보 등 통합 공유	식약처 지자체
② 식품안전나라 (대국민 정보제공시스템)	공공정보의 민간 개방·공유 및 대국민(위생용품업체) 맞춤정보 제공	국민 위생용품업체

* 표준코드를 기반으로 2개의 시스템 및 개별 정보 연계·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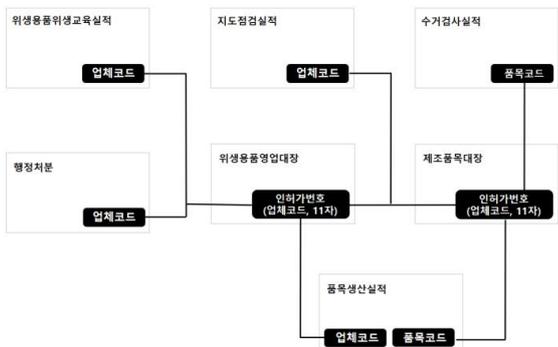
나.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의 기능 (위생용품)

- 1) 식약처 및 지자체 공무원이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위생용품 행정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 위생용품행정 업무처리 시스템

구분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식품안전나라
기능 분류	식약처 소관 업무 처리기능	식약처·지자체 공통업무 관리 기능	전국단위 통합 위생용품정보 조회 기능
제공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업 인허가 등 식약처 민원처리 기능 원재료 코드 등 기준정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도·점검 및 수가·검사 등 사후 관리 등 공통 행정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영업·품목대장, 수입위생용품 정보, 점검·수가, 행정처분 등 통합DB

다.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의 특성(위생용품)

- 1) (실시간 전송)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입력한 인허가·단속·수검·검사·행정처분 등 실적과 식약처 실적을 실시간 연계하여 전국DB 구현
- 2) (정보 상호연결) 영업·품목 인허가대장, 업체점검, 수가검사, 행정처분, 생산실적, 위생교육 등 일체의 위생용품행정 정보가 업체·품목코드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도록 기능 설계·구축



3) (표준코드 활용)

- 가) 전국 위생용품업체와 모든 제조위생용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업체·품목 관리의 실효성 제고
- 나) 위생용품 원재료에 코드를 마련하여 사용가능 원료 여부를 품목보고(신고) 단계부터 확인
- 다) 위생용품유형, 법령조항, 시험항목, 처분기준, 행정처분 유형 등을 코드화하여 정보 관리의 효율성 제고
- 4) (중합정보 제공) 위생용품업체와 제조위생품을 중심으로 모든 안전관리 이력을 종합적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라.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정보의 활용 (위생용품)

'통합 업체대장 조회' 또는 '통합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조회' 등에서 업체 또는 제품에 관한 종합 정보를 조회·확인하여 업체 또는 제품의 안전관리에 활용

예시: 개별 업체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글 요약정보'로 조회·다운로드 가능
 인허가 번호·일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일반사항, 보고(운영)품목의 수, 위생용품유형별 품목수, 최근3년간 지도점검 횟수, 최근지도점검일, 최근3년 처분내용, 사업장면적, 생산실적합계금액, 급수시설, 자가품질검사방법, 최근2년 위생교육실적, 수입실적 등

* (접속경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 통합식품행정 정보조회 → 업체조회 → 통합 업체대장 조회 또는 통합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조회

마.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및 접속경로

1) 기관별 위생용품 행정관리시스템

기관	업무시스템	주요 단위업무
시·도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통합사후관리(지도점검, 수가검사), 통합식품행정정보조회, 품목 조회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통합사후관리(지도점검, 수가검사), 통합식품행정정보조회, 품목 조회, 생산실적보고·위생교육·감시원
시·군·구	새 행정시스템	인허가(제조업, 물수건처리업), 행정처분, 지도점검, 수가검사, 품목제조보고 등 * 생산실적보고 및 품목제조보고를 방문(팩스)등으로 새 행정시스템에서 처리한 경우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으로 연계 전송됨



2) 단위업무별 행정관리시스템 접속경로

단위업무	접속경로
인허가(수입업)	행정업무처리[식약처] > 위생용품 > 민원관리
행정처분 관리	행정업무처리[공통] > 통합사후관리 > 행정처분관리
지도점검 관리	행정업무처리[공통] > 통합사후관리 > 지도점검관리
수거검사 관리	행정업무처리[공통] > 통합사후관리 > 수거검사관리
품목제조보고 관리	행정업무처리[공통] > 품목조회 > 품목조회
(소비자)위생용품 위생감시원 관리	행정업무처리[공통] > 생산실적보고,위생교육,감시원 > 감시원관리
생산실적보고 관리	행정업무처리[공통] > 생산실적보고,위생교육,감시원 > 생산실적관리
위생교육 관리	행정업무처리[공통] > 생산실적보고,위생교육,감시원 > 위생교육관리
기준정보 관리	행정업무처리[공통] > 기준정보 조회 > 기준정보조회

※ 단위업무별 행정관리시스템 사용방법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통합게시판의 "교육자료(자료실)"에 게시된 「2020년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사용자(공무원) 지침서」 참조

<위생용품안전관리 시스템 이용 자료>



III

유통단계 위생용품 안전관리

III 유통단계 위생용품 안전관리

1. '22년 위생용품 안전관리

가. 기본방향

- 1) 다빈도 부적합 항목 및 안전관리 취약사항을 집중개선으로 위반품목 및 유통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정착
- 2) 단속과 함께 지도·계몽·교육 등 실질적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을 통한 위생용품제조업소·위생물수건처리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 3) 영업자(영업자 단체)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제조기준 및 위생취약 등을 보완·개선으로 선제적 안전관리
- 4) 일회용 깃가락, 손가락, 포크, 컵 등 행락철 나들이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위생용품 집중 안전관리
- 5) 위생물수건이나接客업소용 물티슈 등 제품의 특성상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부적합 우려가 높은 제품의 지속적 안전관리
- 6)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통계자료를 활용한 미점검 업체, 다빈도 행정처분 업체 등을 관리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7) 지도·점검 시 업계의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적극 유도하도록 위생물수건 처리업의 자율점검표 활용

2. 위생용품 안전관리 체계

가. 목적

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체계적인 지도·점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단속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등 안전지도 및 점검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나. 기본방향

- 1) 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체계적인 지도·점검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위생용품에 대한 신속대응 체계마련 및 선진국수준의 위생용품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행정응원 및 상호 파트너십 구축
-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여건, 지도·점검 업무의 세부 활동별 특성, 위생용품안전관리 여건, 업무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능적 역할분담체계」를 구축·시행
- 3) 지방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파트너십 구축
 - 가) 시·도 및 지방식약청은 「위생용품감시업무협약체」를 구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
 - 시·도 또는 지방식약청은 감시단속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사건에 상호 협의하여 합동단속 실시 또는 감시·단속인력 상호 지원 등 유기적으로 협조체계 유지
 - 나) 지방식약청은 관내 시·도에 대하여 위생용품 안전에 관한 각종 교육, 기술 및 정보 등을 적극 지원 추진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시험분석업무에 대하여 시험분석 기술 지원 및 시험분석 업무 협조 등

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세부 기능별 역할분담 체계

번호	업무별	식약처	지방 식약청	시·도	시·군·구
1	위약계층 이용 제품 안전관리	○ 총괄계획 수립 및 운영	○ 지방정부 행정응원에 대한 지원	○ 위약계층용 품목 제조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	○ 위약계층용 품목 제조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 ○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업체 홈페이지 공개(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른 내용)
2	전국 합동단속	○ 총괄계획 수립 및 운영	○ 시·도 합동단속 지원·참여	○ 총괄계획에 따른 시·도 단위 계획 수립 및 시행	○ 합동 단속 참여
3	위생취약 제품 안전관리	○ 총괄계획 수립 및 운영	○ 지방정부 행정응원에 대한 지원	○ 위생취약 품목 제조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	○ 위생취약 품목 제조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 ○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업체 홈페이지 공개(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른 내용)
4	위생용품 수입업소 관리	○ 총괄계획 수립 및 운영	○ 위생용품 수입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업체 홈페이지 공개(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른 내용)	○ 지방식약청 행정응원에 대한 지원	○ 위생용품 수입업소 지도점검
5	다빈도 위반업소 중점 점검	○ 관리지침 제·개정	○ 다빈도 위반업소 관리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업체 홈페이지 공개(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른 내용)	○ 다빈도 위반업소 관리	○ 다빈도 위반업소 관리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업체 홈페이지 공개(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른 내용) 등
6	위생용품 제조·처리·수입·유통업소 지도·점검	○ 관리지침 제·개정 ○ 기획·계통 조사 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 위해정보에 따른 기획·계통조사	○ 관내 업체에 대한 총괄계획 수립·운영	○ 관내 업체 지도·점검 세부계획 수립·시행
7	위생약품의 수거·검사	○ 관리지침 제·개정 ○ 총괄계획 수립·운영조사	○ 위생용품 사고에 따른 확인조사 ○ 기타 분부 지시에 따른 수거·검사업무 수행 ○ 수거검사 시행	○ 관내 연간 수거검사 총괄계획 수립·운영 ○ 위생용품 사건사고에 따른 관내 확인조사 ○ 수거검사 시행	○ 관내 연간 수거검사 계획에 따른 위생용품 수거검사 실시 ○ 위생용품 사건사고에 따른 관내 확인조사

번호	업무별	식약처	지방 식약청	시·도	시·군·구
8	위생용품의 허위·과대 광고 관리	○ 관리지침 제·개정 ○ 광고 모니터링 - 인터넷사이트 - 홈쇼핑·중앙일간지등 - 인터넷(이커머스) * 사이버조사단	○ 본부 지시 사항 등 단속 ○ 광고 모니터링 - 인터넷, 무가지 - 홈쇼핑·중앙일간지등 ○ 관내 총괄 관리 ○ 위반업소 단속	○ 광고 모니터링 - 지방지 지방TV 방송 - 지역 케이블 방송 - 인터넷, 무가지 ○ 관내 총괄 관리 ○ 위반업소 단속	○ 광고 모니터링 - 지방지, 지역생활정보지 - 지역 케이블 방송 ○ 관내 위생용품판매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 위반업소 단속
9	부정·불합 위생용품 관리	○ 관리지침 제·개정	○ 지침에 따라 자체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 지침에 따라 자체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 지침에 따라 자체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10	위생용품 민원관리	○ 관리지침 제·개정	○ 지침에 따라 민원처리 - 홈페이지 민원신고 센터 운영	○ 지침에 따라 민원처리 - 홈페이지 민원신고 센터 운영	○ 지침에 따라 민원처리 - 홈페이지 민원신고 센터 운영
11	국내 위생용품 사고(인론 이슈) 등에 대한 대응	○ 전국 총괄관리 및 언론대응 * 사안발생시 별도 시행	○ 위해정보 및 사회문제 우려 제품에 대한 긴급 수거·검사 - 사실 확인 추적조사	○ 중앙지시에 따른 기초 단계기관의 현장 확인 점검 및 수거검사 지휘관리	○ 중앙지시에 따른 현장 확인점검 및 수거검사

라. 지도·점검 실적 등 통계관리

- 1)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등 모든 실적은 당일 입력을 완료하여 통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 2) 시스템 입력 시 내용이 누락되거나 상이하지 않도록 입력 철저
* 서식을 통한보고(문서시행)는 일부를 제외하고 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함

구분	시스템
시·군·구	서울행정시스템
시·도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식약처(지방식약청)	식품행정통합시스템

* 지도·점검 시 적발사항이 없는 경우도 점검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여부 입력 철저

3. 위생용품 영업소 지도·점검

가.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14조(출입·검사·수거 등)

나. 지도·점검 추진일정

'22년	점검명	점검기간	주관기관 (참여기관)
1	행락철 나들이 성수품목 제조업소 관리	3.21.~25.	지자체
2	위생용품전국합동단속	5.23.~27.	지자체(지방식약청)
3	하절기 위생취약제품 중점점검	7.18.~22.	지자체
4	수입 위생용품 영업소 안전관리	9.19.~23.	지방식약청
5	다빈도 위반업소 중점관리	10.17.~21.	지자체
6	위생취약분야 안전관리 지원	연중	지자체

다. 지도·점검 건수

- 1) 시·도별 지도·점검 목표건수(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거처리업)

구분	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점검건수	291	44	63	47	41	32	30	22	12	
구분	소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점검건수	859	311	37	126	80	45	47	100	90	23
총계	1,150									

* 경기도는 전년도 점검 이력이 없는 업소와 부적합 이력업체를 우선 점검

2) 지방청별 지도·점검 목표 건수(위생용품수입업)

구분	계	서울청	부산청	경인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점검건수	400	145	45	110	35	20	45

* 부적합이력업체 및 수입이력이 많은 업체를 우선 점검

라. 지도·점검 절차 및 요령

절차	요령
지도점검반 편성	지도점검의 객관성 및 투명성 유지를 위하여 2인 1조 편성을 원칙으로 함 * 감시인력 등 갑안,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적극 활용
증표제시	출입·검사 또는 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 등)제시
출입·검사 목적 등 서류 제시	출입·수거·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영업자에게 조사기간, 범위, 조사담당자, 관계법령 등의 서류를 제시
확인(자인)서 징구	출입 검사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영업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자인)서를 징구하여야 함 * 증빙서류 및 사진 등 증거물 확보
수거증 발급	검사를 목적으로 검체를 수거하는 경우 반드시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함

마. 행정사항

- 1) 무신고 제품, 무표시 제품 및 제조일자 변조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행위자 적발 후 형사고발 조치
- 2) 인체 위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제조일자 또는 내용량을 허위 표시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에 불시 출장하여 영업 전반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 3) 위생용품 위생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지도하고 사후관리 철저
- 4)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그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
 - * 위생용품을 제조·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 (후)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수입·위생처리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위생용품 시행규칙 별표 7 1. 일반기준 제11호나목](위생용품 시행규칙 개정, '20.7.22.)
- 5)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및 '새울시스템'에 자료 입력
 - 당일 점검 및 제품 수거·검사 내역 입력
 - 점검결과(적합/부적합) 반드시 입력
- 6) 점검 업체 출입 시 영업자에게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기관장(부서장) 명의의 "협조서한문" 교부 및 시설의 책임자가 확인·서명한 수령증 회수(복명서에 첨부)
- 7) 적발된 위반사항은 관련 제품명, 영업소 명칭, 위반내용 등을 각 행정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적극 공개(위반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 내용)
 - *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점검자 종합의견을 "점검내용"에 반드시 등록하여 다음 점검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필수 입력
 - 점검내용(점검자 의견)

(ex) 영업자의 위생 인식 여부, 위생관리가 잘되고 있는 부분 또는 미흡한 부분, 현장에서 지도한 내용 등 후임 점검자가 영업장의 전반적인 위생관리를 알 수 있도록 육하원칙을 적용하여 작성

8) 위반사실의 공표 기간 가이드라인

- 가) (압류·폐기) 6개월
- 나) (영업정지처분) 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 다) (영업소 폐쇄) 폐쇄일로부터 2년

3-1. 행락철 나들이 성수품목 제조업소 관리

가. 목적

행락철 성수위생용품 제조업소 등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보건수준 향상

나. 대상

행락철 나들이 성수품목인 일회용 컵가락·숟가락·포크·나이프·컵·종이냅킨·빨대 등의 품목을 제조하는 위생용품제조업소 점검 및 관련제품 수거·검사

다. 추진일정: 3.21.~3.25.

라. 주요점검 사항

- 1)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탈피하고 위해분야 및 안전취약분야 위주로 집중 점검
- 2)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및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유통 판매 여부
- 3) 무표시 제품의 유통 판매 여부
- 4)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마. 행정사항

- 1) 단속결과 위반업체는 언론,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단속의 실효성 제고(위반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 내용)
- 2) 상습·고의 또는 위해위생용품 사범은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병행
- 3) 점검내역 및 수거·검사의뢰 내역 등 모든 실적은 당일 전산시스템 입력
 - * 행정처분 등 조치내역 식품행정통합시스템(새울시스템) 입력 철저
- 4)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당해 영업소에 출장하여 해당 제품 압류조치(부적합제품 유통·확산 조기 차단)

3-2. 위생용품 전국합동단속

가. 목적

전국적인 동시 단속이 필요한 위생용품 등에 대해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기관별 정보공유 및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안전한 위생용품 공급기반 마련

나. 추진일정: 5.23.~5.27.

다. 기본방향

- 1) 시·도 주관으로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 2) 온라인 간편식, 배달음식 등에 사용되는 위생용품 제품 및 상습·고의적 위반업소 중점 단속
 - * 일회용 젓가락·숟가락·포크·일회용 컵·일회용 빨대, 위생물수건,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3)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이력 품목 제조업소 등 우선 점검
- 4) 반복 위반 업체 및 최근 미점검 업체 등 집중 점검으로 위해요인 사전 제거
- 5) 소비제품 수거·검사로 국민 신뢰성 확보
 - 제조 및 유통 위생용품에 대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검사 실시
- 6) 단속계획을 사전에 공지하고 적발된 위반사항 언론에 보도

라. 추진체계

- 1) 식약처: 총괄계획 수립 및 운영
- 2) 지방식약청: 시·도 단속 지원·참여
 - 지역 간 교차점검이 아닌 지역 내 합동점검 위주로 점검반 편성
- 3) 시·도: 세부 단속계획 수립·시행(관할 지역 운영 총괄)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수거 제품에 대한 정밀검사
- 4) 시·군·구: 지도·단속 참여
- 5) 점검결과와 객관성·투명성 확보 위해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참여

마. 행정사항

- 1) 점검 및 수거검사결과 보고
 - 지도·점검 내역 당일 전산시스템 입력
- 2) 위반사항 중 고의적, 상습적 위반 또는 인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 등 아래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고발처분 병행
 - 무신고 위생용품 제조·처리·소분 영업 행위
 -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표시한 유통기한) 변조 행위
 -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행위
 - 허용의 성분(BIT 혼합물 등)을 사용하여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행위

3-3. 하절기 위생취약제품 중점 관리

가. 목적

하절기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부적합 우려가 높은 제품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반복 위반한 업체 등을 별도로 중점 점검하여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생용품 관리법령 질서 확립

나. 대상

위생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면봉 등의 품목을 제조하는 위생용품 제조업소와 다빈도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다. 추진일정: 7.18.~7.22.

라. 주요점검 사항

- 1) 유통환경변화(하절기)에 따른 부적합 우려가 높아지는 위생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면봉의 안전관리
 - * 위생물수건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철지를 위한 자가점검표·교육자료 활용
- 2) 다빈도 위반업소(「위생용품 관리법」을 최근 3년 3회 이상 또는 2회 이상 위반하는 업체)의 안전관리
 - 시·군·구는 관할 신고 업종(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을 대상으로 반기별로(1월, 7월)로 행정처분 이력을 반영하여 선정
 - 중전의 위반사항 등을 중심으로 업체 전반의 위생관리 상태 등에 대한 중점점검 실시

마. 행정사항

- 1) 다빈도 위반업소는 점검 후 3개월 주기로 재점검하여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항 확인
- 2) 점검내역 및 수거·검사의뢰 내역 등 모든 실적은 당일 전산시스템 입력
 - * 행정처분 등 조치내역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입력 철저
- 3) 중점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사고발 병행

3-4. 위생용품수입업소 안전관리

가. 목적

위생용품수입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서류검사 등으로 통관된 수입유통 위생용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하여 수입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

나.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14조(출입·검사·수거 등)

다. 추진일정: 9.19.~23.

라. 기본방향

- 1)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불법 수입 위생용품 판매행위 등
- 2) 수입 위생용품의 용도(외화획득용,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용 등)의 판매여부
- 3) 무신고 및 무표시 제품의 유통·판매행위
- 4) 부적합 이력 제품 및 서류검사 통관 제품 수거·검사 실시
 - * 부적합 이력 품목 :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빨대·숟가락·포크·물티슈·냅킨·행주

마. 행정사항

- 1) 단속결과 위반업체는 언론,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단속의 실효성 제고(위반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 내용)

3-5. 다빈도 위반업소 중점관리

가. 목적

「위생용품 관리법」을 반복 위반한 업체 등을 별도로 중점 점검하여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위생용품 관리법령 질서확립

나. 추진일정: 10.17.~21.

다. 기본방향

- 1) 다빈도 위반업소 대상
 - 가) 「위생용품 관리법」을 계속(연 2회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3회 이상)하여 위반하는 업체
 - 나) 대상 업체는 반기별(1월, 7월)로 행정처분 이력을 반영하여 선정
- 2) 중점점검 방법
 - 가) 시·군·구는 관할 신고 업종(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선정
 - 나) 선정 업소 중점점검 실시
 - 중점의 위반사항 등을 중심으로 업체 전반의 위생관리 상태 등에 대한 중점 점검 실시

라. 행정사항

- 1) 점검내역 및 수거·검사의뢰 내역 등 모든 실적은 당일 전산시스템 입력
 - * 행정처분 등 조치내역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입력 철저
- 2) 단속결과 위반업체는 언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단속의 실효성 제고(위반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 내용)
- 3) 중점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사고발 병행
- 4) 점검 후 3개월 주기로 재점검하여 「위생용품 관리법」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해제

3-6. 위생취약분야 안전관리 지원

가. 목적

반복 위반업소 또는 위생취약 영세영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확보 필요

나. 추진 일정 : 연중

다. 기본방향

단속 행정과 함께 지도·계몽·교육 등 실질적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을 통한 위생관리 강화로 제조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판매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

- 1) 시·도 실정에 맞게 자체 계획 수립하여 분기별 1곳 이상을 선정하여 중점 지도·계몽
- 2) 작업장 및 조리기구 청결관리 등 기초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계몽 강화
- 3) 지도·점검 등 관리방법
 - 가) 위생의식 향상을 위한 영업자(종사자) 중심의 교육 실시 및 지도·계몽 활동 강화
 -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선정된 업체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 및 현장 중심의 교육·계몽 실시(자체 계획)
 -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활동보고(위반사항 등)에 대한 확인 필요시 담당공무원의 확인점검 및 지도·계몽 실시
 - 제조가공 또는 처리장 청결, 종사자 손소독, 조리기구 세척·소독 사용 등 기초 위생부분에 대한 중점 지도
 - 지도·계몽 후 최종 위생수준 개선율 평가(연말)
- 4) 행정사항
 - 가) 시·도는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나) 시·군·구 자체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붙임 1> 위생용품제조업소 점검표

위생용품제조업소 점검표

□ 영업신고사항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영업신고번호	
대표자	영업신고번호	
생산제품의 유형		
영업장 면적(㎡)	종사자	연간 매출액(천원)
작업장	노무직	명
실험실	기술직	명
광고	사무직	명
기타	기타	명
연간 생산량(kg)		

□ 지도·점검 현황

구분	세부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위반 또는 현지지도사항
1. 영업(신고)사항 관리	가. 영업신고	○ 영업신고 여부 ○ 영업신고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여부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여부		
	나. 품목제조보고	○ 품목제조 미보고, 미변경 품목 생산 여부 ○ 원료배합비율 등의 적합성 여부		
	다. 변경신고	○ 신고사항 임의변경 여부(업제명, 소재지, 주요설비 등)		
	라. 위생교육	○ 위생교육 수료 여부		
	마. 기타사항			
2. 영업자 준수사항 관리	가. 생산기록 및 원료수불일지	○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작성·보관(3년) 여부 ○ 원료출납관계서류 작성·보관(3년) 여부		
	나. 제품 거래기록	○ 제품의 거래기록 작성·보관(3년) 여부		
	다. 수질검사	○ 지하수(음용수) 수질검사 결과 - 부적합 지하수 사용 여부		

구분	세부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위반 또는 현지지도사항
	라. 무신고 제품 사용여부	○ 위생용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무신고 제조가공 소분·수입 위생용품 사용여부		
	마. 종사자 위생교육	○ 고용한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계획 수립여부 및 정기적 위생교육 실시여부		
	바. 변경내용 기록 저장시스템 설치 운영	○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검사실비에 검사결과와 변경시 그 변경내용이 기록·저장되는 시스템 설치·운영 여부		
	사.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운반하거나 이를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에 사용 여부		
	아. 위탁생산제품 관리	○ 위탁하여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하는 경우 위생관리상태 등 점검 여부(반기별 1회 이상)		
	자. 기타사항			
	3. 보고서류 관리	가. 생산실적 보고 나. 폐기 증명자료 작성 및 보관 다. 기타사항	○ 생산실적 보고 이행 여부 ○ 자사제품제조원료, 외회회득용원료로 수입한 위생용품을 부패변질유류기한 경과 등의 사유로 폐기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작성 및 보관(3년) 여부	
4. 원료관리	가. 기준규격	○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이외의 성분 사용여부 (세척제, 행균보조제)		
	나. 기타사항			
5. 제품제조 관리	가. 제조공정	○ 품목제조보고 성분배합비율 상의 성분외의 원료 사용 여부		
	나. 자가품질검사	○ 검사실, 기기류 및 식약류 비치 여부 ○ 검사실이 없는 업체인 경우 공인검사기관 위탁여부 확인 ○ 품목별 자가품질검사 주기 준수 여부 ○ 자가품질검사 항목 준수 여부 ○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 보관 여부(해당 제품의 검사일로부터 2년간 보관)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유통 여부		
		다. 기타		

<붙임 4 > 분기별 위반업체 점검 현황

위생용품 관리법 점검·위반업체 현황

번호	① 지도점검기관		점검일	② 목적	업체내역			위반내용			행정처분			⑦ 고발여부	⑧ 시스템등록여부
	시·도(지방청)	시·군·구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④ 영업종류	⑤ 위반법조항	⑥ 위반처분기준	⑤ 처분기준	처분일자	⑥ 처분내용		

□ 작성요령

- ① 지도·점검기관 : 지방 식약청인 경우에는 지방청명을 기재
- ② 점검목적 : 합동점검, 일상점검, 특별점검, 기획단속 등
- ③ 영업의 종류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
- ④ 위반법조항 : 위생용품관리법 제7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등
- ⑤ 행정처분기준의 업종별 개별기준 세부항목 기재
- ⑥ 처분내용 : 진행중일 경우는 '진행중', 영업정지 ○○일 또는 영업정지 ○○일 같음하는 과징금○○원으로 구분작성, 감경 또는 가중 처벌 시 사유작성
- ⑦ 고발여부 : 행정처분 병행 형사벌 적용업체의 경우 '고발(고발일:000)'기재
- ⑧ 시스템등록여부 : 지방청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시군구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지도·점검 입력 여부를 ○, ×로 표시

* 상기내용을 엑셀로 작성하여 매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식약처(소관부서)에 제출

4. 위생용품의 수거·검사

가. 목적

위생용품 유형·위해우려 품목 및 검사항목 중심의 효율적 수거검사를 통한 부적합 제품의 유통차단

나. 법적근거

「위생용품 관리법」 제14조(출입·검사·수거 등)

다. 수거·검사 건수

1) 시·도별 수거·검사 목표건수

구 분	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점검건수	1,150	150	150	150	150	150	150	100	50	
구 분	소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점검건수	1,850	500	150	250	150	150	150	250	250	100
총계	3,000									

2) 지방청별 수거·검사 목표 건수

구 분	계	서울청	부산청	경인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점검건수	450	100	100	100	50	50	50

라. 주요내용

- 1) 대상 : 유통 위생용품(수입제품의 경우 서류검사 제품 위주로 수거·검사)
- 2) 기관 : 지방식약청 및 시·도(시·군·구 포함)

- 3) 주기 : 연중
- 4) 검사항목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중 해당 제품 규격 항목
- 5) 추진방법 :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
 - 가) 관할지역 내 제조·처리·수입 위생용품에 대해 우선 책임 수거·검사 실시
 - 나) 수거검사 **부적합 이력 품목 및 통관단계 부적합 이력 품목**을 포함하여 수거·검사 실시
 - * 부적합 이력 품목 : 위생물수건,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빨대·숟가락·포크·물티슈·넝킨·행주 등
- 6) 검체의 특성에 따른 검체 채취기준을 준수하고, 중복 수거·검사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수거·검사
- 7) 도매·전통시장·국도변 슈퍼 등 유통위생용품, 대형 위생용품 판매점·백화점 PB(자체브랜드)제품
- 8)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판매제품* 등 수거검사 강화(세부내역 4-1)
 - * 온라인 수거제품의 경우 구입 영수증, 택배영수증, 관련 제품 사진 등 구매증거를 명확히 확보하고, 수거증의 피수거관에 인터넷 구매로 표시·작성

마. 행정사항

- 1) 수거·검사의뢰 내역 등 모든 실적은 당일 전산시스템 입력
 - * 수거내역 입력(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 시·도(시·군·구) 위생용품담당부서)
 - * 검사결과 입력(지방청 유해물질분석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 시·도별 자체 실시하는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는 해당 계획을 먼저 생성한 후 실적 등록
- 2) 모든 수거·검사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통합 랩스)을 통해 수거검사 의뢰 및 결과통보
- 3) 미 입력 또는 잘못 입력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수정
- 4) 수거검사 기관은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 폐기 대상인 경우 당해 제품

수거장소에 제차 출입·검사하여 당해 제품을 압류조치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

5) 유의사항

모든 수거는 「유상수거」를 원칙으로 하나 출입·검사와 관련하여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음

구 분	대 상 위 생 용 품
무상수거 대상 위생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위생용품을 수거할 때 ○ 위생용품을 압류 또는 수거·폐기하여야 할 때 ○ 수입 위생용품을 검사할 목적으로 수거할 때
유상수거 대상 위생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소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위생용품을 시험검사용으로 수거할 때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개정을 위한 참고용으로 수거할 때 ○ 기타 무상수거대상이 아닌 위생용품을 수거할 때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 가능

- 6)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의 수거·검사는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직접절차에 따라 검체 수거하고 수거증을 작성, 위생용품검사기관에서 검사 후,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
- 7) 적발된 위반사항은 관련 제품명, 영업소 명칭, 위반내용 등을 각 행정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적극 공개(위반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 내용)
- 8) 위반사실의 공표 기간 가이드라인

- 가) (압류·폐기) 6개월
- 나) (영업정지처분) 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 다) (영업소 폐쇄) 게재일부터 2년

4-1. 위생용품의 허용 외 성분 수거·검사

가. 목적

유통·제조단계에서 위생용품에 사용할 수 없는 허용의 물질에 대한 수거·검사로 위생용품 안전성 확보

나. 대상

제조업소, 대형마트, 인터넷(포털사,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개인판매 사이트 등), 방송(지역케이블방송, 홈쇼핑 포함)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위생용품(세척제, 행금 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위생용품의 사용가능 성분 및 원료>

구분	사용 가능한 성분
세척제(1,2,3종) 및 행금 보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1] [별표2] 에 정한 성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이거나 식품 성분으로 인정된 성분 기재되지 아니한 성분은 국의 사용 근거 서류 또는 관련 문헌 등을 제출 후 검토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질 및 제조방법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과 접촉하는 면에는 인쇄하여서는 아니됨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코팅 등)(「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II.공통 기준 및 규격,1.사.)

* 신규 성분코드는 ① 국내제조 제품은 식품안전나라 > 통합민원상담 > 전자민원 > 원재료코드, ② 수입 제품은 수입식품정보마루 > 알람자료 > 원재료 검색 > 성분코드조회 > 성분신청 에서 신청

1) CMIT, MIT와 동일한 계열인 BIT성분을 위생용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삭제 ('20.6월)

* BIT(Benzisothia zolinone), CMIT(Chloromethyl isothiazolinone), MIT(Methyl isothiazolinone)는 '이소시아졸리논' 계열의 화학물질로서 살균·보존제로 사용

2) 관할기관 내의 위생용품제조업소에서 품목제조보고 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에 대한 확인 및 수거·검사 시 해당 성분 검사 의뢰 등 관할기관 자체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 철저

다. 추진일정: 연중

라. 행정사항

- 수거·검사의뢰 내역 등 모든 실적은 당일 전산시스템 입력
 - 행정처분 등 조치내역 식품행정통합시스템(세울시스템) 입력 철저
- ** 온라인 수거제품의 경우 구입 영수증, 택배영수증, 관련 제품 사진 등 구매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고, 수거증의 수거장소란에 인터넷 구매로 표시·작성
-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당해 영업소에 출장하여 해당 제품 압류조치(부적합제품 유통·확산 조기 차단)
- 단속결과 위반업체는 언론,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단속의 실효성 제고(위반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 내용)

4-2. 수입위생용품 집중 수거·검사

가. 목적

수입(통관)단계에서 서류검사, 현장검사 등으로 통관된 수입 위생용품과 국내·외 위해정보 관련 제품 검사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나. 대상

대형마트, 인터넷(포털사,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개인판매 사이트 등), 방송(지역 케이블방송, 홈쇼핑 포함)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입 위생용품

다. 추진일정: 연중

라. 행정사항

- 수거·검사의뢰 내역 등 모든 실적은 당일 전산시스템 입력
 - 행정처분 등 조치내역 식품행정통합시스템(세울시스템) 입력 철저
- ** 온라인 수거제품의 경우 구입 영수증, 택배영수증, 관련 제품 사진 등 구매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고, 수거증의 수거장소란에 인터넷 구매로 표시·작성
-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당해 영업소에 출장하여 해당 제품 압류조치(부적합제품 유통·확산 조기 차단)
- 단속결과 위반업체는 언론,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단속의 실효성 제고(위반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 내용)

<붙임 1> 분기별 수거·검사 현황

기관별 수거·검사 현황

번호	① 수거·검사 기관		수거 목적	② 업체내역			의뢰현황			위반내용			⑧ 시스템등록 여부	
	시·도 (지방청)	시·군·구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③ 영업종류	④ 품목유형	국내/수입	적합/부적합	검사항목 (부적합시)	⑤ 처분기준		⑥ 처분일자

□ 작성요령

- 지도·점검기관 : 지방 식약청인 경우에는 지방청명을 기재
- 점검목적 : 합동점검, 일상점검, 특별점검, 기획단속 등
- 영업의 종류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
- 위반법조항 : 위생용품관리법 제7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등
- 행정처분기준의 업종별 개별기준 세부항목 기재
- 처분내용 : 진행 중 일 경우는 '진행중', 영업정지 ○○일 또는 영업정지 ○○일 갈음하는 과징금○원으로 구분작성, 감경 또는 가중 처벌 시 사유작성
- 시스템등록여부 : 지방청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시군구는 「서울행정시스템」에 지도·점검 입력 여부를 ○, ×로 표시

* 상기내용을 엑셀로 작성하여 매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식약처(소관부서)에 제출

5. 위생용품의 허위·과대광고 관리

가. 목적

위생용품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및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표시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건전한 유통·판매 도모

나.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다. 기본방향

- 1) 광고매체별 모니터링 전담자를 지정·운영하여 인터넷, 신문, 방송 등 광고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2) 국내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3) 영업자 및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라. 단속대상

- 1) 인터넷(포털사,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개인판매 사이트 등), 방송(지역케이블방송, 홈쇼핑 포함), 신문, 잡지, 인쇄물 등 일체의 광고매체
- 2) 최근 언론 등에 보도된 제품, 민원신고 제품, 불법 유통 제품 등 중점 모니터링

마. 단속체계

- 1) 식약처, 지방식약청, 시·도, 시·군·구는 각 해당 단속 매체의 모니터링을 실시

식약처(본부)	지방식약청	시·도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과대광고 관리 총괄 ○ 관리지침 제·개정 ○ 광고 모니터링 - 인터넷 사이트 - 홈쇼핑, 중앙일간지, 팟캐스트 등 - 기타 기획 모니터링 * 사이버조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지시 사항 등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 모니터링 - 지방지, 지방 TV 방송 - 지역 케이블 방송 ○ 인터넷, 무가지 ○ 판매 총괄 관리 ○ 위반업소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 모니터링 - 지방지, 지역생활정보지 - 지역 케이블 방송 ○ 판매 위생용품판매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 위반업소 단속

2) 모니터링 운영

- 가) 매체별 모니터링 전담자 지정 운영, 시간, 방법, 매체별 증거물 확보, 위반업소 조치방법 등에 관한 세부 모니터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모니터링 실시
- 나) 방송, 인터넷, 신문(무가지 포함) 등 대중매체 <붙임1>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세부내역 5-1)
- 다)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허위·과대광고 행위 수시 모니터링(현장 정보수집) 실시 및 집중 관리(단속) 강화
- 라) 일일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모니터링 기록 유지

모니터링 일자	모니터링요원 (성명)	광고 매체	매체명	제품명	업소명 (소재지)	모니터링결과	광고내용 요약	조치 사항	비고
						* 적발/부적합 기재 (부적합인 경우 시스템에 등록한 자료 활용)	* 부적합인 경우만 기재	* 부적합인 경우만 기재	

마. 행정사항

- 1) 적발된 위반사항은 관련 제품명, 영업소 명칭, 위반내용 등을 각 행정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적극 공개(위반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 내용)

- 2) 점검내역 및 행정처분 등 조치내역을 식품행정통합시스템(새울시스템)에 입력
- 3)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

<붙임 1>

모니터링 대상 광고매체

- 식약처 : 인터넷 모니터링을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일간지(경제지)와 방송매체를 구분하여 집중모니터링

일간지 (경제지 포함)	식약처 모니터링 대상매체		잡지	
	인터넷 (포털사, 쇼핑물, 소셜커머스 등)	방송매체 (홈쇼핑)		
중앙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일간스포츠 국민일보 스포츠서울 내일신문 문화일보 스포츠동아 한겨레 서울신문 한국스포츠경제 한국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스포츠조선 매일경제	포털사	네이버 다음 구글 유	여성동아 여성조선 퀵 매종 헬스조선 맘&안팎 쿠렌 우먼스 베스트메이비 베이비 앙쥬플러스	
	쇼핑물	홈플러스 주식회사 이마트 롯데마트mall NH채움볼 ㈜현대홈쇼핑 (주)CJO쇼핑 (주)GS홈쇼핑(GS샵) (주)NS쇼핑 롯데홈쇼핑(롯데몰) ㈜롯데닷컴 (주)홈&쇼핑 공영홈쇼핑 ㈜신세계 ㈜이랜드리테일(뉴코아) (주)AK인터넷쇼핑물		현대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공영홈쇼핑
	소셜커머스	(주)포워드벤처스(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오픈마켓	(주)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SK플래닛(주)(11번가) 주식회사 인터파크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스토어팍)		
기타	팟캐스트			

- 시·도(시·군·구) : 각 지역별 지방지 및 지방TV방송, 지역케이블방송, 지역생활정보지, 무가지, 잡지, 전단지 등을 집중모니터링
 -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일보, 경남신문, 경북매일, 경북일보, 경상일보, 경인일보, 국제신문(부산), 광주일보, 대구일보, 대전일보, 매일일보(대구), 부산일보, 영남일보(광주), 전남일보, 전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중도일보(대전), 중부매일(충북), 중부일보(경기수원), 제주일보, 충청투데이(대전), 한라일보(제주), 매일신문(대구), 한경비즈니스(서울) 등

6. 부정·불량 위생용품 관리

가. 목적

부정·불량 위생용품의 제조·소분·처리행위 등에 대한 기획단속으로 위생용품 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습·고의적 위법위생용품 사범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강력한 단속으로 위법행위 근절

나. 업무역할체계

1) 지방식약청

- 가) 위생용품 위해방지를 위한 기획·계통조사
- 나) 국내·외 위해정보에 대한 기획단속 및 수사의뢰
- 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위생용품안전 문제나 소비자 불만사례 및 안전·위생관리 개선이 필요한 분야
- 라) 소비자 기만행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2) 시·도(시·군·구)

- 가) 관내 무신고 위생용품 등 부정·불량위생용품에 대한 정보수집 및 단속
- 나) 상습·고의적 위법위생용품 사범에 대한 수사의뢰

다. 단속 방법: 위해사범 위주의 기획단속 및 계통조사 실시

- 1) 필요시 식약처 및 지방청, 지자체 간 업무 공조체계 유지 및 합동단속 실시
- 2) 시·도는 전국적 규모의 기획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약처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합동단속 실시
- 3) 기타 식약처장,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라. 단속결과 조치

- 1) 단속결과 위반업체는 언론,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단속의 실효성 제고(위반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 내용)
- 2) 상습·고의 또는 위해위생용품 사범은 수사하여 사법 조치 및 행정처분 병행

마. 행정사항

- 1) 수집된 정보사항 중 다른 기관 관련사항은 신속한 단속을 위해 해당 기관에 즉시 이첩 또는 통보
- 2) 형식적 지도·점검을 탈피하고 위해분야 및 소비자 기만행위 항목 위주로 집중 점검
- 3) 점검내역 및 행정처분 등 조치내역을 식품행정통합시스템(새울시스템)에 입력

7. 위생용품 민원관리

가. 적용범위

- 1) 해당기관 : 지방식약청, 시·도, 시·군·구
- 2) 대상 : 「위생용품 관리법」을 적용 받는 위생용품

나. 민원 신고방법 : 전화, 온라인, 일반우편(서면), FAX, 방문 등

다. 조사·처리기간

- 1) 중대 피해사고 민원신고에 대한 보고
 - * 소비자의 중대 피해사고 민원신고에 대한 신속한 조사·처리를 위해 식약처(위생용품정책과)로 유선 보고 및 협의
- 가) 동일 제품에 대한 다발성 신고
 - 나) 어린이 피해 등 인체 상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한 신고
 - 다) 처리기관에서 위해하거나 중대한 피해 사례로 판단되는 신고 등
- 2) 민원신고 후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중간 조사 진행상황 통보(문자·이메일)
- 3) 민원신고 후 14일 이내 최종 조사결과와 민원인에게 통보
 - * 조사결과 통보 방식 : 서신 통보를 원칙으로 하고, 민원인 요청의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
- 4) 조사·처리가 지연될 경우(수거·검사 진행 등) 신고인에게 민원처리기간 연장 통보(공문)

라. 민원 정보보호 철저

-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규정 준수
- 2)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보관리 철저

마. 관리체계 및 행정조치

1) 관리체계

가) 지방식약청

- (1) 지방식약청 누리집(홈페이지)의 신고센터 접수민원 처리
 - * 각 지방식약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신고센터 개설
- (2) 타 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 처리
- (3) 민원 신고 사항을 동 신고센터에 등록 관리

나) 시·도(시·군·구)

- (1)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의 신고센터 접수 민원 처리
 - *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신고센터 개설
- (2) 타 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 처리
- (3) 민원 신고 사항을 동 신고센터에 등록 관리
 - * (공통)조사기관 민원 종결처리 시 반드시 종결처리 기관에서 민원인에게 결과 회신

2) 행정사항 및 처리절차

가) 민원 신속 조사·처리

- 접수 또는 이첩 받은 신고내용에 대해 처리지연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신속 조사 결과 회신

나) 위생용품관련 민원은 반드시 최초 접수받은 기관에서 접수·처리(이첩)토록 하고 관할기관이 아니라는 사유로 접수를 거부하지 말 것

다) 조사결과 '민원인'에게 통보 방법

- 민원인이 조사결과를 인지하지 못하여 재 신고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종 조사기관에서는 반드시 민원인에게 공문 등으로 조사결과 통보
- 라) 점검내역 및 행정처분 등 조치내역을 식품행정통합시스템(새울시스템)에 입력

8. 지도·단속업무의 투명성 제고

가. 목 적

공무원의 위생용품 관련 업체 단속시 적발(위반)사항을 투명하고 명료하게 처리함으로써 부패발생을 근절하고 단속의 투명성 확보와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함

나. 대상업체

위생용품 관리법령에 의한 제조·수입·소분·처리 등 위생용품 관련 영업자

다. 조치사항

- 1) 단속기관 부서장 또는 관리자 서명 및 일련번호가 부여된 「확인서」를 사용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
- 2) 출입·검사·수거 등을 위해 위생용품관련업체 현장방문 시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등이 기록된 관련서류를 영업소 관계자에게 제시 및 기관장(부서장) 명의의 "협조서한문"을 교부하고 업체의 책임자가 확인, 서명한 수령증을 회수 받아 복명서(접검표 등)에 첨부

라. 행정사항

- 1) 지방식약청 및 각 시·도(시·군·구)는 「확인서」를 인쇄하여 사용
- 2) 「확인서」에 부서장 또는 관리자 서명(사인, 도장, 철인 등)을 실시
- 3) 관련 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확인서」를 관리하고 파손되거나 훼손된 「확인서」가 있는 경우 그 경우를 조사·기록토록 조치
- 4) 지방식약청 및 시·도(시·군·구)는 <붙임1>의 『위생용품 위생관리 업무 수행 시 제시 서류(예시)』 및 <붙임2>의 『협조서한문(예시)』를 참조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게 제작·사용

<붙임 1>

■ 출입·검사·수거 등 안내 ■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위생용품의 위해방지 및 위생관리 등을 위해 출입·검사·수거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목적
위생용품수입업체 특별기획 단속
2. 조사기간 및 대상
○ 2022. 00. 00. ~ 00. 00.(0일간)
○ 원료 사용이 많아 원료를 야적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 위생용품 관리법령 위반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 원료관리, 자가품질검사, 위생적 취급기준 등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 000, 000 / 00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5. 조사 대상 자료의 목록
○ 영업신고증, 품목제조보고서, 수입신고서
○ 생산·작업일지, 원료수불일지, 제품 거래기록서류 등
6. 조사 관계 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14조(출입·검사·수거 등)
*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 기피한 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32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필요시 기재

■ 압류·폐기처분 등 안내 ■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위해위생용품 등을 압류·폐기조치 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압류·폐기의 목적
○ (예시) 위해위생용품의 압류·폐기를 통한 유통·판매금지로 소비자 보호
2. 압류·폐기의 대상 및 기간
○ 2022. 00. 00.
○ 업체명 : 000위생용품(00시 00구 000로 000)
3. 압류·폐기 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 홍길동, 000 / 00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4. 압류·폐기 대상 제품에 관한 사항
○ 제품명 : 0000 (제조일자 : 2018.00.00)
○ 압류·폐기사유 : 기준 및 규격 위반 제품 제조판매
- 기준 : 형광증백제 불검출, 결과 : 검출
5. 압류·폐기 관계 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폐기처분 등)
* 압류·폐기를 거부·방해, 기피한 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32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필요시 기재

■ 영업소 폐쇄조치 등 안내 ■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것에 대하여 영업소 폐쇄조치 등을 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목적
○ 소비자 보호 및 영업질서 유지를 위해 무신고 업소 폐쇄조치
2. 조사기간 및 대상
○ 2022. 00. 00.
○ 업체명 : 000위생용품(00시 00구 000로 000)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시물의 제거·삭제,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봉인조치 등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 000, 000 / 00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5. 조사 관계 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19조(폐쇄조치 등)
* 관계 공무원이 부작한 봉인 또는 게시문 등을 합부로 제거·손상시킨 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32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필요시 기재

<붙임 2>

■ 협 조 서 한 문(예시) ■

우수·안전위생용품 생산과 위생용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업체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약처에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CLEAN 식약처』 실천운동을 전 직원의 참여하에 전개하고 있으며, 민원업무 처리나 업소 지도단속 업무시 어떤 명목으로도 업소나 직무와 관련된 자료부터 자랑권의, 식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기로 결의하고 그 실천의지를 높이 나가고 있습니다.

귀 업체에 출장 중인 식약처의 공무원이나 동행한 관계자가 부조리한 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가 있을 때는 다음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로 보장하겠으며 향후 민원처리에 있어 추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식약처 누리집(홈페이지)(www.mfds.go.kr)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 식약처 위생용품정책과(TEL 043-719-1701, FAX 043-719-1710)

2022. .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서명)
 (서 명)

협조서한문 수령증

○ 수령일자 :
 ○ 수 령 자 : [업소명] [직위] [성명] (서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붙임 3>

확인서 서식

발급(일련)번호: 호 **부서장** (서명)

확 인 서

업종		영업신고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본인은 상기 업체의 (으)로서 위의 장소에서 영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 년 월 일 시경 의해 다음 사항이 적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다 음

확 인 자 : 주소 (서명) 주민등록번호 :
 성명 (서명)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IV 동관단계 위생용품 안전관리

1. 수입 위생용품 검사

가. 법적근거

- 1)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 2)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 3)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 및 [별표3]

나. 검사대상

관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해 수입신고된 위생용품*

* 위생용품: 세척제, 행금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포크·나이프·빨대,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 일회용 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 티슈(19품목)

다. 검사의 종류 및 대상

- 1) 서류검사 및 대상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3 1. 가.)
- 가) 수입신고용도가 자사제품의 원료용, 연구·조사용, 의화획득용에 해당하는 경우
* 자사제품 원료: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위생용품
- 나) 동일사 동일 수입위생용품으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 재수입한 경우
 - (1) 세척제, 행금보조제: 제품명,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원료명 및 배합비율이 같은 것
 - (2)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제품명,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원료명이 같은 것

- (3)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제질 및 색상(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한한다)이 같은 것
- (4) 일회용 이쑤시개: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제질 및 색상(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한한다)이 같은 것
- (5)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면봉·기저귀·팬티라이너,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 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한 제품: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원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것
- 다)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위생용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 라) 의화획득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에 전시(소비자·관람자 등에게 제공·판매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위생용품
 - 마)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위생용품 중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수출하려는 위생용품 또는 국내에 유통 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서 그 반송사유가 위생용품의 변질이나 위생상 위해가 아닌 위생용품
 - 바)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관정을 받은 이력이 없는 수입 위생용품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위생용품
- 2) 현장검사 및 대상
제품의 성질·상태·색깔·냄새·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를 포함(「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3 1. 나.)
 - 가) 서류검사 대상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위생용품
 - 나)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 안에서 압류·물수하여 검사 요구한 것으로 그 물량이 '기준 및 규격의 검사'에 필요한 수거량의 10배 이하인 수입 위생용품

- 3) 정밀검사 및 대상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3 1. 다.)
 - 가) 최초로 수입하는 위생용품
 - 나) 정밀검사를 받은 후 기준 및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수입 위생용품
 - 다) 검사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재수입되는 동일사 동일수입위생용품(정밀검사 5회 실시)
 - ※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서류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고 재수입되는 경우를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
 - (1) 부적합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위생용품: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의로 정밀검사 대상을 정하여 실시
 - (2) 부적합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재수입되는 위생용품: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실시
 - 라) 부적합 제품의 반송·반출·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한 용도와 달리 사용(다른 용도로 전환)한 영업자가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위생용품
 - 마) 국내의 안전정보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용품
 - 바)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위생용품 중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수출하려는 위생용품 또는 국내에 유통 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서 그 반송사유가 위생용품의 변질이나 위생상 위해에 해당하는 위생용품
 - 사) 현장검사(이하 "현장검사"라 한다) 결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 위생용품
- 4) 무작위표본검사 및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3 1. 라.)
 - 가) 정밀검사를 받은 위생용품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인 수입 위생용품 중 위생용품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 위생용품

- 나) 수입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용품
- 라. 검사 지시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철저 등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정보 등에 따라 검사 지시한 품목에 대하여 지방식약청은 철저한 검사를 실시할 것
 - 2) 수입 위생용품의 신속하고 원활한 유통 추적조사를 위하여 수입신고 시 여러 제조일자(또는 유통기한)가 혼재된 제품의 경우,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 3쪽에 모든 제조일자(또는 유통기한)별 수량, 중량, 금액을 기재하도록 관리
 - 3) 지방식약청은 수입위생용품 전산망 품목입력에 철저를 기하고 코드 등을 입력 할 경우 누락되거나 오기되지 않도록 할 것
 - 4)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관련 [별표 3] 제2호마목에 따라 지방식약청은 수입신고 받은 수입 위생용품이 법 제11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적합하지와 법 제12조에 따른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확인하도록 할 것
- 마. 현장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활성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관련 [별표 3] 1.나.1) 및 라.2)에 따라 지방식약청은 현장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용품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1) 자체 현장 검사
 - 가) 서류검사 중 현장검사가 필요한 수입 위생용품에 대해 자체 선정
 - 나) 위해정보, 언론 등을 참고하여 검사 실시
 - 다) 수입과정의 투명성, 전문성 및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위생용품 위생감시원 참여 필요
 - 2) 자체 무작위 검사
 - 가) 수입되는 위생용품 특성, 국가별·제조업소별·품목별 부적합 내용 등을

분석하여 대상 품목 및 검사항목 자체 선정

- 나) 자진취하 후 재신고 제품은 무작위검사 실시(전산 수동변경)
- 다) 위해정보, 언론 등을 참고하여 검사 실시

바. 수입 검사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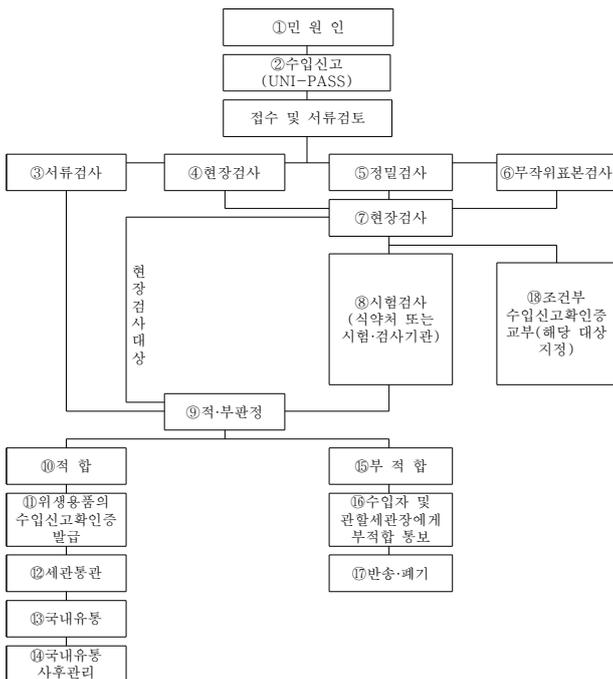
- 서류검사 시 유의사항: 수입신고 용도에 따른 관련 서류 제출 확인
 - 가) 의화획득용: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 포함)
 - 나) 연구조사용: 연구·조사계획서(제조방법설명서, 연구·조사기간, 성분배합비율 등 포함)
 - 다) 수출 반송 위생용품: 반송 사유서
 - 라) 영업신고증 사본의 경우 「대의무역법」에 따라 의화획득용으로 수입하거나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단, 담당 공무원이 위생용품 수입업 등에 대한 기록의 작성·관리 등을 위해 식약처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서류는 반려함.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반려된 위생용품 중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는 표시사항을 보완하여 재수입신고 할 수 있음. 다만,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위생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함.
- 국의제조업소 및 수출업소의 주소란에는 실제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실제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류를 반려함.
-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접수순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며 다만, 이를 이유로 하여 검사가 완료된 위생용품에 대해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확인증의 발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됨.
- 보세구역 등에서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를 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

- 검체의 채취 및 취급은 지방청장이 수입신고인 또는 수입물품의 관리자의 참여 하에 관계 공무원 등을 통해 실시함. 단, 필요시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참여 가능
- 검체의 채취량은 위생용품 시행규칙 별표 6의 수거량에 따름. 단, 검체의 채취로 인한 오염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체의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 가능.(포장단위로 채취한 중량으로 수거증 발급)
 - * 1회용 기저귀: 1kg, 그 외 위생용품: 300g(ml)
- 수입 위생용품이 다른 수입제품과 섞여 있어 해당 수입 위생용품의 확인 및 수입량 파악을 할 수 없거나 대표성 있는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위 환경의 위험 등으로 검체를 수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수입 위생용품을 검사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이송하게 하여 검체를 채취
-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 시 신고제품(최소 수입제품, 서류검사)에 대한 현품 사진을 제출하도록 관리
 - 가) (사진 제출 대상) 최소 수입제품, 서류검사 대상 제품
 - 나) (사진 제출 범위)
 - 제품 전면 사진
 - 최소포장단위 주표시면("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내용량)
 - 최소포장단위 정보표시면(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료명 또는 성분명, 위생용품의 유형, 주의사항 등)
 - 한글표시사항 또는 현품에 부착된 한글표시사항
 - 사진제출 방법 : 컬러본으로 촬영일자 명시
 - * 반드시 국내 반입하여 촬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출지에서 선적전에 촬영한 것도 인정가능
 - 라) (사진 제출 면제 대상) 자사제품의 원료용·연구조사용·의화획득용 수입위생용품
 - 마) (기타 조치사항) 수입신고시, 사진 제출이 어려운 경우 현장검사 실시로 대신

<붙임 1>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수리 절차



* 근거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4조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수리 절차

- 민원인** : 위생교육 이수 후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를 득하고 수입위생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 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서 제출** : 「위생용품 관리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 (위생용품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사진 수입신고할 수 있음)
- 서류검사 대상(처리기간 : 2일)**
 - 신고서류(한글표시 포함)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함.
 - 대 상 : 의화획득용(관광용 제외)·자사제품 제조용·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위생용품, 동일사동일 수입위생용품 등
- 현장검사 대상(처리기간 : 3일)**
 - 제품의 성질·상태·색깔·냄새·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를 포함
 - 대 상 : 서류검사 대상 중 지방청장이 현장검사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수입 위생용품 등
- 정밀검사 대상(처리기간 : 10일)**
 -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
 - 대 상 : 최초로 수입하는 위생용품, 국내의에서 문제 제기된 위생용품 등
-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처리기간 : 5일, 단, 진균수시험대상 10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
 - 대 상 : 정밀검사를 받은 위생용품 등, 지방식약청장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용품 등
- 현장검사**
 - 보관창고 등 현장에 출장하여 현장검사요령에 따라 실시
 - 수거량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실시

- 시료채취 및 취급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 실시

⑧ 정밀검사

-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검사

⑨ 적·부 판정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판정

⑩ 적합 : 「위생용품 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위생용품으로 적합

⑪ 신고확인증 발급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⑫ 세관통관 : 관세 납부 후 내국 물품화

⑬ 국내유통 : 수입위생용품을 제조·가공·판매 등으로 활용

⑭ 국내유통 사후관리 : 지방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

⑮ 부적합 : 「위생용품 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위생용품으로 부적합

⑯ 수입자 및 관할세관장에게 부적합 통보 : 관할 세관장 통보 시 보세구역 운영자로 하여금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하여 일반물품과 구별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내용 포함

⑰ 반송 및 폐기 등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처리

⑱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교부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위생용품

2. 수입 위생용품 신속통관 제도

가. 법적근거

- 1)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 2)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

나. 조건부 신고수리제 운영

1) 대상

- 가) 원료의 수급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위생용품
- 나) 표시기준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
- (1)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정해진 기준의 활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
 - (2) 수출국에서 표시한 제품명, 업체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원료명 또는 성분명, 유통기한 등 주요 표시사항 일부를 가리는 경우
 - (3) 그 밖에 명백한 오탈자 등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고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다)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위생용품의 경우
- ※ 조건부신고수리 신청 제한 적용
- 수입신고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영업자가 수입하는 위생용품
 - 최근 2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위생용품
 - 위생용품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 등이 확인되어 따로 검사 중인 위생용품

2) 조건부 신고수리 처리 절차

- 가) 각 지방청은 상기 조건부신고수리 대상 위생용품에 대해 수입신고인이 보세창고에서의 출고예정일,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관한 사항(작업 또는 입고예정일,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작업 또는 보관책임자)이 포함된 제출 서류를 확인 후 수입신고 확인증

을 발급함.

- 나)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후 지체 없이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서류를 보내 사후관리 요청을 함

- ※ 사후관리 내용: ① 입고사실 확인
② 압류(무작위 검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③ 보완사항 이행여부 확인

3. 부적합 수입 위생용품 관리

가. 법적근거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나. 부적합한 위생용품의 조치 절차

- 1) 위생용품을 검사한 결과 해당 위생용품이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 통보
 - (통보 내용) 검사대상 제품명, 검사항목과 그 기준 및 규격, 검사항목별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한 처리 절차,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지 제15호] 서식 [부적합통보서] 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11호서식의 [거부처분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발송
- 2) 부적합 위생용품의 조치사항
 - 가) 부적합 제품 수입자에게 위생용품이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정밀검사 대상 등에 해당될 수 있음과 동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한 수입신고인이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위생용품은 정밀검사 대상에 해당됨을 해당 수입신고인에게 통지
 - 나) 통관단계 부적합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반송·폐기 이행 여부를 수입신고인 또는 관세청 전산망(수입화물 통관진행정보)을 통하여 확인하고 최종 처리 결과를 수입위생용품 전산망에 입력함.
- 3) 검사결과 부적합 내역 보고
 - 가) 각 지방식약청은 수입검사단계 부적합 사항 중 CMIT, MIT, BIT 검출될 경우 식약처(위생용품정책과)에 즉시 메모 보고

나) 보고 서식

기관	접수번호	처리일자	제조국	제품명	품목	수입업소명	국외제조업소명	부적합 사유		비고
								기준	결과	

4. 유통관리대상 수입 위생용품 사후관리

가. 법적근거

- 1)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2)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

나. 유통관리대상 위생용품

- 1) 자사제품 제조용 위생용품
- 2)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위생용품
- 3) 「대의무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 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은 제외
- 4) 그 밖에 지방청장이 유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생용품

나. 행정사항

- 1) 유통관리 대상 위생용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지방청은 신고수리를 할 때마다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고 유통관리를 요청하여야 함.
 - * 자사제품 제조용이거나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의 경우 주 1회 간격으로 통보할 수 있음.
- 2) 지방청으로부터 유통관리대상 위생용품을 통보받은 관할 기관은 해당 위생용품이 수입신고한 용도 등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
 - * 위반사항이 적발된 때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위한 후 위반내용, 처분결과를 즉시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
- 3) 외화획득용 위생용품에 대한 유통관리를 요청받은 영업자 소재지 관할 지방청은 해당 영업자가 수출 후 14일 이내에 외화획득용 위생용품을 수출하였다는 증빙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5. 위해정보에 따른 통관단계검사

가. 목적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나. 법적근거

- 1)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 2)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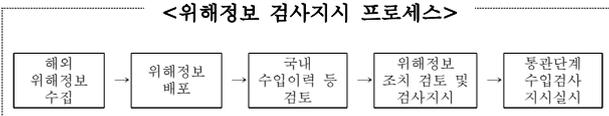
다. 대상

- 1) 위해정보 해당 지역 또는 국외제조업소의 품목
- 2) 언론 및 사회적 이슈 품목

라. 검사방법

- 1) 국내·외 위해정보의 중요성 및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 적용
- 2) 위해정보(위해정보, 언론, 민원 및 사회적 이슈) 발생에 따라 해당 제조국, 제조국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제조업체 해당 위생용품을 선정하여 통관 단계 시 검사 실시
- 3) 위해정보에 따른 수입위생용품 검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속 여부 결정

<위해정보 검사지시 프로세스>



마. 행정사항

- 1) 수거검사 조치 절차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2.나목에 따라 해당 검체를 수거하여 신속하게 시험분석 의뢰
- 2)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 처리 방안
 - 수입업체에 검사결과 및 사후관리(수출국 반송(반출) 또는 폐기) 조치 통보

<붙임 1>

수입 위생용품 검사지시 운영 현황 (기준 : 2021.11.30.)

시행일자	국가	대상위생용품	검사항목	비고
'19.3.12.~	모든국가	세척제	CMIT,MIT,BIT	운영
'20.5.7.~	모든국가	일회용 빨대(천연재질)	목재류 규격	운영
'20.10.26.~	중국	일회용 컵 (종이제, 가공지제, 종이(합성수지제조장)제)	종이제 규격, 합성수지제 규격	운영
'20.11.27.~	모든국가	행군보조제, 식품접착업소용 물티슈	CMIT,MIT,BIT	운영
'19.9.24.~ '21.9.30	모든국가	일회용 면봉 (나무재질 촉에 한함)	면봉과 촉의 접착강도, 촉의 강도	종료
'19.5.22.~ '21.6.30	중국,대만, 베트남,태국	일회용 컵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PET 용출규격항목, 톨루엔,벤조페논, 포름알데히드, 납,카드뮴·수은 및 6가크롬의 합	종료
'21.5.3.~ '21.7.30	모든국가	일회용 젓가락 (목재에 한함)	이산화황	종료
'21.5.3.~ '21.7.30	모든국가	일회용 종이냅킨	형광증백제	종료
'21.5.3.~ '21.7.30	모든국가	일회용 거저귀 (어린이용에 한함)	포름알데히드	종료

* 세척제, 행군보조제, 식품접착업소용 물티슈의 경우,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사 동일 위생용품에 대한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다목 3) 및 4)에 따라 5회 정밀검사 (CMIT, MIT, BIT 포함)를 실시하고 5회 정밀검사 이후부터는 CMIT,MIT,BIT 검사만 실시

V

위생용품 관리법 운영·관리

- 81 -

V. 위생용품 관리법 운영·관리

V 위생용품 관리법 운영·관리

1. 위생용품의 종류 및 유형

가.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및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적용범위

나. 정의

- 1) **세척제** : 야채, 과일,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 가) 1종 세척제 :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과일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 나) 2종 세척제 :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 기구(자동식기세척기 포함)·용기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 다) 3종 세척제 :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 2) **행균보조제** :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행균 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 3) **위생물수건**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재사용 처리해 포장한 제품
- 4) **기타 위생용품**
 - 가) **일회용 손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컵** : 식품과 접촉하는 것으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 나) **일회용 종이냅킨** : 사용자의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위생

- 83 -

2022년도 위생용품안전기준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의 종이냅킨(각테일용 냇킨 포함)

- 다)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 라) **일회용 이쑤시개** : 인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이쑤시개(단, 식품용 기구는 제외)
- 마) **일회용 면봉** : 인체를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반면봉(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
 - (1) 성인용 면봉
 - 어린이용 면봉 이외의 일회용 면봉
 - (2) 어린이용 면봉
 -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면봉
- 바) **일회용 기저귀** : 대·소변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기 힘든 성인 및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기저귀[위생깔개(매트)를 포함]
 - (1) 성인용 기저귀
 - 성인의 일회용 기저귀로 팬티형(입거나 입히는 형), 테이프형(점착테이프 및 기계접착테이프 등으로 고정하는 형), 일자형으로 구분
 - (2) 어린이용 기저귀
 - 만 13세 이하의 유아 및 어린이의 일회용 기저귀로 팬티형, 테이프형, 일자형, 기저귀라이너(천기저귀 및 일회용 기저귀 등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천기저귀 또는 일회용 기저귀 등에 덧대어 사용하는 것)로 구분
 - (3) 성인용 위생깔개(매트)
 - 기저귀 등의 보조수단으로써, 대·소변을 스스로 가리기 힘든 사람의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깔개(매트)
 - (4) 어린이용 위생깔개(매트)
 - 만 13세 이하의 유아 및 어린이의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깔개(매트)

- 84 -

사) **화장지** : 화장실용 화장지 또는 미용 화장지(단,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

* 일회용 타월(종이냅킨, 행주 등), **클렌징 티슈 등

(1) 화장실용 화장지

- 화장실에서 위생을 위해 사용되는 화장지

(2) 미용 화장지

- 일상생활에서 얼굴 등에 사용되는 화장지를 말한다.

아) **일회용 행주** : 주방에서 식품용 기구나 식탁 등을 닦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회용 제품(최초 사용 시 세척하지 않고 사용하는 제품으로 수회 사용 후 폐기하는 제품 포함)으로서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건조 제품

자) **일회용 타월** : 식품의 유·수분 등을 닦아내거나 손의 물기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타월

(1) 키친타월

- 식품과 접촉되어 사용되는 타월

(2) 핸드타월

- 화장실 등에서 손의 물기 제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세용 타월

차) **일회용 팬티라이너** : 질분비물의 위생처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제품(「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품은 제외)

카) **물티슈용 마른 티슈** :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손을 닦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

[표 1] 위생용품의 종류

번호	위생용품의 종류	적용범위	예시
1	세척제	야채, 과일,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제제(洗劑)	
2	행균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행균 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3	위생물수건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재사용 지리해 포장한 제품	
4	일회용 컵	식품과 접촉하는 것으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5	일회용 숟가락	식품과 접촉하는 것으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6	일회용 젓가락	식품과 접촉하는 것으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7	일회용 포크	식품과 접촉하는 것으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8	일회용 나이프	식품과 접촉하는 것으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9	일회용 빨대	식품과 접촉하는 것으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10	화장지	화장실용 화장지(화장실에서 위생을 위해 사용되는 화장지) 및 미용 화장지(일상생활에서 얼굴 등에 사용되는 화장지)	
11	일회용 행주	주방에서 식품용 기구나 식탁 등을 닦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회용 제품(최초 사용 시 세척하지 않고 사용하는 제품으로 수회 사용 후 폐기하는 제품 포함)으로서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건조 제품	
12	일회용 타월	식품의 유·수분 등을 닦아내거나 손의 물기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타월	
13	일회용 종이냅킨	사용자의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위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의 종이냅킨(각테일용 냅킨 포함)	
14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15	일회용 이쑤시개	인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이쑤시개 (식품용 기구 제외)	
16	일회용 면봉	인체를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반면봉 (의약품 및 화장품 제외)	

17	일회용 기저귀	대 소변을 스스로의 힘으로 기리기 힘든 성인 및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기저귀(위생감개매트 포함)	
18	일회용 팬티라이너	질분비물의 위생처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제품(의약품 제외)	
19	물티슈용 마른 티슈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손을 닦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	

2. 위생용품 관리법 요약

주요 목차	상세내용	법
위생용품 범위	✓ 위생용품(19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척제 • 행균보조제 • 위생물수건 • 기타위생용품(16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화장지, 일회용 면봉·기저귀 - 일회용 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행주·타월 - 일회용 팬티라이너(의약품 제외) - 물티슈용 마른 티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조 • 시행령 제2조
영업종류 및 시설기준	✓ 영업의 종류(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제조업 • 위생용품수입업 • 위생물수건처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조
영업 시설기준	✓ 영업의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 지방시약청(위생용품수입업) ✓ 영업 시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 기계기구류 자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기계·기구 목록(없음) • 화장실 설비(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 급수시설, 창고 등 시설, 검사실(위탁 시 제외) ✓ 신고사항의 변경 • 영업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소의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3조 •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3조
품목제조 보고등	✓ 원료·성분명 및 제조방법설명서 등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척제, 행균보조제, 일회용 기저귀·팬티라이너, 물티슈(5개 품목)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생산실적보고	✓ 품목별 연간 생산실적 및 위생처리 실적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7조 • 시행규칙 제11조
수입 신고	✓ 전산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관청 6개 지방시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8조 • 시행규칙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검사 •서류·현장·정밀·무작위표본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검사 주기(5년) ✓검사수수료 신설 * 신고수수료 42,300원(없음) ✓재검사 제도 	및 제13조
기준·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규격에 따라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0조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표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료 또는 성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명은 품목제조보고대상 제품 ✓업소명 및 소재지 ✓제품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위생용품」 글자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1조 * 「위생용품의 표시 기준」(식약처 고시) • 법 제12조
자상품절점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목별 차등화 • 위생물수건 1회이상/월 • 품목제조보고대상 1회이상/3월 • 그외 1회이상/6월 	• 법 제13조
위생감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생용품위생감시원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인 중 위촉 	• 법 제26조 및 제 27조
벌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벌칙)1년, 100만원이하 ✓(행정처분) • 시정명령, 영업정지·폐쇄 • 폐기처분 • 품목제조정지 ✓(과태료)100만원이하 	• 법 제32(벌칙) 등

3. 영업의 신고

가.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1)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2) 신고기관(처리기한) : 시·군·구(3일)

3) 구비서류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참조

가) 영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나) 위생교육 수료증(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위생교육 과정이 개설되지 아니하는 등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

다)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영업신고 관련 확인사항

가)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관련 대장을 통해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도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

나) 신고관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

다) 신고관청은 신청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영업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

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영업신고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관리

5) 영업신고의 제한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로서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6) 행정지원

신고관청은 영업신고나 지위승계신고 시 수리 후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생교육기관에 통보

나. 위생용품수입업

1)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2) 신고기관(처리기한)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지방식약청'이라 한다) (3일)

3) 구비서류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참조

가) 영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나) 보관창고 입차계약서(보관창고를 입차한 경우만 해당)

다) 위생교육 수료증(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위생교육 과정이 개설되지 아니하는 등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해 위생용품수입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서에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증만 첨부

4) 영업신고 관련 확인사항

가)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관련 대장을 통해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도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확인)

나) 신고관청(지방식약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

다) 신고관청은 신청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영업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

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영업신고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관리

5) 영업신고의 제한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로서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6) 행정지원

신고관청은 영업신고나 지위승계신고 시 수리 후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생교육기관에 통보

다. 영업신고증 재발급

1)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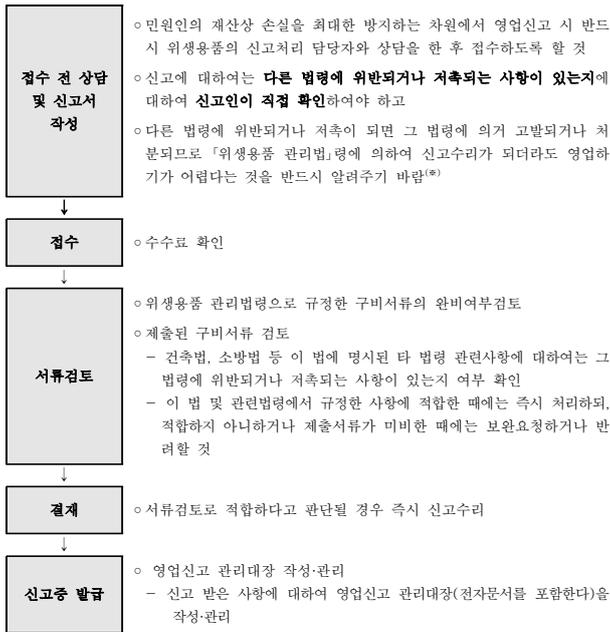
2) 신고기관(처리기한) : 지방식약청 및 시·군·구(즉시)

3) 구비서류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 참조

가)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나) 헐어 못 쓰게 된 영업신고증(영업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 한함)

<표 2> 영업신고 절차 및 검토사항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 여부를 검토하도록 적극 홍보

-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육의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환경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4. 영업의 승계

가.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나. 지위승계 대상

- 1)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함
-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 4)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5) 그 밖에 상기 2)~4)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 ※ 2)~4)의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영업신고는 그 효력을 잃음

다. 신고기관(처리기한) : 지방식약청 또는 시·군·구 (3일)

라. 구비서류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참조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2) **영업신고증**

3) **권리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가)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나)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위생교육 수료증**(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위생교육 과정이 개설되지 아니하는 등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마. 확인사항

- 1)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방식약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함
- 2)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제외)를 첨부하지 아니 할 수 있음
-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함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함께 적어 신고할 수 있음

5. 휴업·폐업 및 재개업

가.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나. 신고기관(처리기한) : 지방식약청 또는 시·군·구(즉시)

다. 구비서류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참조

- 1) 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2) 영업신고증

라. 확인사항

- 1) 신고관청은 폐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영업신고관리대장에, 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영업신고관리대상 및 해당 영업신고증에 각각 그 내용을 적어야함

※ 휴업·폐업 등의 신고기한 삭제(종전 30일 전에 신고)

- 2)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음
- 3) 휴업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신고서 제출 불필요
- 4) 지방식약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음
- 5) 지방식약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지방식약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음

- 6)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하여야 함
- 7)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신고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봄

마.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질차

지방식약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 신고관청의 게시판과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함

6. 영업신고를 변경신고

가.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나. 변경신고 대상

-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3) **영업소의 소재지**
- 4) **영업장의 면적**

다. 처리기관(처리기한) : 지방식약청 또는 시·군·구(3일)

라.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나) 영업신고증 1부

다)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나) 영업신고증 1부

다)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마. 신고사항의 변경 관련 확인 사항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

7. 품목제조보고

가.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5조

나. 대상 업종 및 보고기관 등

1) **대상 업종** : 위생용품제조업

2) 대상품목

가) 세척제

나) 행급보조제

다) 일회용 기저귀

라) 일회용 팬티라이너(「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제외)

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3) **보고기관**: 시·군·구

4) **보고기한**: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

*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위생용품을 위탁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위생용품제조업자가 보고

* 위생용품 소분 제조의 경우 품목제조보고 의무 없음

다. **구비서류**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참조

1)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

2)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서(전자문서를 포함)**

라. 검토사항

1) 품목제조보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보고 받은 사항이 「위생용품 관리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내용이 구체적인지 상세 검토

2)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제품명의 적정성 여부 등 철저 검토

* 위생용품의 제조에 사용한 원료(성분)가 같은 경우 한 가지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 하고, 사용한 원료(성분)가 다른 경우 다른 제품명으로 각각 품목제조보고

(단, 성분명이 같은 경우에도 유통전문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는 자의 주문에 의하여 제품명을 달리(유통전문판매 영업자의 상호, 로고 등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하는 경우, 표시사항에 판매업소명 및 소재지를 병기하는 때에는 제품명을 달리하여 품목제조보고 가능)

3) 위탁생산 시 위탁생산 내역 기입 여부

* 품목제조보고서 '기타'란에 위탁생산 내역(수탁자 회사명 및 소재지) 작성

4) **문서로 보고받은 사항은 즉시 새울행정시스템(시·군·구)에 입력 조치**

5) 보고를 받은 내용을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 기록·보관

마. 미보고 등 위반 시 조치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금액 제2호나목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4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바.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1) 변경보고 대상

가) 제품명

나) 원료명(성분명) 및 배합비율

* 수출용 위생용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해당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외

* 배합비율은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성분의 배합비율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2) 구비서류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3)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 기록·보관**

4) 변경보고미보고 시 조치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금액 제2호나목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변경보고를 아니 한 경우 40만원의 과태료 부과

8. 위생용품 위탁제조·처리업체 관리

가. 위탁 제조의 범위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주문량 증가 등으로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제조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할 수 있음

나. 위탁제품 품목제조보고

- 위생용품제조업자가 품목제조보고 대상 위생용품을 위탁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 세척제, 행균보조제, 일회용 기저귀, 팬티타이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2) 구비서류

-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
-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서(전자문서를 포함)

다. 위탁제품 품질관리

1) 위생지도 관리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위생용품제조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하는 경우, 위탁한 그 위생용품제조·처리업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

2) 자가품질검사 : 자가품질검사는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실시

3) 표시사항

- 위생용품제조업자가 다른 위생용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위생용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위탁을 의뢰한 업체명 및 소재지로 표시하여야 함

나)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다른 위생물수건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위생물수건을 위생처리 한 경우에는 위탁을 의뢰한 업체명 및 소재지로 표시하여야 함

- 수탁자는 수탁된 제품의 생산 및 작업기록(처리업 : 위생처리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처리업 : 세척·살균·소독에 쓰이는)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출납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최종 기제일로부터 3년간 보관 관리

5) 행정사항

위생용품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그 위반 행위가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저장·인열·운반·보관 또는 판매·대여 과정에서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

구 분	'제조업→제조업' 위탁생산의 경우	'판매자→제조업' 주문생산의 경우*
품목제조보고	위탁자	제조업자
(제조)업소명 표시	위탁자	판매자 및 제조자
자가품질검사	위탁자 (수탁자도 가능)	제조자

9.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관리

가.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별표5,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식약처 고시)

나. 검사주기 및 검사항목

1) 검사주기

- 위생물수건: 매월 1회 이상(중급속 항목의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 영 제3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된 위생용품: 3개월마다 1회 이상
 - * 세척제, 행균보조제, 일회용 기저귀·팬티타이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위 가) 및 나)를 제외한 위생용품 : 6개월마다 1회 이상

2) 검사항목 및 검체의 채취방법

- 자가품질검사 항목은 아래와 같음(반드시 상세 내역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참고)

종류	세부유형	검사항목
1. 세척제	1종 세척제	pH, 비소, 중급속, 형광증백제, 메탄올(고형, 분말, 과립상은 제외)
	2종 세척제	pH(자동식기세척기용 및 세척과정 중 손에 직접 닿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세척제는 제외), 비소, 중급속, 형광증백제, 메탄올(고형, 분말, 과립상은 제외)
	3종 세척제	비소, 중급속, 형광증백제
2. 행균보조제	행균보조제	비소, 중급속, 형광증백제, 메탄올(고형, 분말, 과립상은 제외)
3. 일회용 컵	일회용 컵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각 제질별 규격
4.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숟가락	
5.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젓가락	

종류	세부유형	검사항목
6. 일회용 포크	일회용 포크	
7. 일회용 나이프	일회용 나이프	
8. 일회용 빨대	일회용 빨대	
9. 일회용 종이냅킨	일회용 종이냅킨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10.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형광증백제,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일반세균, 대장균
11. 일회용 이우시개	일회용 이우시개(합성수지제)	납, 카드뮴, 중급속
	일회용 이우시개(목재류)	중급속, 비소, 허용의 타르색소(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일회용 이우시개(전분제)	중급속, 비소, 허용의 타르색소(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성인용 면봉	성인용 면봉	면체와 축의 접착강도(나무재질 축에 한함), 축의 강도(나무재질 축에 한함), 형광증백제(면체에 한함), 포름알데히드, 일반세균(면체에 한함), 진균수(면체에 한함)
		면체와 축의 접착강도(나무재질 축에 한함), 축의 강도(나무재질 축에 한함), 일반세균(면체에 한함), 진균수(면체에 한함), 형광증백제(면체에 한함), 포름알데히드, 유해원소 용출1)(안티몬, 비소, 바륨, 카드뮴, 크롬, 납, 수은, 셀레늄), 유해원소 함유량2)(총 납, 총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3)(DEHP, DBP, BBP)
12. 일회용 면봉	어린이용 면봉	1) 합성수지제 축과 종이제 축에 한하여 적용 2) 면체와 축 각각에 대하여 적용 3) 합성수지제 축에 한하여 적용
13. 일회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및 위생패드	pH(안감에 한함), 형광증백제(안감에 한함), 포름알데히드(안감과 방수층에 한함), 염소화페놀류1)(오염화석탄산, 사염화석탄산), 아조염료2)

종류	세부유형	검사항목
		1) 면 원료를 사용한 안감에 한함 2) 안감에 한하며, 착색된 부위에만 적용
	어린이용 기저귀 및 위생깔개	pH(안감에 한함), 형광증백제(안감에 한함), 포름알데히드(안감과 방수층에 한함), 염소화페놀류1)오염화석탄산, 시알화석탄산, 아조염료2), 유해원소 용출3)(안티몬, 비소, 바륨, 카드뮴, 크롬, 납, 수은, 셀레늄), 유해원소 함유량(중납, 총 카드뮴)(안감 및 방수층에 한함), 프탈레이트계 가소제4)(DEHP, DBP, BBP) 1) 면 원료를 사용한 안감에 한함 2) 안감에 한하며, 착색된 부위에만 적용 3) 합성수지제와 종이제에 한하여 적용(안감 및 방수층에 한함) 4) 합성수지제 고정(테이프)에 한하여 적용
14. 화장지	화장실용 화장지	포름알데히드
	미용 화장지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15. 위생물수건	위생물수건	납, 비소, 대장균, 세균수
16. 일회용 행주	일회용 행주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17. 일회용 타월	키친타월	PCBs, 비소, 납,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핸드타월	포름알데히드
18. 일회용 팬티라이너	일회용 팬티라이너	색소(사용한 경우에 한함), 산 및 알칼리,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흡수량, 삼출, 강도
19. 물티슈용 마른타슈	형광증백제	형광증백제

나) 검체는 영업자가 직접 채취가능 하며, 검사목적, 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검사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을 수거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4. 검체의 채취 및 취급 방법에 따름

다. 검사기준

- 1) 위생용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의 제품별로 실시
-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유형별로 실시할 수 있음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 해당제품폐기 및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해당 제품 수거·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형에 대한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
- 3) 자가품질검사 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 제조(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
* 2022. 5. 8. 제조한 제품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제품의 검사주기가 3개월인 경우, 2022. 8. 7. 제조한 제품까지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이후 제조한 제품(2022. 8. 8.)으로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
- 4) 자가품질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별 기준 및 규격 항목을 검사함.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위생용품의 경우는 해당하는 검사항목만 검사할 수 있음
- 5)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하는 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

라. 자가품질검사 지도·점검

- 1) 지방시·양청, 시·군·구는 위생용품감시계획에 자가품질검사 관련 지도·점검을 반드시 포함시켜 지도·점검 실시
- 2) 자가품질검사 주기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
- 3)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의 유통 및 제사용 여부 확인
- 4) 자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검사실 및 장비·기구·시약류 등 보유 여부 등 확인

* 같은 영업자가 다른 영업(식품제조·가공업, 의약품제조업 등)을 하면서 해당 영업소에 검사실(실험실)을 갖추고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따로 검사실을 갖추지 않아도 됨

- 5) 검사성적서 허위작성 여부 확인(실제 검사 여부, 시험검사 결과와 다르게 판정, 검사관련 기록 위·변조, 다른 제품의 검사 결과 인용 등)
*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업체는 검사실비에 검사결과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는 기록관리 시스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 6) 검사관련 장부 작성 및 보관 여부 확인(검사일시 기재, 검사 실시대장·검사 일자·시약 장부대장 작성, 장비 사용·점검·유지보수 일지, 초차 구입대장 등 구비)
- 7)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규격 및 규정에 따라 검사하는지 여부(표준물질 사용 여부, 미생물 배양시간 준수, 필요시 확인시험 및 공시험 여부, 유효기간 경과 표준물질 사용, 판정이 모호한 피크(Peak) 확인검사 등)
- 8) 수거·폐기 대상 위생용품의 적정 처리 여부(자가품질검사 부적합한 경우)
- 9)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 2년간 보관 여부 등

마. 영업자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제도 홍보

- 1) 영업신고 및 품목제조보고 시 자가품질검사 의무 사항과 행정처분 내용
- 2)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검사주기 등

10. 위생용품 제조·처리 실적보고

가.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나. 보고시기 : 연간보고(연도 종료 후 매년 1월 31일까지)

다. 보고기관 : 시·군·구

라. 보고방법

- 1) 영업자가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에 기업회원 로그인* 후 우리회사안전관리 서비스로 접속하여 생산실적보고 항목을 선택하여 직접 생산실적 입력(보고)한 것을 확인(승인)
* 인허가번호(아이디) 로그인, 공인인증서번호 로그인 필요 없음
- 2) 영업자가 직접 전산입력을 하지 않는 경우 시·군·구에서는 영업자로부터 위생용품 관리법시행규칙 [서식12] '위생용품 생산실적 등 보고서'로 생산(위생처리)실적을 보고 받아 식품행정통합시스템(admin.foodsafetykorea.go.kr)의 '생산실적보고' 사이트에 생산실적 입력
* 신속한 자료취합 및 통계작성을 위해 영업자가 직접 입력토록 적극 유도 (보고제용) 가이드는 식품안전행정포털 → 공지사항 → '생산실적보고 교육자료'에 게재 (공무원용) 가이드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 → 정보제공공유 → 정보공유계시판 → 통합계시판 → 공지사항에 게재

리. 행정사항

- 1) 생산실적 보고일시 이전에 보고대상 업체를 검토하여 누락되는 업체가 없는 지 확인 후 추가 조치
- 2)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위생용품을 위탁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보고

- 3) 생산실적 보고 담당자는 반드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하여 오기 또는 과장보고(업체 규모 대 매출액 등) 등이 있는지 확인 후 승인 조치
 - 가) 타 회사에 비해 단가 차이가 크거나 전년도에 비해 수량, 금액이 차이가 클 경우 등 보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반드시 업체에 연락하여 확인 필요
 - 나) 생산액, 국내판매액의 단위가 '천원'이므로 '원'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할 것
 - 다) 연간생산능력, 생산량, 국내판매량, 국외판매량의 단위가 'kg, L'이므로 '장, 매' 등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할 것
 - * 위생물수건의 경우 '매'로 입력
 - 라) 식품안전정보포털을 이용하는 경우 국외판매금액의 단위가 '\$'이므로 '원'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할 것
 - 마) 업체현황 확인(업체명, 대표자명, 영업소재지, 영업장연락처, 종업원 수 등)
- 4)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
- 5) 위생용품 관리법 제7조 제2항 위반 : 과태료 30만원
 - * 실적보고가 완료 된 이후 생산실적으로 사이트를 조회하여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실시
- 6) 시·군·구에서는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서류로 보고한 생산·처리 실적을 전산(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입력

11. 위생용품의 표시관리

가. 목적

위생용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위생용품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함

나. 근거법령

- 1) 「위생용품 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2)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다. 확인사항

위생용품의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위생용품의 표시 사항이며 세부사항은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참고
* 외국의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의 표시·광고 허용

라. 표시사항 : 표시는 한글로 하여야 함(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 가능)

- 1) 주표시면에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내용량을 표시
- 2) 정보표시면에는 업체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료명 또는 성분명, 위생용품의 유형, 주의사항 등을 표시사항별로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표시 가능
- 3) 수입위생용품 중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수출국의 언어로 주표시면에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시가능

- 4)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업체명 및 소재지, 내용량, 제조연월일, 원료명 또는 성분명의 글자 크기는 7포인트 이상, 그 이외의 글자 크기는 6포인트 이상이어야 함
- 5) 세트포장(두 종류 이상의 각각 다른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을 말함) 형태로 구성된 경우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
- 6) 수출위생용품에 대하여는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
- 7) 위생처리 하는 위생물수건에는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표시할 수 있음
- 8)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위생용품을 소분하여 제조장한 경우 해당 위생용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안됨. 다만, 내용량, 업체명 및 소재지를 소분된 사항에 맞게 표시하여야 함.
- 9) 자사제품 제조·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위생용품은 제품명, 제조업체명 및 제조연월일만을 표시 가능
- 10)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은 한글표시를 생략가능(관광사업용 제외)
- 11)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을 제외한 위생용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찰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스티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세부 표시사항

- 1) 위생용품은 주표시면에 '위생용품'이라는 글자를 바탕색상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글상자 안에 표시하여야 함.
- 2) 제품명
 - 가) 제품명은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이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사용 불가

- 나)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 명칭으로 표시. 다만,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위생용품은 신고관청에 보고 또는 신고한 명칭으로 표시

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가) 위생용품제조·처리·수입업소의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영업신고증에 기재된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를 표시. 다만, 위탁하여 위생용품을 제조(처리)한 경우에는 위탁을 의뢰한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로 표시
 - (1) 제조업의 경우: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로 표시 가능
 - (2) 수입업의 경우: 해당 수입 위생용품의 제조업소명을 병행 표시, 이 경우 제조업소명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으면 한글로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됨
 - (3) 위생용품수입업소에서 수입한 위생용품을 단순히 소분하여 제조장하는 위생용품제조업소의 경우 위생용품제조업소의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수입신고한 해당 제품 원료의 해의 제조업소명을 모두 표시
 - (4)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자가 다른 위생용품제조업소에서 제조한 위생용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생용품제조업소와 판매자의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4) 내용량

- 가)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 또는 수량(매수, 개수), 길이 등 표시
 - 위생용품의 종류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량의 표시방법을 삭제하여, 위생용품의 특성 등에 따라 내용량을 중량, 수량, 길이 등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의 내용량 표시: (개정 전) 내용량 수량 → (후) 내용량
- 나) 내용량을 길이로 표시할 때 함께 표시하는 너비의 오차는 3 mm, 수량(매수)으로 표시할 때 함께 표시하는 가로 및 세로의 오차는 각각 5 mm로 완화함
 - * 화장실용 화장지(두루마리형)의 너비 내용량(mm) 표시: (개정 전) 표시된 너비

(mm)의 부족량을 허용하지 아니함 → (후) 3mm까지 허용함

* 미용 화장지(1매형)의 가로, 세로 내용량(mm) 표시: (개정 전) 표시된 가로, 세로 (mm)의 부족량을 허용하지 아니함 → (후) 5mm까지 허용함

5) 위생용품의 유형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생용품의 유형이 분류된 위생용품은 그 유형(「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형이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종류를 말한다.)을 표시하여야 함. 다만 위생용품의 유형을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때에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제조연월일(이하 "제조일")

가) 제조일은 "〇〇년〇〇월〇〇일", "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년〇〇월〇〇일" 또는 "〇〇〇〇.〇〇.〇〇"의 방법으로 표시

나) 수입되는 위생용품에 표시된 수출국의 제조일의 "연월일"의 표시순서가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월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하며, "연월"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월"의 1일로 표시하여야 함.

다)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위치에 표시위치 명시 또는 안내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 정보표시면에 표시되는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의 위치에 안내문구 표시 가능

7) 원료명 또는 성분명

가) 위생용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료 또는 성분, 재질을 표시

나) 원료명은 법 제10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표명을 선정 표시

다) 원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해당 원료명과 그 함량을 표시하여야 함.

라) 위생용품의 제조과정 중 첨가되어 최종제품에서 불활성화 되는 효소나 제거되는 원료·성분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마) 위생용품의 제조에 사용된 향료에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및 별표 4에 규정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향료의 명칭과 해당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함('22.7.1.시행)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연번	성분명	CAS 등록번호
1	아밀신나말	122-40-7
2	벤질알코올	100-51-6
3	신나밀알코올	104-54-1
4	시트랄	5392-40-5
5	유제놀	97-53-0
6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107-75-5
7	아이소유제놀	97-54-1
8	아밀신나밀알코올	101-85-9
9	벤질살리실레이트	118-58-1
10	신나말	104-55-2
11	쿠마린	91-64-5
12	제라니올	106-24-1
13	아니스알코올	105-13-5
14	벤질살리메이트	103-41-3
15	파넨솔	4602-84-0
16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80-54-6
17	리날롤	78-70-6
18	벤질벤조에이트	120-51-4
19	시트로넬올	106-22-9
20	백실신나말	101-86-0
21	리모넨	5989-27-5
22	메틸 2-옥티노에이트	111-12-6
23	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	127-51-5
24	람나유기끼추출물	90028-68-5
25	나무이끼추출물	90028-67-4

* 다만,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 함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

가) 사용 및 보관상 주의가 필요한 제품은 그 사항을 표시

나)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위생용품 유형에 따른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표시 하여야 함

9)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된 사용기준 및 제품별 표준사용농도와 사용방법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붙임 1> 유형별 위생용품의 표시사항

위생용품종류	개별표시사항
세척제 헹굼보조제	-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 제품명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내용량 - 제조연월일 - 성분명 - 위생용품의 유형 -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 -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 · (세척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개별기준 및 규격에 규정된 사용기준 · (세척제, 헹굼보조제) 제품별 표준사용농도와 사용방법 - 기타 표시사항 · 1종 세척제는 "아재, 과일 등 세척용", 2종 세척제는 "음식기, 조리기구 등 식용용 기구 세척용", 3종 세척제는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 등 세척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위생물수건	-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 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일회용 칫, 손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이쑤시개	-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 제품명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내용량 - 제조연월일 - 재질명 · 합성수지계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등재된 열화비닐수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페놀수지, 실리콘 고무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약자로 표시할 수 있다. - 위생용품의 유형 -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

위생용품종류	개별표시사항
화장지 일회용 행주· 타월·일회용 종이냅킨	-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 제품명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내용량 · 길이를 표시할 때에는 너비와 겹수를 함께 표시 길이: 00m (너비: 00mm, 0겹) · 수량을 표시할 때에는 가로, 세로와 겹수를 함께 표시 수량: 00매 (00mm(가로)x00mm(세로), 0겹) · 여러 겹을 함께 포장할 때에는 길이, 수량의 표시사항과 함께 포장된 수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조연월일 - 원료명 - 위생용품의 유형 -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 - 재활용에 대한 표시 ·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 "본 제품은 자원재활용을 위해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입니다."라는 문구를 표시(「식품위생법」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따른 종이재 또는 가공지제를 재생원료로 사용한 경우 생략 가능)
식품접적용 플라스틱	-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 제품명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내용량 - 제조연월일 - 원료명 및 성분명 - 위생용품의 유형 -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
일회용 면봉	-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 제품명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내용량 - 제조연월일 - 원료명 - 위생용품의 유형 -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 · 어린이용의 경우, "영·유아의 귀, 코 안쪽 깊이 넣지 마십시오", "영·유아가 직접 사용하지 않게 하십시오"의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위생용품종류	개별표시사항
일회용 기저귀	-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 제품명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내용량 - 제조연월일 - 원료명 및 성분명 - 안감 / 흡수층 / 방수층 / 테이프에 사용된 원료와 성분의 명칭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 위생용품의 유형 -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 - 적용대상(기저귀) - 성인용 기저귀는 허리둘레길이를 "00~00 cm" 등의 범위로 표시 - 어린이용 기저귀는 크기에 따라 사용가능한 표준체형의 유아 및 어린이 체중을 "00~00 kg" 등의 범위로 표시 - 신체치수에 의해 제품을 구분하지 않는 위생간개(메트) 등 제품의 경우 적용대상을 "전 성인", "전 유아 및 어린이용"으로 표시 (예시) 제중(유아), 허리둘레(성인) 등

<붙임2>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표시 기준

구분	사례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표시
제조	제조업	제조업소명, 소재지
	국내제조[A] → 국내제조[B] 위탁(제조·가공·소분)	제조업소명(A), 소재지
	위생처리업	위생처리업소명, 소재지
수입	위생처리[A] → 위생처리[B] 위탁	위생처리업소명(A), 소재지
	해외제조[D] → 수입업체[A]	수입업소 : 업소명(A), 소재지 제조업소 : 업소명(D)
	해외제조[D] → 수입업체[A] → 소분제조[A] * 수입자[A] = 소분자[A]	제조(소분)업소 : 업소명(A), 소재지 제조(수출)업소 : 업소명(D)
	해외제조[D] → 수입업체[A] → 소분제조[B] * 수입자[A] ≠ 소분자[B]	제조(소분)업소 : 업소명(B), 소재지 제조(수출)업소 : 업소명(D)
소분	해외제조[D] → 수입·제조[A] → 소분제조위탁[B]	제조(소분)업소 : 업소명(A), 소재지 제조(수출)업소 : 업소명(D)
	국내제조[A] → 소분제조[B]	제조업소명(B), 소재지
기타	판매[A] : 국내제조[B]	제조업소 : 업소명(B), 소재지 판매업소 : 업소명(A), 소재지
	판매[A] : 국내제조[B] → 소분제조[C]	제조업소 : 업소명(C), 소재지 판매업소 : 업소명(A), 소재지
	판매[A] : 해외제조[D] → 수입[B]	수입업소 : 업소명(B), 소재지 제조업소 : 업소명(D) 판매업소 : 업소명(A), 소재지
	판매[A] : 해외제조[D] → 수입[B] → 소분제조[C] 위탁	제조(소분)업소 : 업소명(C), 소재지 제조(수출)업소 : 업소명(D) 판매업소 : 업소명(A), 소재지

12.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가. 목적

「위생용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등

「위생용품 관리법」 제27조 및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식약처 고시)

다. 운영방법

1) 공통사항

소비자감시원 활동범위는 당해 소비자감시원을 위촉한 각 기관의 관할 구역 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각 기관으로부터 행정응원을 요청받거나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국적인 조사나 계통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음

2) 합동단속 및 지도·점검 지원활동

가)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감시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소비자감시원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매 활동 시 마다 활동일로부터 3일 전까지 소비자감시원에게 통보하여 가급적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함

나) 식약처 주관 합동단속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생용품위생감시원과 소비자감시원이 합동으로 활동하도록 함

다) 위생용품의 허위·과대광고 안전관리

3) 활동수당 지급

가) 소비자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5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음

나) 활동수당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다) 각 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소비자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라) 각 기관의 장은 기관별 소비자감시원 위촉 인원 수 및 연간 최대 활동일수(50일)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활동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4) 소비자감시원이 신고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가) 소비자감시원으로부터 위반사항을 신고 받은 각 기관의 장은 위반내용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여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신고한 소비자감시원 및 이첩기관 등에 즉시 회신하여야 함

나)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감시원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생용품관련 정보사항을 소비자감시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감시원은 소비자보호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알게 된 위생용품관련 정보사항을 수집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제보하는 등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각 기관(지방시·청, 시·도, 시·군·구)의 장은 소비자감시원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나) 소비자감시원 위·해촉 및 활동 실적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입력

* <http://admin.foodsafetykorea.go.kr>, 생산실적보고, 위생교육, 감시원>감시원관리

다) 소비자감시원은 각 기관의 관할지역 안에서 거주지 등 연락처 변경 시에는 즉시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위촉기관은 소비자감시원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

라) 각 기관의 장은 활동이 우수한 소비자감시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할 수 있음

마)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감시원을 위촉할 때마다 타 기관과 중복되지 않도록 위촉여부를 확인

- 바) 다음의 경우에는 임기 후 재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 (1) 소비자감시원 및 그 가족이 위생용품 관련 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 된 때
 - (2) 위생용품위생교육 및 직무수행을 위한 위촉기관의 활동요청에 5회 이상 무단 불참한 때
 - (3)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때
- 사) 위생용품관련학과를 전공하는 대학(원)생을 방학기간에 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감시원의 위·해촉 절차를 각 기관의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을 활성화함
- 아) 소비자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허위·과대광고 행위 수시 모니터링(현장 정보수집) 실시 및 집중 관리(단속) 강화



VI 기 타

1. 영업자 자율안전관리 강화 추진

가. 목적

위생용품제조업·위생물수건처리업·위생용품수입업 영업자가 스스로 제조기준 및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는 자율안전관리 체계 강화 및 전반적인 제조위생수준 향상

나. 법적근거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영업의 신고), 제4조(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등), 제5조(영업신고의 제한), 제6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제7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제8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제9조(위생교육), 제10조(기준 및 규격), 제11조(표시기준), 제1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3조(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

다. 업소별 필수 자율점검 확인 사항

1) 위생용품제조업소

1. 영업신고증은 영업소 안에 보관하며, 영업신고증은 대표자,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소재지, 면적, 영업의 종류와 일치해야 한다.
 - 변경된 사항은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세척제, 행균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팬티라이저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를 보고해야 한다.
 - 제품명, 원료·성분의 명칭 등 변경 시 보고하여야 한다.
3. 매년 위생교육을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한다(현장교육 및 비대면 온라인교육 가능).
 - 대표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 영업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친제지번, 본인의 질병·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경우 종업원을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4.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관계 서류(이하 "원료출납관계서류"라 한다)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제품의 거래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7.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과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위생용품을 원료로 사용 시 영업신고 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한 위생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영업자는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0.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작업장 및 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1.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위생용품제조업자는 검사실비에 검사 결과의 변경 시 그 변경내용이 기록·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2.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운반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유통기한이 정해진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
13. 위탁 제조 시 위생용품제조업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14. 전년도에 위생용품을 생산한 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위탁 시 위탁한 영업자가 보고하여야 함).
15. 자사제품의 원료 또는 외화확득용 원료로 수입한 위생용품이 부패, 변질 또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작성하고,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6. 세척제와 행균보조제는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7. 위생용품은 개별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8. 검사는 법에서 정한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9. 검사에 관한 기록을 해당 제품의 검사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0.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는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된 위생용품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외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21. 자가품질검사는 위탁자 또는 직접 그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하는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2. 위생용품의 표시사항은 다음을 확인한다.
 - ①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의해 표시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②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을 위생용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을 변조하여서는 안 된다.
- ③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위생용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 영업신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 확인
 - 제조연월일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 확인
 - 효과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 확인
 - 해당 위생용품의 명칭, 원료, 제조방법, 성분, 용도, 품질 등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 확인
23. 건물의 구조는 제품 특성에 따라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고, 환기가 잘되어야 한다.
24.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5. 물은 사용하는 경우,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26.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내수성으로 설치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7.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28.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9.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밧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0. 작업장은 폐기물·폐수 처리시설로부터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1.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를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2.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3.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4.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35.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등 제외).

2) 위생물수건처리업소

1. 영업신고증은 영업소 안에 보관하며, 영업신고증은 대표자,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소재지, 면적, 영업의 종류와 일치해야 한다.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경신고 이행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매년 위생교육을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한다(현장교육 및 비대면 온라인교육 가능).
 - 대표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 영업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친제이면, 본인의 질병·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경우 종업원을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3. 위생물수건 처리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세척·소독·살균 등에 쓰이는 원료의 원료출납관계서류(이하 "원료출납관계서류"라 한다)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제품의 거래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지하수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영업자는 위생물수건을 처리할 때 작업장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 또는 위생처리 과정에서 보건 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작업장 및 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9. 영업자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작업하게 하는 경우 깨끗한 위생복, 위생모자, 마스크, 작업화 등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위생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1.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위생용품제조업자는 검사실비에 검사 결과의 변경 시 그 변경내용이 기록·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2. 위탁하여 위생물수건을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그 위생물수건처리업자에 게 반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13. 전년도에 위생용품을 처리한 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위탁

- 한 경우 위탁한 영업자가 보고)
14. 위생용품이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5. 검사를 직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6. 위생물수건의 자가품질검사는 매월 1 이상 실시한다(중금속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17. 검사에 관한 기록을 해당 제품의 검사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8. 자가품질검사는 위탁자 또는 직접 그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하는 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9. 대어한 물수건은 최대한 4일 이내 피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0. 세탁 전 부착된 오물을 제거하고, 오염정보에 따라 분류한다.
21. 포장 전 접는 과정은 자동기계를 사용한다. 수동 작업 시 위생비닐장갑 착용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한다.
22. 물수건은 세척·살균·접는 과정이 끝나는 즉시 포장하여야 하고, 포장후의 재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봉합 하여야 한다.
23. 포장된 물수건 제품은 신속히 공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24. 위생용품의 표시사항은 다음을 확인한다.
 - ①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의해 표시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②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을 위생용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을 변조하여서는 안 된다.
 - ③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위생용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 영업신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 확인
 - 제조연월일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 확인
 - 효과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 확인
 - 해당 위생용품의 명칭, 원료, 제조방법, 성분, 용도, 품질 등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 확인
25.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위생용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고, 환기가 잘되어야 한다.
26.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7. 물은 사용하는 경우,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28.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내수성으로 설치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9.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30.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1.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2. 작업장은 폐기물·폐수 처리시설로부터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3.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를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4.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5.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6.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37.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등 제외).

3) 위생용품수입업소

1. 영업신고증은 영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 영업신고증은 영업자(대표자)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소재지, 면적, 영업의 종류와 일치한다.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경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2.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 영업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경우에는 종업원을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3. 수입위생용품의 제품명·판매명·판매처·판매량·수입일·선하증권번호·제조국·수출국·제조회사명·수출회사명을 기록한 거래명세서 및 내용명세서를 수입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 수입신고확인증은 그 발급일부터 2년간,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하는 수입위생용품의 신고필증은 그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위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운반·보관해서는 안되며(유통기한이 정해진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 수입 위생용품이 부패·변질 또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한 경우로서 관리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생품을 교환해 주어야 한다.
6.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자는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종업원이 영업자 대신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종업원이 위생교육 실시할 수 있다.
7. 위생용품의 표시사항은 다음을 확인한다.
 - ①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의해 표시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②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위생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을 변조하여서는 안된다.
 - ③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위생용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④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 또는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 확인

- 제조연월일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 확인
 - 효과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 확인
 - 해당 위생용품의 명칭, 원료, 제조방법, 성분, 용도, 품질 등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 확인
8.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9. 수입 위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창고는 독립된 건물이거나 위생용품 외의 제품을 보관하는 시설과 분리되거나 구획되어야 한다.
 - 수입 위생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보세창고에서 바로 다른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별도의 보관창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면제한다.

2. 위생용품 영업자단체를 활용한 자율 안전관리

가. 목적

위생용품 영업자단체 소속 제조·수입업체의 위생용품 자율관리를 통한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보건수준 향상

나. 대상

- 1) (사)한국위생물수건처리업중앙회 소속 위생물수건처리업체
- 2) (사)기저귀위생용품산업협회 소속 일회용 기저귀 제조·수입업체

다. 추진 일정: 1회/연

라. 주요 지도·점검 사항

- 1)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준
 - 표시기준 일반사항(제품명 등)적정여부, 허위표시·과대광고 여부(공통사항)
 - 품목제조 미보고, 미변경 품목 생산여부, 자가품질검사 준수 여부(제조업에 한함)
 - 자가품질검사 준수 여부(위생물수건에 한함)
- 2) 위생용품 관리법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지도
 -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 작성·보관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여부(제조업에 한함)
 -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 작성·보관 여부, 작업장 청결유지 및 월1회 이상 소독실시 여부(위생물수건에 한함)
 - 제품거래기록 및 통관 서류 보관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수입업에 한함)
- 3) 기타 위생관리

마. 행정사항

- 1) 협회는 사전에 자율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 2) 자율지도점검 시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관계기관에 보고
- 3) 자율지도점검 내역 및 개선사항 보고

3. 주요 위생용품 안전관리 사항

가. 세척제의 제조기준 및 사용기준 준수 철저(「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 세척제 유형명칭 개정('21.12.23→(시행일 : '23.7.1.) : (현행) 1종, 2종, 3종 → (개정) 과일·제소용, 식품용 기구·용기용, 식품 제조·가공장치용

1) 세척제의 제조기준

- (1) 1종 세척제는 효소 또는 표백작용이 있는 성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2) 1종, 2종 및 3종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이거나 식품 성분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3) [별표 1]에 기재되지 않은 성분을 세척제 성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거서류나 관련 문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2) 세척제의 사용기준

- (1) 1종 세척제의 경우 세척제의 용액에 야채 혹은 과일을 5분 이상 담가서는 아니된다.
- (2) 1종 세척제의 경우 세척제의 용액으로 야채, 과일, 음식기 또는 조리기구 등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한다. 이 때 흐르는 물을 사용할 때에는 야채 혹은 과일을 30초 이상, 식기류는 5초 이상 씻고 흐르지 않는 물을 사용할 때는 물을 교환하여 2회 이상 씻어야 한다.
- (3) 2종, 3종 세척제에 사용한 후에는 음식기, 조리기구 등에 세척제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한다.
- (4) 2종, 3종 세척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이외로 사용하거나 규정사용량 이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5) 1종 세척제는 2종 또는 3종 세척제, 2종 세척제는 3종 세척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3종 세척제는 1종 또는 2종 세척제, 2종 세척제는 1종 세척제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일회용 컵 주요 안전관리 사항

* 중 내용은 그간 유권해석 등을 검토하여 일회용 컵과 관련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참고 자료임

가. 적용범위

식품과 접촉하는 컵으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적용한다.

나. 관리내용

- 1) 위해정보*에 따라 일회용 종이컵(종이제 또는 가공지제)과 일회용 종이컵(폴리에틸렌 등 합성수지제 도장제)의 경우, 수입 시 현장검사를 포함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정밀검사 실시

- 유통 중인 일회용 컵의 안전관리 철저 요구

* 제조 시 컵 표면의 인쇄 이미지가 다룬컵과 겹쳐서 포장하였을 경우, 컵 내부에 인쇄가 묻어남

- 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재질 '일회용 컵'의 경우 매 수입 시 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내용의 '제조회사 재질 확인증명서' 원본 제출(별도 지시일까지)

* 재활용 PET는 가열·분해·중합 등 화학적 재생법으로 만든 것만 사용 가능, 물리적 재생법(분쇄·가열·성형)으로 만든 것은 사용 불가

가) (재활용 PET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재활용 PET를 사용하지 않음

나) (재활용 PET를 사용한 경우) 가열,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정제한 후, 이를 다시 중합하여 제조하였음

* 관련 규정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9-2호, 2019.1.9.) II. 1. 하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재질 '일회용 컵'을 제조하는 국내 제조업소의 경우 위 해당하는 증명자료 구비 필요

-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용기·포장지 제조업)를 하고 식품용 용기와 위생용품(일회용 컵)을 하나의 설비로 생산하는 경우라도 별도로 위생용

나. 친환경 소재로 제조하는 일회용 빨대 안전관리

*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갈대 등 천연원료 등 로 만든 일회용 빨대 안전관리 요구

- 1) 일회용 빨대는 식품과 접촉하는 빨대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적용하며,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품질이 양호하고, 유독·유해물질 등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공통기준 및 규격, 1. 공통제조기준).

- 2) 일회용 갈대 빨대에 대하여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공전에서 관리하는 목적류의 규격과 시험법을 적용하여 관리함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III. 재질별 규격 제6.목적류

나. 잔류규격(mg/kg)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재질의 잔류규격을 적용한다.

다. 용출규격(mg/L)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재질의 용출규격을 적용한다.

1) 비소(As ₂ O ₃ 로서) : 0.1 이하	2) 납 : 1 이하
3) 이산화황 : 12.8 이하	4) 오쏘페닐페놀 : 7.3 이하
5) 티아벤다졸 : 1.8 이하	6) 비페닐 : 0.9 이하
7) 이마잘릴 : 0.6 이하	

다. 일회용 면봉

- 1) 인체를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반면봉에 대하여 적용(「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 2) 면봉의 면체(솜)가 빠지거나 면촉이 부러지는 것에 대한 민원 발생 등에 따라, 면체와 축의 접촉강도, 축의 강도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면체와 축의 접촉강도: 500g 중량에 30초간 유지, 축의 강도: 1kg 중량에 1분 내에 부러지지 않아야함)

품제조업 영업신고가 하여야 함.

- * 하나의 설비로 식품용 용기와 위생용품을 생산 시,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용기포장지 제조업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장소는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장 면적에 포함될 수 있음.
- 4) '일회용 컵'과 함께 사용되는 '일회용 뚜껑'의 경우 「위생용품 관리법」 적용 대상은 아니나, '일회용 컵과 뚜껑'이 **함께 포장되어** 수입되는 경우 **뚜껑을 컵의 부속품으로 보아** 위생용품으로 수입신고(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준수)
 - * 일회용 컵과 일회용 뚜껑을 각각의 최소판매단위로 수입하는 경우 일회용 컵은 위생용품으로 일회용 뚜껑은 식품용 기구로 각각 수입신고하여야 함

5. 위생물수건 주요 안전관리 사항

가. 적용범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세척 등에 사용하는 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재사용 처리 해 포장한 제품에 적용한다.

나. 목적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자의 자율점검 및 위생처리기준 준수를 통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다. 관리내용

1) 영업자 준수사항

가) 제품거래기록

- 제품의 거래기록 작성·보관(3년) 여부
 - 제품의 거래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거래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

나) 수질검사

-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지하수 사용여부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물수건의 위생처리에 사용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먹는물관리법」 제5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

다) 작업장 청결유지

- 위생물수건을 처리함에 있어 작업장 청결 유지 및 1회 이상 소독 실시 여부

- 위생물수건을 처리할 때 작업장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라) 종사자 위생

- 종사자의 작업 시 위생복 청결유지, 위생복, 마스크, 작업화 착용여부
 - 영업자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작업하게 하는 경우 깨끗한 위생복, 위생모자, 마스크, 작업화 등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위생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마) 종사자 위생교육

- 고용한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계획 수립여부 및 정기적 위생교육 실시 여부
 -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자는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을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종업원이 영업자 대신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종업원이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함

바) 변경내용 기록·저장 시스템 설치 운영

- 검사설비에 검사결과와 변경 시 그 변경 내용이 기록·저장되는 시스템 설치·운영 여부
 -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검사설비에 검사 결과의 변경 시 그 변경내용이 기록·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사) 위탁처리제품 관리

- 위탁하여 위생물수건을 위생처리 하는 경우 위생관리상태 등 점검 여부
 -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다른 위생물수건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위생물수건을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그 위생물수건처리업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함

2) 제품관리(협회에서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운영)

가) 자가품질검사

- 검사실, 기기류 및 시약류 비치 여부(검사실이 없는 경우 공인검사기관 위탁 여부 확인)
- 품목별 자가품질검사 주기 준수 여부(중금속 6개월마다 1회 이상)
- 자가품질검사 항목 준수 여부
-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 보관 여부(해당 제품의 검사일로부터 2년간 보관)
 - 검사에 관한 기록은 해당 제품의 검사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나) 제조기준 준수

- 4일 이내 회수 처리 여부
 - 대여한 물수건은 부착된 오염물질로 인한 부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4일 이내에 회수하여 처리하여야 함
- 세탁 전 부착된 오물의 제거 및 오염도에 따른 분류 여부
 - 부착되어 있는 오물은 세탁 전에 충분히 제거하여 오염도에 따라 아주 심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류하여야 함
- 오염도에 따른 물수건의 처리방법 준수 여부
 - 위생물수건의 오염도에 따라 오염도가 심하지 않은 물수건의 처리방법과 오염도가 심한 물수건의 처리방법을 준수하여 위생물수건을 처리 하여야 함
- 물수건을 포장하기 전 겹는 과정을 수동으로 작업하는 경우 위생비닐장갑 착용 등 준수 여부
 - 물수건을 포장하기 전 겹는 과정은 자동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동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의 손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비닐장갑 착용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 물수건의 세척·살균·접는 과정이 끝나는 즉시 포장 및 포장 후 봉합 여부
 - 물수건의 세척·살균·접는 과정이 끝나는 즉시 포장하여야 하고, 포장 후의 재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봉합하여야 함
- 포장된 물수건은 신속히 공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10℃ 이하에서 보관 여부
 - 포장된 물수건 제품은 신속히 공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이하에서 보관하여야 함

3) 시설기준

가) 작업장

- 독립건물 또는 위생용품제조·가공(처리)외의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 여부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 상호 간에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음
- 원료처리실·제조가공소분실·포장실 등의 분리·구획(구분) 여부
 -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소분실·포장실과 그 밖에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되거나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하거나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바닥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여부
 -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하며,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함

○ 환기시설 설치 여부

-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기에 충분한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함

○ 방충·방서시설 설치 여부

-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나) 급수시설

- 수도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사용 여부
 - 수도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추어야 함
- 지하수 취수원이 오염시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
 -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다) 창고등의 시설

- 원료 및 제품의 위생적 보관·관리 여부
 -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함

<붙임 1> 처리공정별 안전관리

처리과정

회수 과정
대여 후 최대 4일 이내에 회수하여 처리한다.

전처리 과정
오염정도에 따라 분류한다.

본처리 과정
적절한 세척제와 소독제를 이용해 세척한다.

공급 및 보관
완제품은 신속히 공급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0℃ 이하에서 보관한다.

포장과정
접는과정이 끝나는 즉시 포장해야 하며, 직렬히 놓는다.

접는과정
위생에 주의하여 접는다.

말수과정
충분히 말수한다.

본처리 과정

•오염도가 심하지 않은 위생물수건의 처리 방법

- 소독제 사용
 - 세제, 식품첨가물용 또는 수처리 제조용 염소를 첨가하여 온수로 10분 이상 세탁 및 행금을 실시한다.
 - 행금과 탈수를 번갈아 4회 이상 실시한다.
 - 2회째 행금 다음에 유리 염소가 250ppm 이상 되도록 첨가하여 실시한다.
- 열 소독 및 세척
 - 100℃ 이상의 증기에 10분 이상 접촉시킨 후 세척을 실시한다.
 - 온수로 10분 이상 세탁 및 행금을 충분히 한 후 행금과 탈수를 번갈아 4회 이상 실시한다.

본처리 과정

•오염도가 심하지 않은 위생물수건의 처리 방법

- 소독제 사용
 - 세제, 식품첨가물용 또는 수처리 제조용 염소를 첨가하여 온수로 10분 이상 세탁 및 행금을 실시한다.
 - 행금과 탈수를 번갈아 4회 이상 실시한다.
 - 2회째 행금 다음에 유리 염소가 250ppm 이상 되도록 첨가하여 실시한다.
- 열 소독 및 세척
 - 100℃ 이상의 증기에 10분 이상 접촉시킨 후 세척을 실시한다.
 - 온수로 10분 이상 세탁 및 행금을 충분히 한 후 행금과 탈수를 번갈아 4회 이상 실시한다.

본처리 과정

•오염도가 심한 위생물수건의 처리 방법

- 반복세척
 - 세제, 식품첨가물용 또는 수처리 제조용 염소를 첨가하여 온수로 10분 이상 세탁 및 행금을 실시한다.
 - 열상환·탈수를 번갈아 4회 이상 실시한다.
 - 2회째 행금 다음에 유리 염소가 250ppm 이상 되도록 첨가하여 실시한다.
- 가성소다 사용
 - 식품첨가물용 가성소다를 온수에 15분 이상 침지한 후 말수한다.
 - 가성소다가 충분히 제거될 수 있도록 행금과 탈수를 번갈아 4회 이상 실시한다.

본처리 과정

• 오염도가 심한 위생물수건의 처리 방법

3. 효소제 사용

- ① 적당량의 단백질 분해효소와 세제를 첨가한 온수에 40분 침지한 후 탈수하여 세척한다.
- ② 세척제가 충분히 제거될 수 있도록 행균과 탈수를 번갈아 4회 이상 실시한다.



본처리 과정 탈수과정

• 위생물수건 처리 시 종사자는 위생복, 위생장갑, 위생모를 갖춘 후 작업한다.



•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 구획을 분리하여 작업한다.



접는과정·포장과정

• 자동기계가 아닌 수동작업으로 접는 경우는 위생장갑을 착용하여 작업한다.



• 세척·탈수·접는과정이 끝나는 즉시 포장하여야 하고, 재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지를 적절히 밀봉한다.



공급 및 보관

• 위생물수건은 신속히 공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0°C 이하에서 보관한다.



• 작업장의 실내온도 및 작업대의 온도를 10°C 이하로 유지하며 미생물이 증식되지 않도록 한다.



<붙임 2> 위생물수건처리업 자가 점검표(체크리스트)

위생물수건처리업소 자가 점검표(영업자용)

구분	세부항목	점검사항(20. . .)	점검결과	
			O/X	
영업자	공통사항	위생물수건 위생처리 과정에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작업장 및 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위생물수건처리업자 및 그 종업원 준수사항	위생물수건을 처리함에 있어 작업장 청결유지 및 월회 이상 소독실시 하고 있는가?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가? 위생물수건 위생처리 종사자는 깨끗한 위생복, 위생모자, 마스크, 작업화 등을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영업자 준수 사항 관련 본처리과정	회수과정	최대한 4일 이내에 회수하여 처리하였는가?		
	전처리과정	부착되어 있는 오물은 세탁 전에 충분히 제거하여 오염정도에 따라 분류하였는가?		
	오염도가 심하지 아니한 물수건	효소제 사용	① 세제와 식품첨가물용 또는 수처리 제조용 염소를 첨가하여 온수로 10분 이상 세탁 및 행균을 충분히 하였는가? ② 정수된 용수를 사용하여 행균과 탈수를 번갈아 4회 이상 실시하였는가? ③ 염소제 첨가에 의한 소독은 2회째 행균 다음에 유리 염소가 250ppm 이상 되도록 첨가하여 실시 하였는가?	
		열탕(증기) 소독 후 세척	① 고온의 용수 또는 100°C 이상의 증기에 10분 이상 접촉시킨 후 세척을 실시하였는가? ② 온수로 10분 이상 세탁 및 행균을 충분히 한 후 행균과 탈수를 번갈아 4회 이상 실시하였는가?	
		반복 세척	① 세제와 식품첨가물용 또는 수처리 제조용 염소를 첨가하여 온수로 15분 이상 세탁 및 행균을 하였는가? ② 정수된 용수를 사용하여 행균과 탈수를 번갈아 4회 이상 실시 하였는가? ③ 염소제 첨가에 의한 소독은 2회째 행균 다음에 유리 염소가 250ppm 이상 되도록 첨가하여 실시 하였는가?	
	오염도가 심한 물수건	가성소다 처리	① 식품첨가물용 가성소다를 적당량 첨가하여 온수에 15분 이상 침지를 행하고 탈수 후 행하였는가? ② 가성소다가 잔류하지 않도록 세척을 하였는가?	

구분	세부항목	점검사항(20. . .)	점검결과
			O/X
	효소제 처리	전처리는 단백질 분해효소와 세제를 첨가한 온수에 40분간 침지를 행하고 탈수 후 세척을 실시하였는가?	
	탈수과정	본처리를 마친 물수건을 충분히 탈수 하였는가?	
	접는과정	자동기계를 사용하였는가? 수동작업 시 작업자의 손에 의한 오염을 방지 하였는가? (위생비닐장갑 착용 등 적절한 방법 사용)	
	포장과정	세척·살균·접는 과정 후 즉시 포장 및 포장후의 재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봉합하였는가?	
	공급 및 보관	신속히 공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0°C 이하에서 보관하였는가?	
점검자 종합의견			

<붙임 2> 영업소별 자율점검표

위생용품제조업소(영업자용)

구분	세부항목	자율점검	적합	미흡
1. 영업(신고) 사항 관리	가. 영업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신고 여부 ○ 영업신고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여부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여부 		
	나. 품목제조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제조 미보고, 미변경 품목 생산 여부 ○ 원료배합비율 등의 적합성 여부 		
	다. 변경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사항 임의변경 여부(업체명, 소재지, 주요설비 등) 		
	라. 위생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교육 수료 여부 		
	마. 기타사항			
2. 영업자 준수사항 관리	가. 생산기록 및 원료수불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작성·보관(3년) 여부 ○ 원료출납관계서류 작성·보관(3년) 여부 		
	나. 제품 거래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거래기록 작성·보관(3년) 여부 		
	다. 수질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음용수) 수질검사 결과 - 부적합 지하수 사용 여부 		
	라. 무신고 제품 사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무신고 제조가공소분수입 위생용품 사용여부 		
	마. 종사자 위생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한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계획 수립여부 및 정기적 위생교육 실시여부 		
	바. 변경내용 기록 저장 시스템 설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검사실비에 검사결과와 변경시 그 변경내용이 기록·저장되는 시스템 설치운영 여부 		
	사.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운반하거나 이를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사용 여부 		
	아. 위탁생산제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하여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하는 경우 위생관리상태 등 점검 여부(반기별 1회 이상) 		
	자. 기타사항			

구분	세부항목	자율점검	적합	미흡
3. 보고서류 관리	가. 생산실적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실적 보고 이행 여부 		
	나. 폐기 증명자료 작성 및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사제품제조원료, 외의획득용원료로 수입한 위생용품을 부패·변질·유통기한 경과 등의 사유로 폐기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작성 및 보관(3년) 여부 		
4. 원료관리	가. 기준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이외의 성분 사용여부(세척제, 행균보조제) 		
	나. 기타사항			
5. 제품제조 관리	가. 제조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제조보고 성분배합비율 상의 성분이외의 원료 사용 여부 		
	나. 자가품질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실, 기기류 및 시약류 비치 여부 ○ 검사실이 없는 업체인 경우 공인검사기관 위탁여부 확인 ○ 품목별 자가품질검사 주기 준수 여부 ○ 자가품질검사 항목 준수 여부 ○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 보관 여부(해당 제품의 검사일로부터 2년간 보관)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유통 여부 		
	다. 기타			
	6. 표시사항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기준 일반사항 적정여부 - 제품명 사용의 적정성 등 ○ 품목별 표시사항 적정여부 ○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목적 보관·판매 여부 ○ 유통기한 위·변조 여부(유통기한 표시제품) ○ 제조일자 위·변조 여부 		
나. 허위·과대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 - 영업신고 또는 수입신고한 내용과 다른 내용 			

구분	세부항목	자율점검	적합	미흡
	가. 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년월일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 - 효과를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 - 명칭, 원료, 제조방법, 성분, 용도, 품질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지정된 검사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검사한 결과를 이용한 표시·광고 		
	다. 기타			
7. 시설기준 점검	가.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자재는 위생용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위생용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 적절한 온도습도 유지 및 환기 여부 		
	나. 작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건물 또는 위생용품제조·가공의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 여부 ○ 원료처리실·제조·가공·소분·포장실 등의 분리·구획(구분) 여부 ○ 바닥면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여부 ○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내수 처리 여부 ○ 작업장 내부 구조물, 벽,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의 세척·소독 용이성 ○ 환기시설 설치 여부·방출·방시시설 설치 여부 ○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차단 여부 ○ 폐기물·폐수처리시설과 격리 여부 		
	다. 급수시설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공급 여부 ○ 지하수 취수원이 오염시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 		
	라. 창고등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 및 제품의 위생적 보관·관리 창고 설치 여부 		

구분	세부항목	자율점검	적합	미흡
가. 검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고의 바닥에 양탄자 설치 여부 ○ 기준·규격 검사를 위한 검사실 설치여부 ○ 기타 		
	바. 기타			

위생물수건처리업소(영업자용)

구분	세부항목	점검사항	적합	비합
1. 영업(신고) 사항 관리	가. 영업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신고 여부 ○ 영업신고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여부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여부 		
	나. 변경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사항 임의변경 여부(업제명, 소재지, 주요설비 등) 		
	다. 위생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교육 수료 여부 		
	라. 기타사항			
2. 영업자 준수사항 관리	가. 위생처리작업 기록 및 원료 출납관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처리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작성·보관(3년) 여부 ○ 세척·소독·살균 등에 쓰이는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출납관계서류 작성·보관(3년) 여부 		
	나. 제품 거래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거래기록 작성·보관(3년) 여부 		
	다. 수질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음용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지하수 사용 여부 		
	라. 작업장 청결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물수건을 처리함에 있어 작업장 청결 유지 및 월 1회 이상 소독 실시 여부 		
	마. 종사자 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의 작업 시 위생복 청결유지, 위생복, 마스크, 작업화 착용여부 		
	바. 종사자 위생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한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계획 수립여부 및 정기적 위생교육 실시여부 		
	사. 변경내용 기록, 저장 시스템 설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검사설비에 검사결과와 변경 시 그 변경내용이 기록·저장되는 시스템 설치운영 여부 		
아. 위탁처리제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하여 위생용품을 위생처리 하는 경우 위생관리상태 등 점검 여부(반기별 1회 이상) 			
자. 기타사항				
3. 보고서류 관리	가. 처리실적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물수건 처리실적 보고 이행 여부 		
	나. 기타사항			
4. 제품관리	가. 자가품질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실, 기기류 및 시약류 비치 여부 		

구분	세부항목	점검사항	적합	비합
	나. 제조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실이 없는 업체인 경우 공인검사기관 위탁여부 확인 ○ 품목별 자가품질검사 주기 준수 여부 ○ 자가품질검사 항목 준수 여부 ○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 보관 여부(해당 제품의 검사일로부터 2년간 보관)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유통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일 이내 회수 처리 여부 ○ 세탁 전 부착된 오물의 제거 및 오염도에 따른 분류 여부 ○ 오염도에 따른 물수건의 처리방법 준수 여부 ○ 물수건을 포장하기 전 접는 과정을 수동으로 작업하는 경우 위생비닐장갑 착용 등 준수 여부 ○ 물수건의 세척·살균·접는 과정이 끝나는 즉시 포장 및 포장 후 봉합 여부 ○ 포장된 물수건은 신속히 공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10℃ 이하에서 보관 여부 		
5. 표시사항 점검	가. 표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기준 일반사항 적정 여부 ○ 제조일자 위·변조 여부 ○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대여) 여부 		
	나. 허위·과대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 - 영업신고 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 - 제조년월일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 - 효과를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 		
	다. 기타			
6. 시설기준 점검	가.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자재는 위생용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위생용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위생용품수입업소(영업자용)

구분	세부항목	점검사항	적합	비합
나. 작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온도·습도 유지 및 환기 여부 ○ 독립건물 또는 위생용품제조·가공외의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 여부 ○ 원료처리실·제조·가공·소분실·포장실 등의 분리·구획(구분) 여부 ○ 바닥면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여부 ○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내수 처리 여부 ○ 작업장 내부 구조물, 벽,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의 세척·소독 용이성 ○ 환기시설 설치 여부(방출·방시시설 설치 여부) ○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 차단 여부 ○ 폐기물·배수처리시설과 격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공급 여부 ○ 지하수 취수원이 오염시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 및 제품의 위생적 보관·관리 창고 설치 여부 ○ 창고의 바닥에 양탄자 설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규격 검사를 위한 검사실 설치여부 ○ 기타 		
다. 급수시설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공급 여부 ○ 지하수 취수원이 오염시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 		
라. 창고등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 및 제품의 위생적 보관·관리 창고 설치 여부 ○ 창고의 바닥에 양탄자 설치 여부 		
마. 검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규격 검사를 위한 검사실 설치여부 ○ 기타 		
바. 기타				

구분	세부항목	점검사항	적합	비합
1. 영업(신고) 사항 관리	가. 영업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신고 여부 ○ 영업신고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여부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여부 		
	나. 변경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사항 임의변경 여부(업제명, 소재지, 주요설비 등) 		
	다. 위생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교육 수료 여부 		
	라. 기타사항			
2. 영업자 준수사항 관리	가. 제품거래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위생용품의 제품명·판매일·판매처·판매량·수입일·선하증권번호·제조국·수출국·제조회사명·수출회사명을 기록한 거래명세서 및 내용명세서 보관(2년) 여부 		
	나. 통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 수입신고확인증(2년) 및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위생용품의 신고필증 보관(5년) 여부 		
	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운반·보관 여부 		
	라. 종사자 위생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한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계획 수립여부 및 정기적 위생교육 실시여부 		
마. 기타사항				
3. 표시사항 점검	가. 표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기준 일반사항 적정 여부 ○ 제조일자 위·변조 여부 ○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여부 		
	나. 허위·과대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 - 영업신고 또는 수입신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 - 제조년월일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 - 효과를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 - 명칭, 원료, 제조방법, 성분, 용도, 품질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 		
	다. 기타			
4. 시설기준 점검	가. 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 설치 여부 		
	나. 보관 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건물 또는 위생용품 이외의 제품을 보관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구분) 		

구분	세부항목	점검사항	적합	미흡
		- 위생용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보관창고 설치 면제		
	다. 기타			

6. 위생용품 관리법 주요 해석 사례

Q1

위생용품 소분 시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적용하는 시점은?

- ▶ 다른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제조한 위생용품을 소분·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제조하는 경우, 검사주기는 소분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다만, 다른 영업자가 제조·수입한 위생용품을 구매하여 이를 소분·재포장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 의무가 없음)

Q2

설거지용 비누도 세척제에 해당되나요?

- ▶ ‘설거지비누’가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제품(고체, 액체 등의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이라면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세척제에 해당

Q3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세척제 제조방법을 강의 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인지?

- ▶ 온라인 등을 통해 세척제 등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행위는 위생용품 관리법상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판매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경우는 제외함

Q4

지식산업센터 내 위생용품수입업 영업등록 가능 여부

- ▶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업 등 및 입주업체 지원시설의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범위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야 함.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의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 내 영업등록이 가능
 - 다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의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의 총 면적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 *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 건축면적의 100분의 20,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 : 수도권 안의 경우는 건축면적의 100분의 30, 수도권밖의 경우는 건축면적의 100분의 50

Q5

위생용품 제조업 휴업을 하려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교육 이수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4조에 따른 휴업 기간에는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다만, 당해연도 휴업 기간이 1.1~12.31가 아닌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Q6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고 책임자(종업원)가 대신 교육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 ▶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그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 서식의 위생교육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Q7

제조하는 제품의 제품명이 다른 경우 품목제조보고는 각각 하여야 하나?

- ▶ 품목제조보고는 그 품목의 제품명과 성분 등을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와 제조방법 설명서를 첨부하여 보도록 하고 있으며, 제품명 또는 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사용량을 제한하는 성분에 한함)이 변경된 경우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하고 있으므로, 품목제조보고는 제품명별로 보고하여야 함.(위생용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료(성분)가 다른 경우 각각의 제품명으로 보고)

Q8

제품 생산 시 중화되어 없어지는 원료의 경우 품목제조보고 시 보고 대상인가요?

- ▶ 품목제조보고 시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서 1부를 첨부하여 사용되는 모든 원료명 또는 성분명을 보고하여야 함. 다만, 원재료 및 성분에 대한 한글 표시는 제조과정 중 첨가되어 최종제품에서 불활성화되는 효소나 제거되는 원료·성분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Q9

화장지 내용량 표시할 때 오차범위도 함께 표시해야 하나요?

-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호다목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는 제품에 표시된 내용량 보다 실제량이 부족 할 때 허용되는 범위로 정의됨. 이는 허용한 범위 내의 부족량은 허위표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며, 내용량을 오차 범위(± 3 mm 등)를 함께 표시토록 한 것이 아님

Q10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폐기처분 대상인 제품은 반드시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나?

-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제품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폐기처분 하도록 하고 있으며,
 - 폐기처분은 소각, 매립 등의 방법 이외에 반송·수출·용도전환 등의 방법으로도 처분 가능함

Q11

향료는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나요?

-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7호(원료명 또는 성분명)에 따라,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여야 하나,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7호다목에 따라 향료를 사용한 경우 그 향의 명칭(예시:○○향)만을 표시 할 수 있음
 - 해당 향료에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및 별표 4에 따른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포함 성분을 향료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함(예시 : ○○향(명칭))(‘22.7.1.부터 의무시행).

Q12

판매하려는 세척제가 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의 세정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하나의 제품에 한글표시를 병행하여 부착할 수 있나요?

- ▽ 「위생용품 관리법」(식약처)과 「화학제품안전법」(환경부)의 각 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수입된 제품의 경우에는 병행하여 표시가 가능함

Q12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의 변경 내용이 기록, 저장되는 시스템을 구비할 수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직접하는 경우 검사결과와 위·변조를 방지하고 위해 변경내용이 기록되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해야 함
- ▽ 영업자가 동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약처 통합실험정보관리시스템(<http://lims.mfds.go.kr>)을 이용 가능자는 위생용품정적과(담당번호 : 043-719-17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VII

부 록

Ⅶ 부록

1.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구분(종)
1	1,3-이아미노메틸시클로헥산	1,3-bis(aminomethyl)cyclohexane	2, 3
2	1-히드록시에틸-1-벤질-2-운데실이미다졸리움 클로라이드	1-Hydroxyethyl-1-Benzyl-2-Undecylimidazolium Chloride	3
3	1-히드록시에틸리덴-1,1-디포스포린산	1-Hydroxy ethylidene-1,1-diphosphonic acid	2, 3
4	2,4,7,9-테트라메틸-5-데킨-4,7-디올	2,4,7,9-Tetra methyl-5-decyne-4,7-diol	3
5	2-디메틸아미노에틸 2-메틸-2-프로페노에이트 폴리머 (1,2-프로판디올 모노-2-프로페노에이트, 2-히드록시-1,2,3-프로판 트리카복시레이트 포함)	2-(Dimethylamino)ethyl 2-methyl-2-propenoate polymer with 1,2-propanediol mono-2-propenoate, 2-hydroxy-1,2,3-propanetricarboxylate	2, 3
6	2-아미노-2-메틸-1-프로판올	2-Amino-2-methyl-1-propanol	2*, 3
7	2-포스포노부탄-1,2,4-트리카복실산	2-phosphono butane-1,2,4-tricarboxylic acid	3
8	개미산	Formic acid	1, 2, 3
9	과보산나트륨	Sodium perborate	2*, 3
10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3
11	과산화요소	Urea Peroxide	1, 2, 3
12	과탄산나트륨	Sodium percarbonate	2, 3
13	구연산	Citric acid	1, 2, 3
14	구연산나트륨	Sodium citrate	1, 2, 3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구분(종)
15	구연산나트륨이수화물	Sodium citrate, dihydrate	1, 2, 3
16	규산나트륨	Sodium silicate	1, 2, 3
17	규산마그네슘	Magnesium silicate	1, 2, 3
18	규산칼륨	Potassium silicate	1, 2, 3
19	글루코스 아미드	Glucose amide	2, 3
20	글루코헵토산나트륨	Sodium glucoheptonate	2, 3
21	글루론산	Gluconic acid	1, 2, 3
22	글루론산나트륨	Sodium gluconate	1, 2, 3
23	글리세린	Glycerin	1, 2, 3
24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Glycerin fatty acid ester	1, 2, 3
25	글리세릴폴리옥시에틸에테르	Glyceryl polyoxyethyleneether	2, 3
26	녹차추출물	Green Tea Ext.	1, 2, 3
27	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나트륨	Trisodium nitrilotriacetate	2*, 3
28	데나토늄벤조에이트	Denatoniumbenzoate	2,3
29	데카노인산	Decanoic acid	2, 3
30	데히드로초산나트륨	Sodium dehydroacetate	1, 2, 3
31	디메틸설폭사이드	Dimethyl sulfoxide	2, 3
32	디메틸올-5,5-디메틸히단토인	Dimethylol-5,5-dimethylhydantoin	2, 3
33	디부틸 히드록시 톨루엔	2,6-di-t-butyl-4-methylphenol	1, 2, 3
34	디에탄올아민	Diethanolamine	2, 3
35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	Di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2, 3
36	디에틸렌삼아민오아세트산 오나트륨염	Penta sodium salt of Diethylene Triamine Penta Acetic Acid	2, 3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구분(종)
37	디에틸렌트리아민 펜타메틸렌포스포네이트	Diethylenetriamine pentamethylene phosphonate	1, 2, 3
38	디카복실산	Dicarboxylic acid(C4-6)	1, 2, 3
39	디클로로이소시아나트륨	Sodium dichloroisocyanurate	2, 3
40	디클로로이소시아나트륨	Potassium dichloroisocyanurate	3
41	디클로로-s-트리아진트리온	Dichloro-s-triazinetriole	3
42	디클로산	Dichlosan	2, 3
43	디프로필렌 글리콜 메틸에테르	Dipropylene glycol methylether	2, 3
44	라우라미도프로필아민 옥시드	Lauramidopropylamine oxide	2, 3
45	라우릴 미리스틴모노에탄올아미드	Lauryl myristin monoethanolamide	2, 3
46	라우릴 에테르 에톡시 설페이트 나트륨	Sodium Lauryl Ether ethoxy sulfate	1, 2, 3
47	라우릴 에테르 황산나트륨	Sodium Lauryl Ether Sulfate	1, 2, 3
48	라우릴 염화 피코릴레움	Lauryl Picolineum Chloride	2, 3
49	라우릴 폴리글루코사이드	Lauryl Polyglucoside (Vegetable oil ext.)	1, 2, 3
50	라우릴 황산나트륨	Sodium lauryl sulfate	2, 3
51	리그노술포산나트륨	Sodium lignosulfonate	3
52	말레인산	Maleic acid	1, 2, 3
53	말레인산아크릴산공중합체 나트륨염	Maleic acid, acrylic acid copolymer of sodium salt	2, 3
54	메타규산나트륨	Sodium metasilicate	1, 2, 3
55	메타중아황산나트륨	Sodium metabisulfite	1, 2, 3
56	메탄술포산	Methanesulfonic acid	3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구분(종)
57	메틸글리신디초산나트륨	Sodium methylglycinediacetate	2, 3
58	메틸셀룰로오스	methylcellulose	1, 2, 3
59	메틸옥시란 중합체 옥시란 함유 모노헥실 에테르	Methyloxirane polymer with oxirane, monohexyl ether	3
60	메틸옥시레인, 중합체 함유 옥시레인 에테르 함유(1,2-에탄딜-디니트로)테트라키스(프로판올)	Methyloxirane polymer with oxirane, ether with(1,2-ethane diyldinitrilo)tetrakis(propanol)	2, 3
61	메틸파라벤	Methylparaben	1, 2, 3
62	모노과황산칼륨	Potassium monopersulfate	2, 3
63	모노디알킬인산에스테르	Mono-(di)alkyl phosphoric acid ester	2, 3
64	모노에탄올아민	Monoethanol amine	2, 3
65	무정형 착규산염	Amorphous complex silicate	2, 3
66	미리스틸디메틸아민옥사이드	Myristyldimethylamine oxide	1, 2, 3
67	벤조트리아졸	benzotriazol	2, 3
68	복숭아잎 추출물	Peach leaves fluid	2, 3
69	부톡시에톡시 초산나트륨	Sodium butoxyethoxy acetate	3
70	붕산	Boric acid	1, 2, 3
71	브로노폴	Bronopol	2, 3
72	산성피로인산나트륨	Disodium dihydrogen pyrophosphate	1, 2, 3
73	산화마그네슘	Magnesium oxide	1, 2, 3
74	살구추출물	Apricot HS ext.	1, 2, 3
75	설파민산	Sulfamic acid	2, 3
76	소르빈산칼륨	Potassium sorbate	1, 2, 3
77	수산화나트륨	Sodium hydroxide	1, 2, 3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구분(종)
78	수산화칼륨	Potassium hydroxide	2, 3
79	수소첨가피마자유	PEG-40 Hydrogenated Castor Oil	2, 3
80	스티렌/아크릴 중합체	Styrene/Acrylates Copolymer	2, 3
81	스티렌/아크릴산 암모늄 공중합체	Styrene/Acrylic acid polymer, ammonium salt	2, 3
82	아민폴리글리콜콘덴세이트	Aminepolyglycol condensate	3
83	아밀라아제	Amylase	2, 3
84	안식향 추출물	Benzoin Extract	1, 2, 3
85	안식향산나트륨	Sodium benzoate	1, 2, 3
86	알로에 에센스	Aloe essence	1, 2, 3
87	알로에베라 겔	Aloe vera gel	1, 2, 3
88	알로에추출물	Aloe Ext.	1, 2, 3
89	알루미늄 나트륨	Sodium aluminate	2, 3
90	알루미늄산실리콘	Silicone aluminate	2, 3
91	알카놀아민	Alkanol amine	2, 3
92	알칸술폰산나트륨	Sodium alkansulfonate	2, 3
93	알코올알콕시레이트	Alcohol alkoxyate	2, 3
94	알킬글루코시드	Alkyl glucoside	1, 2, 3
95	알킬벤젠설폰네이트	Alkylbenzene sulfonate	1, 2, 3
96	알킬(C12-C15)에테르 황산암모늄	Ammonium C12-15 par eth sulfate	2, 3
97	알킬폴리글루코시드	Alkylpolyglucoside	1, 2, 3
98	알킬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옥시프로필렌 글리콜 에테르	Alkyl polyethylene glycol polyoxypropylene glycol ether	2, 3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구분(종)
99	알킬(C12-C18)폴리에틸렌 글리콜 (3EO-8EO)폴리프로필렌 글리콜 (8PO)에테르	Alkyl(C12-C18) polyethyleneglycol(3EO-8EO) polypropyleneglycol(8PO)ether	2, 3
100	알킬디메틸 벤질염화암모늄	Alkyl dimethyl benzyl ammonium chloride	2, 3
101	알킬디메틸 베타인	Alkyl dimethyl betaine	2, 3
102	알킬디메틸아민옥사이드	Alkyl dimethyl amine oxide	1, 2, 3
103	알킬메틸에틸벤질염화암모늄	Alkylmethyl ethyl benzyl ammonium chloride	2, 3
104	알킬벤젠설폰산	Alkylbenzene sulfonic acid	1, 2, 3
105	알킬에톡시나트륨	Sodium alkyl ethoxylate	2, 3
106	알킬폴리에틸렌 글리콜	Alkyl(C12-C18) polyethylene glycol	2, 3
107	알파 술폰 메틸 코코넛 나트륨	Alpha Sulfo Methyl Coconut Sodium salt (Coconut Oil Ext.)	2, 3
108	암모니아수	Ammonium hydroxide	2, 3
109	에스테라아제	Esterase	2, 3
110	에탄올	Ethanol	1, 2, 3
111	에톡시레이티드 지방알콜	Ethoxylated Fatty Alcohol	2, 3
112	에틸렌글리콜	ethyleneglycol	2, 3
113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2, 3
114	염산	Hydrochloric Acid	2, 3
115	염화나트륨	Sodium chloride	1, 2, 3
116	염화디데실 디메틸암모늄	Didecyl dimethyl ammonium chloride	1, 2, 3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구분(종)
117	염화디알킬 디메틸 암모늄염	Dialkyl dimethyl ammonium chloride	2, 3
118	염화마그네슘	Magnesium chloride	1, 2, 3
119	염화아연	Zinc chloride	2, 3
120	염화암모늄	Ammonium chloride	1, 2, 3
121	염화칼슘	Calcium chloride	1, 2, 3
122	오이추출물	Cucumber Ext.	1, 2, 3
123	옥사반-A	Oxaban-A	2, 3
124	옥타노익산	Octanoic Acid	2, 3
125	옥탄설폰산 나트륨	Sodium octane sulfonate	2, 3
126	옥탄포스포닉산	Octanephosphonic acid	2, 3
127	옥틸황산염나트륨	Sodium octyl sulfate	2, 3
128	올레인산	Oleic acid	1, 2, 3
129	요소	Urea	1, 2, 3
130	요오드	Iodine	2, 3
131	요오드칼륨	Potassium iodide	1, 2, 3
132	은	Silver	3
133	이디티에이 2나트륨	Ethylene diamine tetra acetic acid, disodium salt(EDTA-2Na)	1, 2, 3
134	이디티에이 3나트륨	Ethylenediamine tetra acetic acid, trisodium salt(EDTA-3Na)	1, 2, 3
135	이디티에이 4나트륨	Ethylene diamine tetra acetic acid, tetrasodium salt(EDTA-4Na)	1, 2, 3
136	이소프로필알콜	Isopropyl alcohol	2, 3
137	이차 알칸 술폰네이트	Secondary alkane sulfonate	2, 3
138	인산 1-헥사데카놀	1-Hexadecanol phosphate	2, 3
139	인산아미노트리메틸렌	Aminotrimethylene phosphate	2, 3
140	인산에스테르	phosphoric acid ester	1, 2, 3
141	자당지방산에스테르	Sucrose fatty acid ester	1, 2, 3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구분(종)
142	제라니올	Geraniol(3,7-dimethyl-trans-2,6-octadien-1-ol)	1, 2, 3
143	제사 코코 알킬아민 에톡시레이트	Quaternary coco alkylamine ethoxylate	3
144	제삼인산나트륨	Sodium phosphate, tribasic	1, 2, 3
145	제이인산나트륨	Sodium Phosphate,Dibasic	1, 2, 3
146	제일인산나트륨	Sodium Phosphate, monobasic	1, 2, 3
147	중규산나트륨	Sodium disilicate	2, 3
148	지방산 탈로우	Tallow fatty acid	1, 2, 3
149	3,5,5-트리메틸헥사놀산	3,5,5-Trimethylhexanoic acid	3
150	지방산코코넛	Coconut fatty acid	1, 2, 3
151	지방산폴리글리세롤에테르	Polyglycerol fatty acid ether	2, 3
152	질산	Nitric acid	3
153	차아염소산나트륨	Sodium hypochlorite	2, 3
154	차아염소산칼슘	Calcium hypochlorite	3
155	초산	Acetic acid	1, 2, 3
156	초산나트륨	Sodium acetate	1, 2, 3
157	카라멜	Caramel	1, 2, 3
158	카르복시 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Sodium carboxy methylcellulose	1, 2, 3
159	카르복실산 나트륨	Sodium carboxylate	2, 3
160	카보닐히드롤라아제	Carbonyl hydrolases	2, 3
161	칼슘디소듐 에틸렌 디아민테트라 아세테이트	Calcium disodium ethylene diaminetetra acetate	2, 3
162	코코넛 디에탄올아미드	Coconut fatty acid diethanolamide	1, 2, 3
163	코코넛아미도 프로필 베타인	Cocoamidopropyl betaine	1, 2, 3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구분(종)
164	코코아모카르복시글리시네이트	Cocoamphocarboxy glycinate	3
165	코코아미도 프로필아민 산화물	Cocamidopropyl amine oxide	3
166	코코아미드 디에탄올아민	Cocamide diethanolamine	2, 3
167	퀴놀린 옐로우	Quinolin Yellow	2, 3
168	큐멘설펜산 나트륨	Sodium cumene sulfonate	2, 3
169	큐멘설펜산 지방알콜	Cumen sulfonate fatty alcohol	2, 3
170	클로로헥시딘 디글루콘산염	Chlorohexidine digluconate	3
171	키실렌설펜산나트륨	Sodium xylene sulfonate	2, 3
172	키실렌설펜산칼슘	Calcium xylene sulfonate	2, 3
173	탄산나트륨	Sodium carbonate	1, 2, 3
174	탄산수소나트륨	Sodium hydrogen carbonate, sodium bicarbonate	1, 2, 3
175	탄산칼륨	Potassium carbonate	1, 2, 3
176	테트라아세틸에틸렌디아민	Tetraacetyethylene diamine(TAED)	2*, 3
177	톨루엔 술펜산	toluene sulfonic acid	2, 3
178	톨루엔 술펜산 나트륨	Sodium toluene sulfonate	2, 3
179	톨루엔 술펜산 칼륨	Potassium toluene sulfonate	2, 3
180	트리에탄올아민	Triethanol amine	2, 3
181	트리에틸렌글리콜	Triethylene glycol	2, 3
182	트리클로산	Triclosan	2, 3
183	트리클로카반	Triclocarban	2, 3
184	삼인산나트륨	Sodium triphosphate	1, 2, 3
185	트리폴리인산나트륨	Sodium tripolyphosphate	1, 2, 3
186	파라옥시안식향산 부틸	Butyl-p-hydroxybenzoate	1, 2, 3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구분(종)
187	파라옥시안식향산 에틸	Ethyl-p-hydroxybenzoate	1, 2, 3
188	파라옥시안식향산 이소부틸	Isobutyl-p-hydroxybenzoate	1, 2, 3
189	파라옥시안식향산 이소프로필	Isopropyl-p-hydroxybenzoate	1, 2, 3
190	파라핀 오일	Paraffine oil	1, 2, 3
191	파라핀 왁스	paraffin wax	1, 2, 3
192	파인오일	Pine oil	1, 2, 3
193	페카소성칼슘		1, 2, 3
194	페이턴트블루 V	Patent blue V	2, 3
195	펜타소디움디에틸렌트리아민펜타아세테이트	Pentasodium diethylenetriaminepentaacetate	2, 3
196	펜타아민아세트코발트 질산염	Penta Amine Acetato Cobalt III Nitrate	3
197	포스포노폴리카르복실산	Phosphino polycarboxylic acid	2, 3
198	폴리디메틸실록산	Polydimethyl siloxane	2, 3
199	폴리디메틸아미노에틸메타크릴레이트	Polydimethyl amino ethyl methacrylate	2, 3
200	폴리소르베이트 20	Polyoxyethylene(20) sorbitan monolaurate	1, 2, 3
201	폴리소르베이트 80	Polyoxyethylene(80) sorbitan monooleate	1, 2, 3
202	폴리아크릴/이타코닉 코폴리머	Polyacryl/itaconic copolymer	2, 3
203	폴리아크릴산	Polyacrylic acid	2, 3
204	폴리아크릴산나트륨	Sodium polyacrylate	2, 3
205	폴리아릴렌 글리콜 에테르	Polyalkylene glycol ether	2, 3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구분(종)
206	폴리에톡시 폴리프로폭시 알터네이팅 콘덴세이트	Polyethoxy polypropoxy alternating condensate	2, 3
207	폴리에톡시 폴리프로폭시 알터네이팅 콘덴세이트 벤질레이트	Polyethoxy polypropoxy alternating condensate benzylate	2, 3
208	폴리에틸렌 글리콜	Polyethylene glycol	1, 2, 3
209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공중합물	Polyethylene polypropylene block copolymer	1, 2, 3
210	폴리옥시알킬렌알킬에테르	Polyoxyalkylene alkyl ether	2, 3
211	폴리옥시에틸렌 올레일에테르	Polyoxyethylene oleyl ether	2, 3
212	폴리옥시에틸렌알킬에테르	Polyoxyethylene alkyl ether	2, 3
213	폴리프로필렌글리콜	Polypropylene glycol	2, 3
214	표백분	Bleaching powder	3
215	프로테아제	Protease	2, 3
216	프로필렌 글리콜	Propylene glycol	1, 2, 3
217	프로필렌글리콜 1-메틸에테르	Propylene glycol 1-methyl ether	2, 3
218	피로인산칼륨	Potassium pyrophosphate	1, 2, 3
219	피마자유	Castor oil	1, 2, 3
220	헥사메타인산나트륨	Sodium hexametaphosphate	1, 2, 3
221	황산	sulfuric acid	2, 3
222	황산나트륨	Sodium Sulfate	2, 3
223	황산마그네슘	Magnesium sulfate	2, 3
224	황삼산화물	Sulfur trioxide	2, 3
225	히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	Hydroxy ethylcellulose	2, 3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구분(종)
226	C12-14선형 글루코사아미드	C12-14 Linear glucose amide	2, 3
227	C12-15-옥소알콜에톡시레이트 디프록시레이트	C12-15-Oxoalcohol ethoxylate propoxylate	2, 3
228	D-글루코스테실옥틸에테르	D-glucose decyloctyl ether	1, 2, 3
229	PCANa트륨	Sodium PCA	2, 3
230	α-라우릴-ω-메가-하이드록시 폴리(옥시에틸렌)	α-Lauryl-omega-hydroxypoly(oxyethylene)	1, 2, 3
231	α-올레핀설펜산나트륨	α-olefin sulfonate(AOS)	1, 2, 3
232	알카린 프로테아제	Alkaline Protease	2, 3
<색 소>			
1	식용색소 녹색 제3호	Fast green FCF	1, 2, 3
2	녹색 201호	Alizarine Cyanine Green F	2, 3
3	녹색 202호	Quinizarine green SS	2, 3
4	녹색 204호	Pyranine Conc	2, 3
5	녹색 2호	Light green SF yellowish	2, 3
6	녹색 401호	Naphthol green B	2, 3
7	녹색 402호	Guinea green B	2, 3
8	식용색소 적색 제2호	Amaranth	1, 2, 3
9	식용색소 적색 제40호	Alura red(Food Red 40)	1, 2, 3
10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	New Coccin(or Ponceau 4R)	1, 2, 3
11	적색 103호의 (1)	Eosine YS	2, 3
12	적색 104호의 (1)	Phloxine B	2, 3
13	적색 104호의 (2)	Phloxine BK	2, 3
14	적색 105호의 (1)	Rose bengal	2, 3
15	적색 105호의 (2)	Rose bengal K	2, 3
16	적색 106호	Acid Red	2, 3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구분(종)
17	적색 201호	Lithol Rubine B	2, 3
18	적색 202호	Lithol Rubine BCA	2, 3
19	적색 203호	Lake red C	2, 3
20	적색 204호	Lake red CBA	2, 3
21	적색 205호	Lithol red	2, 3
22	적색 206호	Lithol red CA	2, 3
23	적색 207호	Lithol red BA	2, 3
24	적색 208호	Lithol red SR	2, 3
25	적색 213호	Rhodamine B	2, 3
26	적색 214호	Rhodamine B Acetate	2, 3
27	적색 215호	Rhodamine B Stearate	2, 3
28	적색 218호	Tetrachlorotetrabromofluorescein	2, 3
29	적색 219호	Brilliant lake red R	2, 3
30	적색 220호	Deep Maroon	2, 3
31	적색 221호	Toluidine red	2, 3
32	적색 223호	Tetrabromofluorescein	2, 3
33	적색 225호	Sudan III	2, 3
34	적색 226호	Helindon Pink CN	2, 3
35	적색 227호	Fast Acid magenta	2, 3
36	적색 228호	Permaton red	2, 3
37	적색 230호의 (2)	Eosine SK	2, 3
38	적색 401호	Violamine R	2, 3
39	적색 404호	Brilliant fast scarlet	2, 3
40	적색 405호	Parmanent red F5R	2, 3
41	적색 503호	Ponceau R	2, 3
42	적색 504호	Ponceau SX	2, 3
43	적색 506호	Fast red S	2, 3
44	식용색소청색 제1호	Brilliant blue FCF	1, 2, 3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구분(종)
45	식용색소 청색 제2호	Indigocarmine	1, 2, 3
46	청색 201호	Indigo	2, 3
47	청색 202호	Patent blue NA	2, 3
48	청색 203호	Patent blue CA	2, 3
49	청색 204호	Carbanthrene blue	2, 3
50	청색 205호	Alphazurine FG	2, 3
51	청색 403호	Sudan blue B	2, 3
52	청색 404호	Phthalocyanine blue	2, 3
53	식용색소 황색4호	Tartrazine	1, 2, 3
54	식용색소 황색5호	Sunset yellow FCF	1, 2, 3
55	황색 201호	Fluorescein	2, 3
56	황색 202호의 (1)	Uranine	2, 3
57	황색 202호의 (2)	Uranine K	2, 3
58	황색 203호	Quinoline yellow WS	2, 3
59	황색 204호	Quinoline yellow SS	2, 3
60	황색 205호	Benzidine yellow G	2, 3
61	황색 401호	Hanza yellow	2, 3
62	황색 403호의 (1)	Naphthol yellow S	2, 3
63	황색 407호	Fast Light yellow 3G	2, 3
64	등색 201호	Dibromofluorescein	2, 3
65	등색 203호	Permanent orange	2, 3
66	등색 204호	Benzidine orange G	2, 3
67	등색 205호	Orange II	2, 3
68	등색 206호	Diiodofluorescein	2, 3
69	등색 207호	Erythrosine yellowish NA	2, 3
70	등색 402호	Orange I	2, 3
71	자색 201호	Alizurine purple SS	2, 3
72	자색 401호	Alizuril purple	2, 3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구분(종)
73	갈색 201호	Resorcin Brown	2, 3
74	흑색 401호	Naphthol blue black	2, 3
<향료>			
1	구연산 향료	Citrus fragrance	1, 2, 3
2	레몬향	Perfume, Lemon flavor	1, 2, 3
3	사과향	Apple fragrance	1, 2, 3
4	스위트 오렌지 오일	Sweet orange oil	1, 2, 3
5	시트랄	Citral(3,7-dimethyl-2,6-octadienal)	2, 3
6	오렌지엠펙센스(오렌지향)	Orange essence (Orange fragrance)	1, 2, 3
7	천연레몬오일	Natural lemon oil	1, 2, 3
8	텐시드향	Tensid flavor	2, 3
9	L-멘톨	L-menthol	1, 2, 3

* 2* : 자동식기세척기용 및 산업용 식기류에 한정

* 기타 세척제 사용가능원료 등의 확인은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 > 위생용품 > 위생용품안전관리 > 품목제조보고 원재료코드현황에서 확인가능

2. 행금 보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사용농도
1	구연산	Citric acid	농도제한 없음
2	D-글루콘산나트륨	D-Gluconic acid, monosodium salt	760 ppm 이하
3	글루타르알데히드	Glutaraldehyde	0.3 ppm이하
4	α-라우로일-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 시폴리(옥시에틸렌)	α-Lauroyl-ω-hydroxypoly(oxyethylene) with an average of 8-9 moles ethylene oxide, average molecular weight(in amu), 400	농도제한 없음
5	2-메틸-2,4-펜탄디올	2,4-Pentanediol, 2-methyl-	농도제한 없음
6	2-부톡시-에탄올	2-butoxy-ethanol	농도제한 없음
7	붕산나트륨	Boric acid, sodium salt	농도제한 없음
8	알킬(C ₁₂₋₁₅)폴리에틸렌글리콜	Linear alcohol 12-13mole ethoxylate (Alkyl(C ₁₂₋₁₅)polyethyleneglycol)	7.14 ppm
9	α-알킬(C _{11-C₁₅})-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	α-Alkyl(C _{11-C₁₅})-ω-hydroxypoly(oxyethylene) with ethylene oxide content 9 to 13moles, 18moles	농도제한 없음
10	α-알킬(C _{10-C₁₄})-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	α-Alkyl(C _{10-C₁₄})-ω-hydroxypoly(oxyethylene) poly(oxypropylene)	농도제한 없음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사용농도
11	α-알킬(C ₁₂ -C ₁₅)-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	α-Alkyl(C ₁₂ -C ₁₅)-ω-hydroxy poly(oxyethylene) polyoxypropylene, average molecular weight(in amu), 965	농도제한 없음
12	α-알킬(C ₁₂ -C ₁₈)-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	α-Alkyl(C ₁₂ -C ₁₈)-ω-hydroxy poly(oxyethylene) poly(oxypropylene)	농도제한 없음
13	에탄올	Ethanol	농도제한 없음
14	2-(2-에톡시에톡시)에탄올	Ethanol, 2-(2-ethoxyethoxy)-	농도제한 없음
15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사나트륨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EDTA), tetrasodium salt	농도제한 없음
16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이나트륨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EDTA), disodium salt	1,400 ppm 이하
17	(에틸렌-프로필렌)폴리알킬렌글리콜	Alkyl(C ₁₂ -C ₁₅) monoether of mixed(ethylene-propylene) polyalkylene glycol, cloud point of 70-77 °C in 1%aqueous solution, average molecular weight(in amu), 807	농도제한 없음
18	(에틸렌-프로필렌)폴리알킬렌글리콜부톡시모노에테르	Butoxy monoether of mixed(ethylene-propylene)polyalkylene glycol, cloudpoint of 90-100 °C in 0.5 aqueous solution, average molecular weight (in amu), 3,300	농도제한 없음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사용농도
19	옥시에틸렌옥시프로필렌 공중합체	Oxirane, methyl-, polymer with oxirane, block, average molecular weight (in amu), 1,900	농도제한 없음
20	옥시에틸렌옥시프로필렌 공중합체	Oxirane, methyl-, polymer with oxirane, block, minimum average molecular weight (in amu), 2,000	농도제한 없음
21	옥시에틸렌옥시프로필렌 공중합체	Oxirane, methyl-, polymer with oxirane, block, 27 to 31 moles of polyoxypropylene, average molecular weight(in amu), 2,000	농도제한 없음
22	옥타데칸산칼슘	Octadecanoic acid, calcium salt (Calcium stearate)	16 ppm 이하
23	옥탄산	Octanoic acid	52 ppm 이하
24	1-옥탄설폰산나트륨	1-Octanesulfonic acid, sodium salt	46 ppm 이하
25	옥틸황산염나트륨	Sodium 2-ethylhexyl sulfate(Octyl sodium sulfate)	20 ppm 이하
26	요소	Urea	농도제한 없음
27	인산	Phosphoric acid	농도제한 없음
28	인산나트륨	Phosphoric acid, monosodium salt	350 ppm 이하
29	인산삼나트륨	Phosphoric acid, trisodium salt	5,916 ppm 이하
30	젖산	Lactic acid	138 ppm 이하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사용농도
31	초산	Acetic acid	290 ppm 이하
32	코코지방산칼륨	Fatty acids, coco, potassium salts	농도제한 없음
33	큐멘설폰산나트륨	Cumene sulfonate, sodium salt	40 ppm 이하
34	n-클로로-4-메틸벤젠설폰아미드나트륨	Benzene sulfonamide, n-chloro -4-methyl, sodium salt	농도제한 없음
35	키실렌설폰산나트륨	Xylene sulfonate, sodium salt	40 ppm 이하
36	톨루엔설폰산나트륨	Toluene sulfonate, sodium salt	40 ppm 이하
37	톨루엔설폰산칼륨	Toluene sulfonate, potassium salt	40 ppm 이하
38	α,α-트리메틸-3-시클로헥산-1-메탄올	3-Cyclohexene-1-methanol,α,α ,4-trimethyl-	농도제한 없음
39	폴리실록산베타인	Polybetaine polysiloxane copolymer	2.14 ppm
40	폴리알킬렌글리콜(에틸렌-프로필렌)부톡시모노에테르	Butoxy monoether of mixed(ethylene-propylene)polyalkylene glycol, minimum average molecular weight(in amu), 2,400	농도제한 없음
41	폴리에틸렌 글리콜(400) 모노라우레이트	Polyethylene glycol(400) monolaurate	농도제한 없음
42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프로필렌글리콜, 모노부틸에테르	Polyethylene glycol polypropylene glycol, monobutyl ether, (MW 2400 -3500)	농도제한 없음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사용농도
43	폴리에틸렌 글리콜/폴리프로필렌 글리콜 n-알킬 에테르, C ₁₂ -C ₁₅	PEG/PPG n-alkyl ether, C ₁₂ -C ₁₅	농도제한 없음
44	폴리(옥시-1,2-에탄디일) α-[(1,1,3,3-테트라메틸부틸), 페닐]-ω-하이드록시, 페놀 1분자와 4-14분자의 에틸렌옥사이드의 반응물	Poly(oxy-1,2-ethanediyl), α-[(1,1,3,3- tetra methylbutyl)phenyl]-ω-hydroxy-, produced with one mole of the phenol and 4 to 14 moles ethylene oxide	농도제한 없음
45	폴리(옥시에틸렌)(1분자) α-알킬(C ₁₂ -C ₁₅)-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 황산나트륨	Sodium-α-alkyl(C ₁₂ -C ₁₅)-hydroxy poly(oxyethylene) sulfate with the poly(oxyethylene) content averaging one mole	농도제한 없음
46	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 공중합체	Oxirane, methyl-, polymer with oxirane, minimum molecular weight(in amu), 1,900	112 ppm
47	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 폴리머	Polyoxyethylenepolyoxypropylene block polymer(MW 2,800)	농도제한 없음

3. 위생용품 담당부서 현황

1. 시·도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서울특별시청	감염병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04524)	02-2133-7678 (02-768-8853)
부산광역시청	보건위생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47545)	051-888-3391 (051-888-3379)
대구광역시청	위생정책과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41911)	042-270-4892 (053-803-4959)
인천광역시청	위생안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각로 29(21554)	032-440-2794 (032-440-8658)
광주광역시청	식품안전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61945)	062-613-4383 (062-613-4369)
대전광역시청	식의약품안전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35242)	042-270-4892 (042-270-4869)
울산광역시청	식의약품안전과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44675)	052-229-3541 (052-229-2829)
경기도청	식품안전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달로 95(16440)	031-8008-3695 (031-8008-3699)
강원도청	식품의약품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24266)	033-249-2428 (033-249-4099)
충북도청	식의약품안전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91번길 2, 2층 (28526)	043-220-3164 (043-220-3169)
충남도청	건강증진식품과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32255)	041-635-2651 (041-635-3063)
전북도청	건강증진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54968)	063-280-4671 (063-280-2479)
전남도청	식품의약품	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58564)	061-286-5762 (061-286-4736)
경북도청	식품의약품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36759)	054-880-3840 (054-880-3849)
경남도청	식품의약품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51154)	055-211-5013 (055-211-5019)
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건강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63122)	064-710-2943 (064-710-2919)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30151)	044-300-5734 (044-300-5719)

2. 서울특별시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서울특별시청	감염병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04524)	02-2133-7678 (02-768-8853)
종로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36(03035)	02-2148-3543 (02-2148-5838)
중구 보건소	위생과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9길 16(04611)	02-3396-5646 (02-3396-8892)
용산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4층 (04390)	02-2199-8042 (02-2199-5810)
성동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10(04706)	02-2286-7150 (02-2286-7124)
광진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05026)	02-450-1918 (02-3425-1714)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02565)	02-2127-5256 (02-3299-2641)
중랑구 보건소	위생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02043)	02-2094-0784 (02-490-4517)
성북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63(02751)	02-2241-6183 (02-2241-6611)
강북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897(01145)	02-901-7633 (02-901-7609)
도봉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3길 117(01395)	02-2091-4466 (02-2091-6380)
노원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01689)	02-2116-4323 (02-2116-4645)
은평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03384)	02-351-8182 (02-351-5681)
서대문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2(03718)	02-330-8478 (02-330-8987)
마포구 보건소	위생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03937)	02-3153-9187 (02-3153-9199)
양천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북동서로 339(08095)	02-2620-4892 (02-2620-4409)
강서구 보건소	위생관리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61(07560)	02-2600-5831 (02-2620-0502)
구로구 보건소	위생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8길 66(08299)	02-860-2059 (02-860-2652)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08611)	02-2627-2637 (02-2251-1825)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영등포구 보건소	위생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07260)	02-2670-4704 (02-2670-4875)
동작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06963)	02-820-9414 (02-820-1655)
관악구 보건소	위생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08832)	02-879-7281 (02-879-7853)
서초구 보건소	위생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06750)	02-2155-8028 (02-2155-8386)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06750)	02-2155-6322 (02-2155-6363)
강남구 보건소	위생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06088)	02-3423-7083 (02-3423-8901)
송파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05552)	02-2147-3446 (02-2147-3895)
강동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45(05397)	02-3425-6642 (02-3425-8603)

3. 부산광역시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부산광역시청	보건위생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47545)	051-888-3391 (051-888-3379)
중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48926)	051-600-4412 (051-600-4389)
서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49247)	051-240-4402 (051-240-4389)
동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48781)	051-440-4425 (051-440-4389)
영도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49011)	051-419-4402 (051-419-4729)
부산진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47193)	051-605-4405 (051-605-4419)
동래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94번길 55(47808)	051-550-4411 (050-4389)
남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48452)	051-607-4402 (051-607-4389)
북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46504)	051-309-4411 (051-309-4389)

4. 대구광역시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대구광역시청	위생정책과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41911)	053-803-4111 (053-803-4959)
중구청	위생과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139길 1(41908)	053-661-2754 (053-661-2759)
동구청	위생과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41185)	053-662-2752 (053-662-2759)
서구청	위생과	대구광역시 서구 국제보상로 257(41777)	053-663-2753 (053-663-2759)
남구청	위생과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42429)	053-664-2753 (053-664-2759)
북구보건소	위생과	대구광역시 북구 성북로 49(41550)	053-665-2752 (053-665-2759)
수성구보건소	식품위생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13(42152)	053-666-2752 (053-666-2759)
달서구청	위생과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42731)	053-667-2752 (053-667-2759)
달성군청	청소위생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곡읍 달성군청로 33(42974)	053-668-2752 (053-282-7487)

5. 인천광역시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인천광역시	위생안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각로 29(21554)	032-440-2794 (032-440-8658)
중구	위생환경과	인천광역시 중구 신평로 27번길 80(22315)	032-760-7347 (032-760-6469)
동구	환경위생과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22556)	032-770-6521 (032-770-6509)
미추홀구 보건소	위생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22169)	032-880-7438 (032-880-8734)
연수구	위생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번길 (21967)	032-749-7972 (032-749-7959)
남동구 보건소	식품위생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21589)	032-453-2633 (032-453-2759)
부평구 보건소	위생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91(21359)	032-509-6822 (032-509-7670)
계양구	위생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세로 88(21067)	032-450-5434 (032-551-5744)
서구	위생과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22726)	032-560-4322 (032-560-2756)
강화군	환경위생과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23031)	032-930-3835 (032-930-3636)
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22193)	032-899-3162 (032-899-3129)

6. 광주광역시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광주광역시청	식품안전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61945)	062-613-4383 (062-613-4369)
동구청	보건위생과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61466)	062-608-2452 (062-608-2499)
서구청	보건위생과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61928)	062-360-7672 (062-360-7558)
남구청	보건위생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61687)	062-607-4442 (062-607-4405)
북구청	위생과 공중위생팀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61187)	062-410-6697 (062-510-1452)
광산구청	식품위생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62430)	062-960-8479 (062-960-8809)

7. 대전광역시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대전광역시청	식의약안전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35242)	042-270-4892 (042-270-4869)
동구청	위생과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34691)	042-251-4656 (042-224-6163)
중구청	위생과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34939)	042-606-7353 (042-606-6499)
서구청	위생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35238)	042-288-3322~3 (042-288-5917)
유성구청	위생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34139)	042-611-2422 (042-611-2431)
대덕구청	위생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34443)	042-608-6964 (042-608-3835)

8. 울산광역시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울산광역시청	식의약안전과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44675)	052-229-3541 (052-229-2829)
중구청	환경위생과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44475)	052-290-3735 (052-290-3709)
남구청	위생과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 233(44701)	052-226-5722 (052-226-5262)
동구청	환경위생과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44021)	052-209-3572 (052-209-3549)
북구청	환경위생과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44248)	052-241-7784 (052-241-7769)
울주군청	위생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군청로 1(44959)	052-204-2214 (052-204-2219)

9. 경기도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경기도청	식품안전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95(16440)	031-8008-3695 (031-8008-3699)
수원시청	위생정책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16490)	031-228-2227 (031-228-2396)
수원시 장안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16295)	031-228-5328 (031-228-5595)
수원시 권선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2(16626)	031-228-6326 (031-228-6595)
수원시 팔달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릉대로 23(16255)	031-228-7394 (031-228-7595)
수원시 영통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407(16545)	031-228-8923 (031-228-8849)
고양시청	식품안전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10460)	031-8075-3424 (031-8075-4919)
고양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13(10497)	031-8075-5283 (031-8075-9824)
고양시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10409)	031-8075-6285 (031-8075-9887)
고양시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0(10226)	031-8075-7285 (031-8075-9949)
용인시청	위생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17019)	031-324-2231 (031-324-2139)
용인시 처인구청	공원환경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17049)	031-324-5304~5 (031-324-5349)
용인시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 3층(16963)	031-324-6303 (031-324-6362)
용인시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3층(16835)	031-324-8303~4 (031-324-8419)
성남시청	위생정책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13437)	031-729-3105 (031-729-3109)
성남시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3(13259)	031-729-5315 (031-729-5525)
성남시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13371)	031-729-6314 (031-729-6525)
성남시 분당구청	위생안전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0(13594)	031-729-7312 (031-729-7525)

구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부천시청	식품안전과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14547)	032-625-4302 (032-625-4309)
안산시청	위생정책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15335)	031-481-3975 (031-481-3198)
화성시청	위생과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18274)	031-369-3526 (031-369-1613)
화성시 동부출장소	산업위생과	경기도 화성시 병점3로 23(18401)	031-369-4168 (031-369-4907)
화성시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537(18478)	031-369-5627 (031-369-5652)
남양주시청	위생정책과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12232)	031-590-8860 (031-590-2339)
안양시 만안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안양시 안양로 128(14034)	031-8045-3324 (031-8045-6605)
안양시 동안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안양시 동안로 158(14047)	031-8045-4316 (031-8045-6655)
평택시청	위생과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17901)	031-8024-3894 (031-8024-3858)
평택시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66(17730)	031-8024-6362 (031-8024-6329)
평택시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531(17816)	031-8024-8092 (031-8024-8259)
의정부시청	위생과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11622)	031-828-2931 (031-828-2939)
파주시청	위생과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10932)	031-940-8531 (031-940-4439)
시흥시청	식생활정책과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14998)	031-310-2232 (031-310-2821)
김포시청	식품위생과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10109)	031-980-2235 (031-980-2229)
광명시청	위생과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14234)	02-2680-3489 (02-2680-2623)
광주시청	식품위생과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12738)	031-760-4723 (031-760-1457)
군포시청	위생지원과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15829)	031-390-0851 (031-390-0259)
이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팀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 153번길 13(17353)	031-644-4044 (031-634-4000)

구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오산시청	농식품위생과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3층(18131)	031-8036-7643 (031-8036-8917)
하남시청	식품위생과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12951)	031-790-6738 (031-790-6419)
양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11498)	031-8082-5281 (0505-041-0699)
구리시청	민원봉사과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11954)	031-550-2232-3 (031-557-8282)
안성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경기도 안성시 강변로 74번길 18(17596)	031-678-6738 (031-678-5708)
포천시청	식품안전과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612(11143)	031-538.3682 (031-538-3685)
의왕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34(16076)	031-345-2826 (031-345-3599)
여주시청	보건소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 160번길 14(12628)	031-887-3619 (031-887-3610)
양평군청	지역경제과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12554)	031-770-2231-4 (031-770-2835)
동두천시청	농업축산위생과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11317)	031-860-2233 (031-860-2667)
과천시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과천시 관분로 69(13806)	02-3677-2234 (02-2150-1514)
가평군청	허가민원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12417)	031-580-2408 (031-580-2239)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위생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11017)	031-839-2232 (031-839-2670)

10. 강원도

구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강원도청	식품의약과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24266)	033-249-2428 (033-249-4099)
춘천시청	보건소 식품의약과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35, 춘천시보건소 (24358)	033-250-4588 (033-256-4010)

구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원주시청	보건소 위생과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139, 원주시보건소 (26417)	033-737-4046 (033-737-4827)
강릉시청	보건소 위생과	강원도 강릉시 남부로 17번길 38, 강릉시보건소 (25604)	033-660-3021 (033-660-3025)
동해시청	체육위생과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25755)	033-530-2125 (033-530-2713)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 실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21(26027)	033-550-3015 (033-550-2981)
속초시청	환경위생과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24826)	033-639-2684 (033-639-2386)
삼척시청	보건소 보건정책과	강원도 삼척시 최주로 76, 삼척시보건소 (25929)	033-570-3323 (033-570-4169)
홍천군청	관광과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25135)	033-430-2653 (033-430-2459)
횡성군청	보건소	강원도 횡성군 횡성로 379(25234)	033-340-5694 (033-340-5608)
영월군청	환경위생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26235)	033-370-2312 (033-370-2228)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25374)	033-330-2335 (033-330-2334)
정선군청	보건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26127)	033-560-2010 (033-563-4000)
철원군청	보건소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로 16(24037)	033-450-4958 (033-452-8426)
화천군청	자치행정과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24125)	033-440-2843 (033-440-2590)
양구군청	환경위생과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판공서로 38(24522)	033-480-2801 (033-480-2243)
인제군청	보건소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40번길 34(24633)	033-460-2246 (033-460-2275)
고성군청	보건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30(24736)	033-680-3953 (033-680-3549)
양양군청	보건소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9-5(25031)	033-670-2509 (033-670-2558)

11. 충청북도

구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충북도청	식의약안전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91번길 2, 2층 (28526)	043-220-3164 (043-220-3169)
청주시청	위생정책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제2청사(28527)	043-201-1985 (043-201-1989)
충주시청	보건소 위생과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27339)	043-850-3492 (043-850-3408)
제천시청	보건소 보건위생과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242(27152)	043-641-3190 (043-641-3039)
보은군청	환경위생과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28937)	043-540-3273 (043-543-2595)
옥천군청	문화관광과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29032)	043-730-3424 (043-731-1986)
영동군청	가족행복과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29140)	043-740-3793 (043-740-3759)
증평군청	환경위생과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27927)	043-835-3632 (043-835-3609)
진천군청	식산업지원과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27832)	043-539-3423 (043-537-0477)
괴산군청	농식품유통과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격정로 90(28026)	043-830-3474 (043-830-3729)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27010)	043-871-3832 (043-871-1926)
단양군청	보건소 보건위생과	충북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53(27013)	043-420-3323 (043-420-3209)

12. 충청남도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충남도청	건강증진식품과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32255)	041-635-2651 (041-635-3063)
천안시청	식품안전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변영로 156(31162)	041-521-5444 (041-521-2359)
공주시청	보건과장	충남 공주시 봉황로 123(32572)	041-840-8512 (041-854-4101)
보령시청	보건소 보건행정과	충남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234(33493)	041-930-5937 (041-930-5909)
아산시청	위생과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31512)	041-540-2813 (041-540-2456)
서산시청	보건소 보건위생과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로 6(32001)	041-661-8037 (041-661-6599)
논산시청	보건소 보건위생과	충남 논산시 논산대로 382(32993)	041-746-8149 (041-746-8019)
계룡시청	환경위생과	충남 계룡시 장안로 46(32823)	042-840-2464 (042-840-2459)
당진시청	보건소 보건위생과	충남 당진시 서부로 56(31777)	041-360-6661 (041-360-6659)
금산군청	허가처리과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32726)	041-750-4014 (041-750-6058)
부여군청	가족행복과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33168)	041-830-8633 (041-830-8700)
서천군청	민원봉사과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33638)	041-950-4079 (041-950-4545)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33323)	041-940-2182 (041-940-2510)
홍성군청	보건소 보건행정과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106(32236)	041-630-9015 (041-630-9860)
예산군청	교육체육과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32435)	041-339-7482 (041-339-7459)
태안군청	안전총괄과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32144)	041-670-2764 (041-670-1521)

13. 전라북도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전라북도청	건강증진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54968)	063-280-4671 (063-280-2479)
전주시청	환경위생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54994)	063-281-2372 (063-281-2613)
전주시청	한옥마을지원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성당길 110(55042)	063-281-5192 (063-281-2623)
전주시 완산구청	자원위생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2(55051)	063-220-5197 (063-220-5447)
전주시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뱃꽃로 55(54937)	063-270-6325 (063-279-6909)
군산시청	위생행정과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54078)	063-454-3414 (063-454-4279)
익산시청	위생과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54622)	063-859-5451 (063-859-5083)
정읍시청	보건위생과	전북 정읍시 수성1로 61(56177)	063-539-6136 (063-539-6531)
남원시청	보건지원과	전북 남원시 요천로 1285(55766)	063-620-7933 (063-631-5931)
김제시청	보건위생과	전북 김제시 성산길 138(54385)	063-540-1381 (063-540-1385)
완주군청	먹거리정책과	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55352)	063-290-2704 (063-290-2060)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55434)	063-430-2313 (063-430-2697)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55517)	063-320-2327 (063-320-2248)
장수군청	환경위생과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55634)	063-350-2542 (063-350-5718)
임실군청	청소위생과	전북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55927)	063-640-3164 (063-640-2369)
순창군청	민원과	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56039)	063-650-1443 (043-650-1339)
고창군청	생태환경과	전북 고창군 모양성로 55(56428)	063-560-2888 (063-560-2869)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전북 부안군 당산로 91(56314)	063-580-4432 (063-580-4702)

14. 전라남도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전남도청	식품의약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봉길 1(58564)	061-286-5762 (061-286-4736)
목포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전남 목포시 원산로 45번길 5(58714)	061-270-8943 (061-270-3597)
여수시 보건소	식품위생과	전남 여수시 시청서4길 47(59674)	061-659-4386 (061-659-5842)
순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전남 순천시 중앙로 232(57938)	061-749-6836 (061-749-4683)
순천시청	허가민원과	전남 순천시 장평로 30(57956)	061-749-5839 (061-749-4656)
나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전남 나주시 풍물시장2길 57-32(58274)	061-339-2151 (061-339-2833)
광양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전남 광양시 인덕로 1100(57741)	061-797-3799 (061-797-4151)
담양군청	관광레저과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57339)	061-380-3157 (061-380-3579)
곡성군청	보건사업과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4(57542)	061-360-8941 (061-360-8909)
구례군청	문화관광실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57656)	061-780-2326 (061-780-2577)
고흥군청	종합민원과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59542)	061-830-5276 (061-830-5576)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59455)	061-850-5323 (061-850-8505)
화순군청	관광진흥과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천길 23(58112)	061-379-3493 (061-379-3540)
장흥군 보건소	위생계	전남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49(59327)	061-860-0312 (061-860-0597)
강진군청	관광과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59228)	061-430-3195 (061-430-3319)
해남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6 (59038)	061-531-3785 (061-531-3780)
영암군청	여성가족과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58415)	061-470-2796 (061-470-2796)
무안군 보건소	위생계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58532)	061-450-5019 (061-450-5134)
함평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54-8(57153)	061-320-2455 (061-323-5150)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영광군청	스포츠산업과	전남 영광군 영광읍 월천로 170(57035)	061-350-5565 (061-350-5360)
장성군청	환경위생과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57219)	061-390-7312 (061-390-7585)
완도군청	관광정책과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59124)	061-550-5442 (061-550-5409)
진도군청	관광과	전남 진도군 진도읍 칠마길 25(58915)	061-540-3413 (061-540-3448)
신안군 보건소	위생식품계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58827)	061-240-8437 (061-240-8892)

15. 경상북도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경상북도청	식품의약과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36759)	054-880-3840 (054-880-3849)
포항시청	환경식품위생과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37683)	054-270-3874 (054-270-3090)
포항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경북 포항시 남구 회망대로 790(37832)	054-270-6186 (054-270-6513)
포항시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37705)	054-240-7184 (054-240-7513)
경주시청	식품안전과	경북 경주시 양정로 260(38102)	054-779-8588 (054-760-7486)
김천시청	환경위생과	경북 김천시 시청길 1(39532)	054-421-2779 (054-420-6664)
안동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경북 안동시 서동문로 165(36694)	054-840-6622 (054-840-5919)
구미시청	식품위생과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39281)	054-480-5492 (054-480-5499)
영주시청	관광진흥과	경북 영주시 시청로 1(36132)	054-639-6634 (054-639-6609)
영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경북 영천시 옛군청1길 31(38849)	054-339-7998 (054-330-6439)

구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경북 상주시 중앙로 111(37183)	054-537-5134 (054-534-4000)
문경시청	위생방역과	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36982)	054-550-6196 (054-550-6219)
경산시 보건소	식품의약과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8(38616)	053-810-6342 (053-819-5858)
군위군청	환경위생과	경북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39013)	054-380-7327 (054-380-7309)
의성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228(37343)	054-830-6243 (054-830-6299)
청송군청	종합민원과	경북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37427)	054-870-6173 (054-873-3000)
영양군청	종합민원과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36537)	054-680-6791 (054-680-6789)
영덕군청	환경위생과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36429)	054-734-6174 (054-730-6189)
청도군청	사회보장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38330)	054-370-2172 (054-370-6169)
고령군청	민원과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40138)	054-950-6693 (054-950-6149)
성주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길 12(40023)	054-930-6724 (054-930-8109)
칠곡군청	사회복지과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39888)	054-979-6675 (054-979-6679)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경북 예천군 충효로 111(36826)	054-650-8062 (054-650-6780)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36239)	054-679-6192 (054-679-6179)
울진군청	환경위생과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36323)	054-789-6693 (054-789-3606)
울릉군청	환경위생과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40222)	054-790-6173 (054-790-6189)

16. 경상남도

구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경남도청	식품의약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51154)	055-211-5013 (055-211-5019)
창원시청	환경위생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51435)	055-225-3604 (055-225-4722)
진주시청	위생과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52789)	055-749-8684 (055-749-5789)
통영시보건소	보건위생과	경남 통영시 안계4길 108(53038)	055-650-6033 (055-650-6199)
사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52539)	055-831-3611 (055-831-6025)
김해시보건소	위생과	경남 김해시 분성로 227(50958)	055-330-4468 (055-328-6239)
김해시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경남 김해시 부곡로 57(50990)	055-330-4903-4 (055-330-6819)
밀양시보건소	보건위생과	경남 밀양시 삼문중앙로 41(50437)	055-359-7091 (055-359-7095)
거제시청	위생과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53257)	055-639-3993-4 (055-639-3979)
양산시청	위생과	경남 양산시 중앙로 39(50624)	055-392-5282 (055-392-5199)
양산시 웅상출장소	경제환경과	경남 양산시 진동길 40(50519)	055-392-6933 (055-392-6269)
의령군청	환경위생과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16(52151)	055-570-2633 (055-570-2609)
함안군청	환경위생과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52043)	055-580-2585 (055-580-2409)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50317)	055-530-1164 (055-530-1610)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52943)	055-670-2735 (055-670-2199)
남해군 보건소	위생안전팀	경남 남해군 남해읍 전소로 6(52413)	055-860-8744 (055-860-8799)
하동군보건소	안전위생팀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1(52333)	055-880-2355 (055-880-6620)
산청군청	환경위생과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연청로 1(52221)	055-970-7154 (055-970-7109)
함양군청	환경위생과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50036)	055-960-6163 (055-960-5764)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50132)	055-940-3334 (055-940-3288)
합천군청	환경위생과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50231)	055-930-3318 (055-930-3299)

17. 제주특별자치도

구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건강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63122)	064-710-2943 (064-710-2919)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63208)	064-728-2614 (064-728-2619)
서귀포보건소	위생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1번길 52(63584)	064-760-6502 (064-760-2429)

18. 세종특별자치시

구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세종특별자치시청	보건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30151)	044-300-5734 (044-300-5719)

4.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현황

지정번호	기관명(대표자)	소재지(연락처)	교육대상
제1호	한국위생물수건처리업중앙회 (안복현)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58길 35 성육빌딩 4층 T 02-2606-8186 Fax 02-2606-8188	위생물수건처리업영업자
제2호	한국식품정보원 (이상호)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 V1 GL메트로시티 A동 1006호 T 02-405-2800, 042-820-9000 Fax 02-527-1899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 위생물수건처리업영업자
제3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권오정)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T 02-2164-0145, 1577-0091(내선4번) Fax 02-2634-0040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 위생물수건처리업영업자
제4호	㈜세스코 (전찬혁)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46 T 02-2140-0288, 1588-1119 Fax 02-470-7162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 위생물수건처리업영업자

5.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기관명	소재지(연락처)	품목	시험검사 항목	지정번호 (유효기간)
한국식품산업 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 연구원	경기도 의왕시 봇들로 50(포일동) ☎02-3470-8200, fax02-523-2072	세척제, 행금보조제, 일회용(컵, 숟가락, 컵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종이냅킨, 이쑤시개, 행주, 타월),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화장지, 위생물수건, 건티슈 (16품목)	이화학, 미생물	제호 (~2024.4.18.)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02-2614-0011, fax02-2634-1008	세척제, 행금보조제, 화장지, 일회용행주·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이쑤시개·면봉·기저귀·일회용 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 티슈(11품목)	이화학, 미생물	제호 (~2024.4.18.)
(사)KOTITI 시험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문촌대로 541번길 29(상대원동) 2층 일부 ☎02-3451-7446, fax 031-493-1959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품목	이화학, 미생물	제호 (~2024.4.18.)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가산동) ☎02-2102-2579, fax 02-855-1802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품목	이화학, 미생물	제호 (~2024.4.22.)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번지 코리아바이오파크 B동 A-B 03호, B101~102호, B301~302호 ☎031-628-2400, fax031-628-0400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품목(일회용 기저귀 제외)	이화학, 미생물	제호 (~2024.5.2.)
(재)한국의류	경기도 안양시	세척제, 행금보조제,	이화학,	제호

시험연구원	만안구 덕천로 48번길 19(안양동) ☎031-596-5600 fax031-538-9499	일회용품이납킨·이쑤시개·면봉·기저귀·행주·팬티라이너, 식품접객업소용물티슈, 화장지, 위생물수건, 물수건용건티슈(12품목)	미생물	(~2024.5.23.)
(재)FITI시험연구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청3길 21 ☎043-711-8880, fax043-711-8808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품목	이화학, 미생물	제호 (~2024.7.17.)
(재)한국분석기술연구원	부산시 동구 대영로 267 해광빌딩(초량동) ☎051-466-1231, fax 051-466-3298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품목(면봉, 기저귀 제외)	이화학, 미생물	제호 (~2024.8.21.)
(재)에이티씨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130, 801-806호, 905-912호(가산동, 디지털밸리) ☎070-4044-7084, fax 02-865-8832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품목	이화학, 미생물	제호 (~2025.1.6.)
(재)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송구불길 18 첨단메디컬융합심류센터 ☎053-819-3000, fax 053-819-8118	세척제, 행금보조제, 일회용 종이냅킨·이쑤시개·면봉·기저귀·행주·타월,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화장지, 위생물수건, 팬티라이너, 물티슈용 건티슈 등 (13품목)	이화학, 미생물	제11호 (~2022.2.19.)
(재)세스코 시험분석센터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36, 8층(상일동) ☎02-2140-3515, fax 02-426-6052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품목	이화학, 미생물	제2호 (~2022.8.20.)
(사)한국위생물수건처리업중앙회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58길 35 성육빌딩 4층 ☎02-2606-8186, fax02-2606-8188	위생물수건	미생물	제3호 (~2024.11.15.)

*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2021.7.6.기준)

**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 확인: 식약처 홈페이지 → 알림 → 광고